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546-10

2024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머리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연구·인력개발에 힘쓰시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도움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 절감 효과가 큰 반면 공제대상 비용 범위, 연구·인력개발 활동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차이가 발생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많은 기업이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청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심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매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여 발간하는 가이드라인 책자는 제조업종의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업종별로 세분화하였고 새로운 심사사례를 추가하였으며 개선된 홈텍스 서비스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통해 건실한 성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최재봉**

일러두기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이용 시, 연구개발 활동 및 비용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모든 제공 예시와 자료는 참고용으로, 특정 활동이 연구개발 조세지원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확정적 요인은 아니며, 국세청의 공적 견해표명 및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개요) 사전심사 신청 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등)

법령약어

법령명	표기 방식	표기 예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법 제2조제1항제11호 조특법§2①(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령	조특령 제1조의2 조특령§1의2 영 별표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특칙	조특칙 제7조제5항제3호가목 조특칙§7⑤(3)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조특통	조특통9-8...1①(3)



I 제도 개요

- 0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3
- 0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16

II 연구개발활동 검토

- 01. 연구개발활동 정의 27
- 02. 적격·부적격 연구개발활동 개관(概觀) 31
- 03. 연구개발활동 사례 47
- 04. 예규 및 판례 52
- 05. 기타 72

III 비용검토

- 01. 인건비 77
- 02. 재료비 101
- 03.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115
- 04. 인력개발비 125

IV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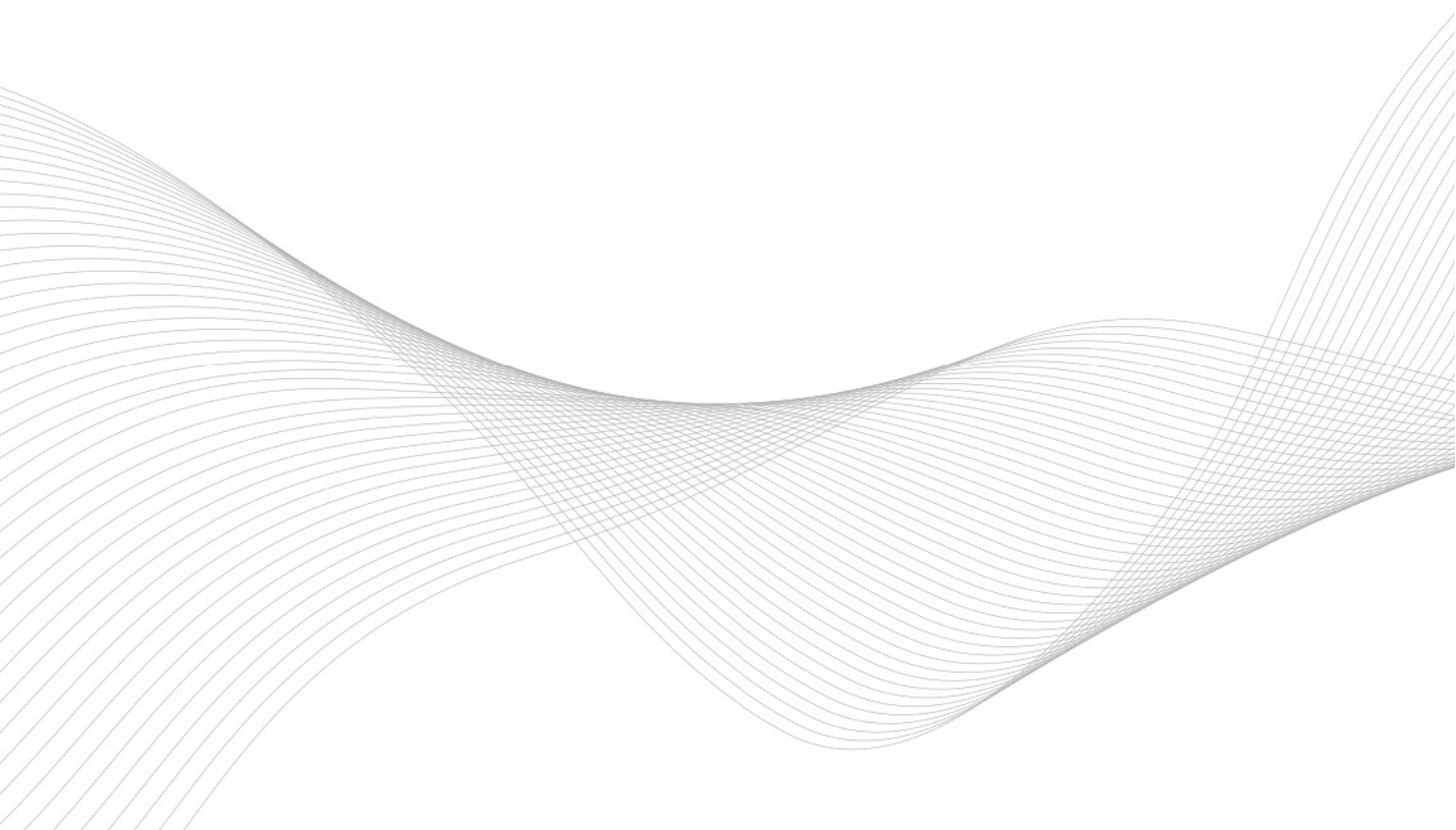
- 01. 최근 법령 개정 사항 139
- 0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령 159

V 참고자료

- 01. 사전심사 신청 서식 183
- 02. 사전심사 신청 서식 작성 방법 188
- 0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요건 자가검증 200
- 0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기타 규정 210
- 05.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212



I 제도 개요

- 0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3
 - 0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16
- 

I 제도 개요



제도 개요

I

0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개요

- (개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에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⑰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4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혜택) 심사결과 통지내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①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②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위 혜택 제외

사전심사 신청방법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
 -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이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 가능

II

III

IV

V

- (신청구분) ①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연구개발 활동 및 비용검토,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연구개발 활동 및 비용검토, ③ 인력개발 비용의 적정 여부 검토

*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는 조특령 [별표기] 또는 [별표7의2] 기술에 해당해야 하고, 해당 여부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세액공제시스템(<http://taxcredit.kiat.or.kr>)에서 신청 가능함

**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구분	정의	검토 기관	
		연구개발활동 및 비용 적정 여부	기술 해당 여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국세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국세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연구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내국인이 고용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훈련비	국세청	-

- (신청범위)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인 비용도 신청 가능하며, 여러 연구과제 중 특정 연구과제만 선별하여 신청할 수 있고, 비용 확정 전이라도 연구개발 활동 해당 여부만 신청할 수 있음

※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사항이거나,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면 심사제외 될 수 있음

✓ 신청범위 개선

-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22년 7월부터 비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수행한 활동이 세액공제 가능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사전심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23년 상반기(1~6월)에 진행하였던 연구과제 전부 또는 특정 연구과제가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반기(7월 이후)에 사전심사 신청



-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가능함
-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등)

* (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민원사무구분 '신청' 선택 후 신청

** 재심사 신청은 같은 조회 화면에서 민원사무구분을 '재심사 신청'으로 선택 후 신청

- (신청서류) 사전심사 필수서류인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법상의 연구개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와 지출한 비용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수행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며 형식적 제한은 없음

항 목		입증 서류 예시
연구개발활동 증빙		연구증빙자료(내부보고서, 회의록, 연구노트* 등)
공통 증빙	인적 구성	① 연구원 등록현황(KOITA) ② 연구원 업무분장표
	인 건 비	급여대장
비용 증빙	재 료 비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 (품목, 수량, 금액, 거래처 등)
	위탁개발비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 (위탁과제 집행 내역)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이 운영하는 연구노트포털(<http://www.e-note.or.kr>)에서 연구노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보안유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는 사전심사 업무 등 성실신고 지원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사전심사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등의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

◆ 사전심사 진행 절차

○ 심사 프로세스



- (심사이원화) 사전심사 이용 증가 기대 및 신속·정확하게 검토하여 결과 통지하기 위해, 2021.1.1.부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사전심사 진행하고 중소기업 이외의 일반 및 중견기업은 국세청 (본청)에서 사전심사 진행
- (2단계 심사) 연구개발활동 검토와 비용검토로 구분하여 심사 진행

구분	1단계 (연구개발활동 검토)	2단계 (비용검토)
검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연구전담(보조)요원 연구개발활동 전담 여부(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인력개발비 범위 해당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검토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국세청 사전심사 전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국세청(본청) 사전심사 전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외(일반, 중견기업) 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기술검토 요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국세청 사전심사 전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국세청(본청) 사전심사 전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외(일반, 중견기업)
입증서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보고서 내부보고서, 회의록, 연구노트 등 연구개발 인력현황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기타(연구개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인력현황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과제별 재료비 집행내역서 (품목, 수량, 거래처 등) 위탁연구과제 집행내역서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 증빙 내역 (연구결과 보고서 등)

* 지방국세청 사전심사담당자는 1단계(연구개발활동 검토) 과정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세청(본청)에 기술검토 요청함. 국세청(본청)은 기술검토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자문위원을 통해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

○ (심사방법) 사전심사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서면심사로 진행함

- 다만,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완요구 또는 현장 확인* 요청을 진행할 수 있음

* 심사절차에서 현장확인 이 필수는 아니나, 신청인의 사정으로 현장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현장확인을 진행

○ (보완자료 제출 방법) 연구개발활동 및 비용 등을 입증할 목적으로 제출되는 추가 서류는 홈택스(www.hometax.go.kr) 제출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청인의 사정으로 홈택스 제출이 불가할 경우, 사전심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메일,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선택 ⇒ 인터넷접수목록 및 추가서류 제출 ⇒ 추가서류 등록/열람 ⇒ ‘첨부하기’ 선택

홈택스 가이드

홈택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및 확인 메뉴 들어가기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portal with a search bar and a navigation menu. The menu item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e menu is a table of services.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환급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상당·불 제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폐업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원사업장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납세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납세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납세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교육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 여부 · 전용계좌개설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등록내역 · 체납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정사업자등록 번호 직권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정사업자등록 번호 직권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들의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후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후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후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증명 원본 확인(수요처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서류 발급 제한 및 위반조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서류 발급 제한 및 위반조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공동사업자·법인 공동대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공동사업자·법인 공동대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신청/결과조회 · 체납 관련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달장소 신고/변경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달장소 신고/변경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랩등(금관련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랩등(금관련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회의 수 · 적용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랩등(금관련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회의 수 · 적용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회의 수 · 적용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 연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금융계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금융계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 연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금융계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금융계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

메뉴 들어가기

- 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②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선택

홈택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신청서 제출 사전심사 진행상황 및 결과 인터넷접수목록 및 추가서류제출 간이계산기

신청내용

민원사무구분 신청 재심사 신청 * 추가서류 제출은 '인터넷접수목록 및 추가서류제출' 메뉴를 이용

민원사무명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기본 인적 사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101-82-42933

상호 다정환선 영어통영신문길도111

대표자명 한***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로 *****

법정동주소 서울특별시 송파 *****

전화번호 02 - 333 - *****

휴대전화번호 010 - 4166 - *****

이메일 abcde @ daum.net daum.net

심사결과 통보받을 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상호

*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 외에 심사결정을 통보받으자 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 관련서식 내려받기

* 첨부가능 파일형식 : PDF 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 광원서식(HWP)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PDF로 변환하여 첨부서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한글 파일(HWP)의 PDF 변환은 한글프로그램에서 파일-인쇄-PDF인쇄 기능을 이용

첨부서류

대상 파일선택 파일선택 삭제

NO	첨부파일명	제출파일명	파일크기

신청서류 제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 신청서류 제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작성 작성하기

취소 신청하기

제도 개요 I II III IV V

1 신청요령

- ① 민원사무구분에서 '신청'으로 자동 선택됨
 - ※ 당초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 선택
- ② 기본 인적 사항은 로그인된 아이디로 자동으로 입력됨
- ③ 기본 인적 사항 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 ④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를 함께 통보받으자 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⑤ 첨부파일에 파일선택 클릭 후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신청하기'버튼 클릭

홈택스 신청서류 제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 신청서류 제출 여부 check !

	구분	제출 여부	비고
기본 신청 서류	① 사전심사 신청서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② 연구개발비 명세서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③ 연구개발 보고서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기타 입증 서류	① 회사조직도(전체부서 현황)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② 연구원 등록현황(KOITA 자료)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만학, 저위 수탁과제가 없고, 위탁과제만 있는 경우 제출선택 가능 ☞ [부] 체크
	③ 연구원 업무분장표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④ 연구활동(기술검토) 증빙 [참고사항] ① 연구노트, 내부보고서, 회의록 등 각 과제별 연구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② 정부지원과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연차보고서, 결과보고서 서중 1개 이상 추가 제출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⑤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 (위탁과제 집행내역)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만학, 위·수탁과제가 없는 경우 제출선택 가능 ☞ [부] 체크
	⑥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만학, 재료비 없는 경우 제출선택 가능 ☞ [부] 체크
	⑦ 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만학, 재료비 없는 경우 제출선택 가능 ☞ [부] 체크

확인 닫기

1 **작업요령**

- ① 사전심사 신청단계에서 제출서류 누락 여부를 신청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 제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작성을 필수 사항으로 설정
- ② 자가검증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체크(여, 부)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하기’ 가능 (모든 항목이 체크된 경우, ‘부’가 있더라도 ‘신청하기’ 가능)

홈택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진행상황 및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접수일자 조회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 사전심사 진행상황 및 결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30분이 지나야 조회됩니다.

신청서 제출 | **사전심사 진행상황 및 결과** | 인터넷접수목록 및 추가서류제출 | 간이계산기

접수일자: 2023-10-10 ~ 2023-10-19 [조회하기]

총 1건의 신청내역이 있습니다.

번호	접수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민원접수번호	접수방법	신청유형	진행상태	심사결과	처리담당	담당자	담당자연락처
1	2023-10-11 11:25:22	101-62-42	다림원선	101-2023-2-600001190	인터넷	신청	검부중		서울지방국	민통리	000-00000...

제도 개요 I

II

1 확인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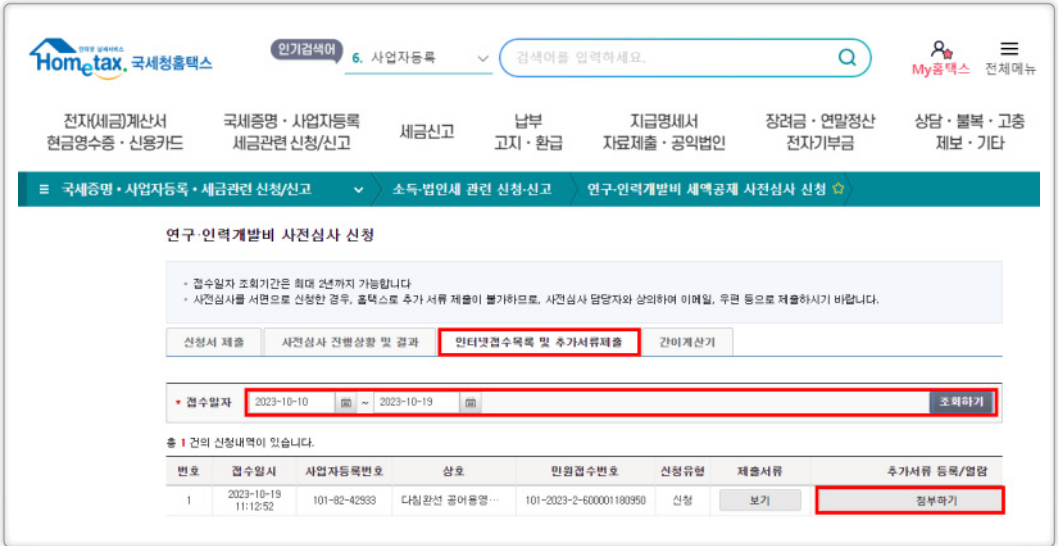
- ① '사전심사 진행상황 및 결과' 탭 선택
- ② 접수일자 설정 후 '조회하기' 선택
- ③ 신청내역 확인

III

IV

V

홈택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추가서류제출



1 추가서류 제출 요령

- ① '인터넷접수목록 및 추가서류제출' 탭 선택
- ② 접수일자 설정 후 '조회하기' 선택
- ③ '첨부하기' 선택
 - ※ 제출된 서류 확인은 '제출내역보기' 선택



제도 개요

I

II

III

IV

V

➤ 추가서류 제출 요령

- ① '파일선택'을 통해 서류 제출
- ② '보완서류 제출하기'로 추가서류 제출 완료

홈택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간이계산기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이 화면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기업이 해당연도에 R&D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해당연도에 공제받을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간편하게 계산된 내용으로 실제 내용과 다를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사전심사 진행상황 및 결과 인터넷접수목록 및 추가서류제출 **간이계산기**

기본 사항 입력 (원단위 입력) 초기화

과세연도	수입금액(당해연도)	업체규모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선택 ▼

세액공제 대상 비용 입력 (원단위 입력)

비용항목	인건비	재료비 등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합계(①)
지출비용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 발생액 계산 (※ 적용 배제: ④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는 경우, ⑤ 직전 1년 비용이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과세연도 발생액(-①)	직전 4년 발생액 계 (②) = (③+④+⑤+⑥)	직전 1년(③)	직전 2년(④)	직전 3년(⑤)	직전 4년(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		직전 3년간 연평균 발생액		직전 2년간 연평균 발생액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증가발생액 (①-⑦)
					<input type="text"/>

공제세액 계산

기업구분	공제구분	해당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기본사항의 업체규모 (중소/중견/일반)	당기분	<input type="text"/>
	증가분	<input type="text"/>

1 **작업요령**

- ① '간이계산기' 메뉴를 클릭
- ② '기본사항', '세액공제 대상 비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 발생액'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 계산 가능

◆ 사전심사 담당 기관 및 부서

담당업무	사전심사 기관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일반·중견기업 사전심사, 재심사	국세청(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044)204-3923~33
중소기업 사전심사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02)2114-3033~39
	충북지방국세청 법인세과	(1620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031)888-4963~9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032)718-6494~6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3438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	(042)615-2493~5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062)236-7483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053)661-7484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	(051)750-7463~5



0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 세액공제 개요

- (개요) 내국인이 지출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
- (도입취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 (세액공제)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 연구·인력개발 정의

-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
- (인력개발)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2호)

◆ 세액공제 요건


- (형식적 요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요건에 규정된 비용.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외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실질적 요건)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할 것

 **연구·인력개발의 정의(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제12호)**


-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조특령 제1조의2 활동을 제외함
-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계산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금액 = ① + ②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기업규모·업종·기술종류별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을 곱한 금액
 -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당기발생액×공제율
 - ②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당기발생액×공제율
 - 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와 ㉡ 중 선택
 - ㉠ 증기분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당기발생액 - 직전기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공제율
 - ㉡ 당기분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당기발생액×공제율

제도 개요

I

II

III

IV

V



세액 공제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공제율

구분	2014~2016	2017	2018~2023
중소기업		30%	$30\% + \text{Min}\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3, 10\%\right)$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0%	$20\% + \text{Min}\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3, 10\%\right)$	$25\% + \text{Min}\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3, 15\%\right)$
그 외 중견기업 및 일반기업			$20\% + \text{Min}\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3, 10\%\right)$

※ 수입금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2014~2016년은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구분되어 각각 별도로 공제신청

- ① 중소기업 :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소비성서비스업 영위기업은 제외)
* 제조업(8백억~1천5백억원), 건설·도소매업(1천억원), 서비스업(6백억원)
- ②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니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
- ③ 일반기업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제율

구분	2021.7 ~ 2023
중소기업	$40\% + \text{Min}\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3, 10\%\right)$
그 외 기업	$30\% + \text{Min}\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3, 10\%\right)$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① 당기분 방식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 공제율

구분	2014 ~ 2017	2018 ~ 2023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유예		1~3년차 : 15% 4~5년차 :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17: $\text{Min}\left(1\% + \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50\%, 3\%\right)$	$\text{Min}\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50\%, 2\%\right)$
	'15~'16: $\text{Min}\left(2\% + \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50\%, 3\%\right)$	
	'14: $\text{Min}\left(3\% + \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50\%, 4\%\right)$	

② 증가분 방식=(당해연도 연구개발비-직전연도 연구개발비)×공제율

구분	2014 ~ 2016	2017 ~ 2018	2019 ~ 2023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40%	
일반기업		30%	25%

※ 증가분 방식의 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증가분 방식은 적용하지 않고 당기분 방식만 적용함

- ① 당기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② 직전기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당기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소급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

$$\frac{\text{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text{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 수}} \times \frac{\text{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12}$$

※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

☞ 과도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직전연도에 의도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를 줄이는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또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2항)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인력개발비

①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가 공통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6항)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은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은 전액 신성장·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



② 재료가 공통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6항)

- (계산방법) 공통재료비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계산

공통재료비 안분계산 방법

$$\text{㉐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text{공통재료비} \times \frac{A}{A+B+C}$$

$$\text{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text{공통재료비} \times \frac{B}{A+B+C}$$

$$\text{㉒ 일반연구개발비} = \text{공통재료비} - \text{㉐} - \text{㉑}$$

※ A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의 인건비

B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의 인건비

C : 일반연구개발의 인건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 사례(2023년 귀속)



사례 ① | (주)☆☆(중소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사업자 개요

- 법인명: (주)☆☆

- 업종: 산업용로봇 제조업

〈(주)☆☆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500억	550억	600억	700억	800억
자산총액	800억	800억	900억	900억	950억
연구·인력개발비	1.5억	2.0억	2.0억	2.3억	2.8억

■ 세액공제액 계산

- (주)☆☆는 중소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증가분 방식: (2.8억 - 2.3억) × 50% = 2,500만 원

- 당기분 방식: 2.8억 × 25% = 7,000만 원

- 따라서 (주)☆☆는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여 7,000만 원 공제



사례 ② | (주)★★(중견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사업자 개요

- 법인명: (주)★★ - 업종: 합성수지선 제조업

〈(주)★★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1,600억	1,650억	1,700억	1,800억	1,900억
자산총액	2,100억	2,150억	2,300억	2,500억	2,700억
연구·인력개발비	4억	5억	5억	6억	8억

■ 세액공제액 계산

- (주)★★는 중견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증기분 방식: $(8억 - 6억) \times 40\% = 8,000만 원$
- 당기분 방식: $8억 \times 8\% = 6,400만 원$
- 따라서 (주)★★는 증기분 방식을 선택하여 8,000만 원 공제

제도 개요

I

II



사례 ③ | (주)◆◆(일반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사업자 개요

- 법인명: (주)◆◆ - 업종: 자동차부품 제조업
- 상장여부: 코스닥상장

〈(주)◆◆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7,000억	8,000억	8,500억	9,000억	9,500억
자산총액	3,000억	3,500억	3,800억	4,000억	4,500억
연구·인력개발비	20억	30억	35억	40억	45억

■ 세액공제액 계산

- (주)◆◆는 일반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 증기분 방식: $(45억 - 40억) \times 25\% = 1억 2,500만 원$
- 당기분 방식: $45억 \times \text{Min}\left(\frac{45억}{9,500억} \times 50\%, 2\%\right) = 1,065만 원$
- 따라서 (주)◆◆는 증기분 방식을 선택하여 1억 2,500만 원 공제

III

IV

V



사례 ④ | ◇◇(개인사업자)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사업자 개요
 - 상호: ◇◇
 - 업종: 플라스틱사출 제조업

〈◇◇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20억	25억	30억	30억	33억
자산총액	30억	33억	33억	35억	40억
연구·인력개발비	2억	2.1억	2.3억	2.5억	3.3억

- 세액공제액 계산
 - ◇◇는 중소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증가분 방식: $(3.3억 - 2.5억) \times 50\% = 4,000만 원$
 - 당기분 방식: $3.3억 \times 25\% = 8,250만 원$
 - 따라서 ◇◇는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여 8,250만 원 공제



사례 ⑤ | (주)◇◇(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 사업자 개요
 - 법인명: (주)◇◇
 - 업종: 반도체 제조업
 - 상장여부: 비상장
 - 연구개발 활동: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중 '지능형 반도체·센서' 분야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소재·장비' 개발 진행

〈(주)◇◇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2,100억	3,000억	3,500억	4,000억	4,500억
자산총액	2,000억	2,500억	3,000억	3,100억	3,500억
연구·인력개발비	4억	5억	5억	6억	8억

- 세액공제액 계산
 - (주)◇◇는 중견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비용분: $8억 \times 20\% = 1억 6,000만 원$
 - 비율분: $8억 \times \text{Min}(\frac{8억}{4,500억} \times 3, 10\%) = 426만 원$
 - 따라서, (주)◇◇는 비용분과 비율분을 합산한 1억 6,426만 원 공제

◆ 증거서류 작성·보관 의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3항)

-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3항)
 - 다른 공제 제도는 대부분 업종, 외형, 지역 등 형식적 요건만 규정하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실질적 요건까지 부합해야 함
 -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및 부당한 조세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증빙서류 작성·보관 의무를 부여함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이 운영하는 연구노트포털(<http://www.e-note.or.kr>)에서 연구노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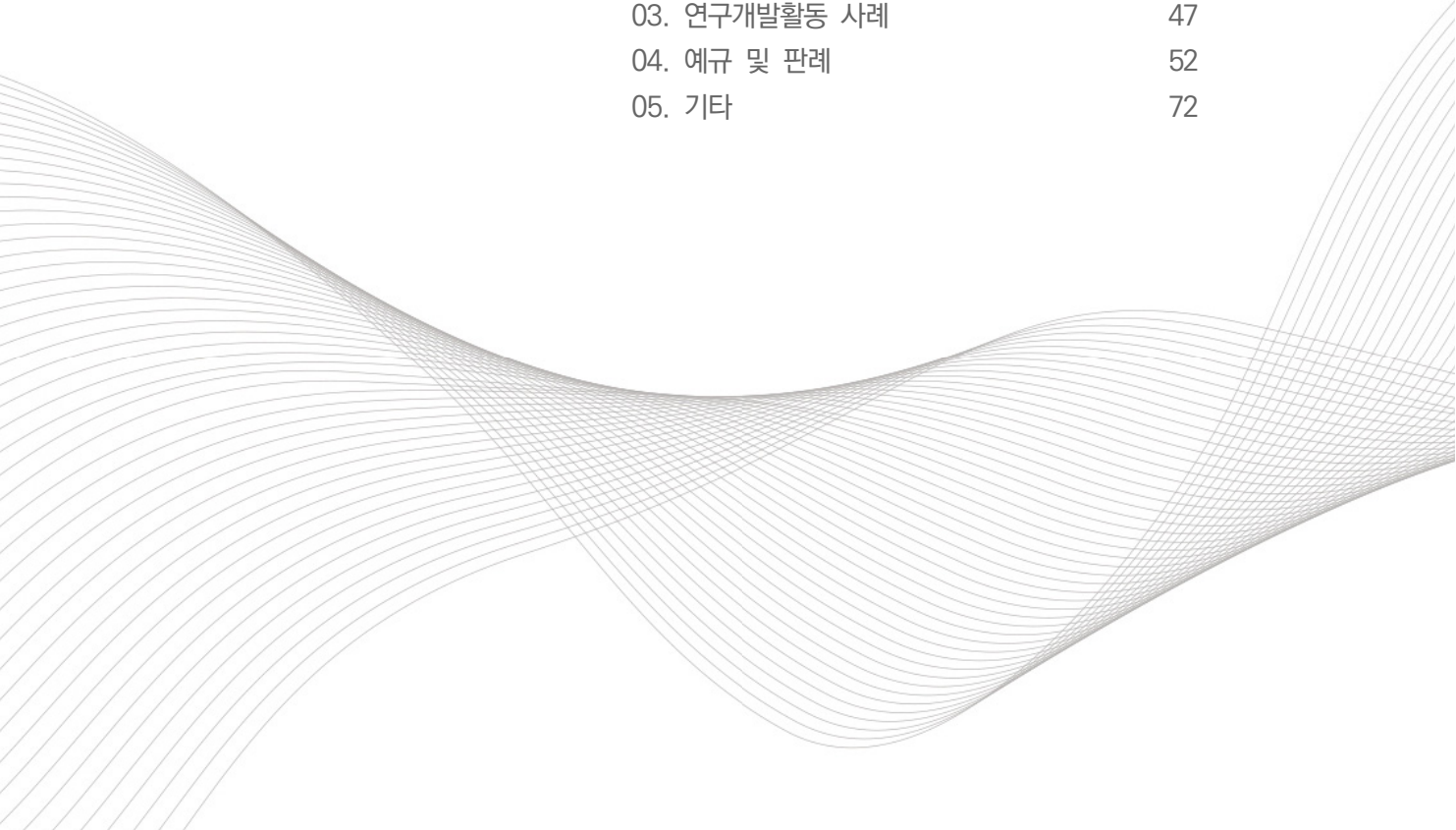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의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 ⑰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II 연구개발활동 검토

01. 연구개발활동 정의	27
02. 적격·부적격 연구개발활동 개관(概觀)	31
03. 연구개발활동 사례	47
04. 예규 및 판례	52
05. 기타	72



II

연구개발활동 검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위해 연구개발활동 검토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일관된 기준 제시

✓ 연구개발활동 사전심사 중 연구개발활동 주요 항목

연구개발활동
(정의*부합 여부 확인)

*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조특법§2)

연구개발활동 검토

01

연구개발활동 정의

◆ 연구개발활동 개관(概觀)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
 -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호
 - 과학기술 분야 또는 특정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 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함

○ 프라스카티 매뉴얼((OECD Frascati Manual 2015, 제7판)

- OECD에서 연구개발(R&D)에 투입된 자금 및 인적자원에 대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통계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연구개발 지침으로
- 지식의 집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인간, 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포함) 그리고 지식을 통한 새로운 응용을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연구개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연구개발은 독창적 개념이나 가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결과물이 대체로 불확실하고(또는 적어도 결과물 달성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양이 불확실함),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거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결과물을 생산하는 활동임
- 이에 따라 특정 활동이 연구개발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다섯 가지 기준, 신규성(novel), 창의성(creative), 불확실성(uncertain), 체계성(systematic) 그리고 이전가능성/또는 재현가능성(transferable and reproducible)을 충족해야 함

✓ Frascati Manual, 2015, OECD(프라스카티 매뉴얼)

〈연구개발로 분류될 수 있는 특징〉

신규성 (no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활동은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 설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나 아이디어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 예)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로 이미 업계에 알려진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면 신규성이 없지만 연구개발 수행으로 기존과 차별화된 결과물이 도출되면 신규성 인정 가능
창의성 (crea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활동은 기존 지식을 개선하는 새로운 개념이나 아이디어의 창출을 목적으로 함 예) 데이터 처리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은 연구개발임
불확실성 (uncert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은 다양한 측면의 불확실성을 지님(연구개발 최종 결과물, 비용, 투입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움) 예) 종래 기술을 단순 변용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작하는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이 아님(결과의 불확실성 부재) 예) 높은 실패위험을 갖는 기술적 개념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음
체계성 (systema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이 계획된 방법으로 수행되고, 진행된 프로세스와 결과물이 기록됨 예)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구체적 목적과 연구개발 자원(인적, 물적)에 대한 자료가 있음
이전가능성, 재현가능성 (transferable, reproduc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연구원들이 연구활동 결과를 재현(성공, 실패 모두)할 수 있어야 함 예)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것,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문서화시키는 것은 이전가능성이 있음

연구개발활동 검토

I

II

III

IV



‘연구개발 활동’의 판례상 정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05. 2017.7.13.)

- **(기업응용연구)** 과학기술 연구 및 성과를 기업생산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도 연구 개발의 범주에 포함 가능하지만,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과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어야 함
- **(비연구활동)** 상용화, 사업화된 기술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다소 보완, 변형함으로써 약간의 효율성, 편리함을 더하였거나, 특정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의 것으로는 부족함

V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이 언급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543. 2020.5.8.)**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조특법 제9조제5항에서 ‘연구개발’의 개념으로 ‘과학기술 활동’이 처음 도입되었다. 위 개정 취지는 ‘연구개발의 정의 및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를 국제적인 기준[OECD의 연구개발(R&D) 개념]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위 법 개정 이후로는 쟁점 세액공제의 요건인 과학기술 활동인지 여부에 관하여 OECD의 연구개발 개념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OECD가 1963년부터 발간·개정해오고 있는 연구개발통계 조사 지침서인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에 따르면, ‘새롭고, 창의적이고, 불확실하고, 체계적이고, 이전가능하거나 재현 가능한 활동’만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은 혁신(신제품이나 상당히 개선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또는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때 신규 프로세스나 상당히 개선된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것) 활동의 일부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S/W 개발 프로젝트가 연구개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종결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프로젝트의 목적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여야 한다. 기존 S/W 프로그램이나 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 또는 수정 작업도 위와 같은 결과와 목적을 구비한다면 연구개발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에 미치지 않는 응용이나 개선 수준에서 이미 개발된 S/W 도구를 이용하여 기업용 S/W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정도의 것은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비연구개발활동 개관(概觀)

- 연구개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호의 연구개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 프라스카티 매뉴얼에서 분류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는 “연구개발”을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은 제외한다고 정의함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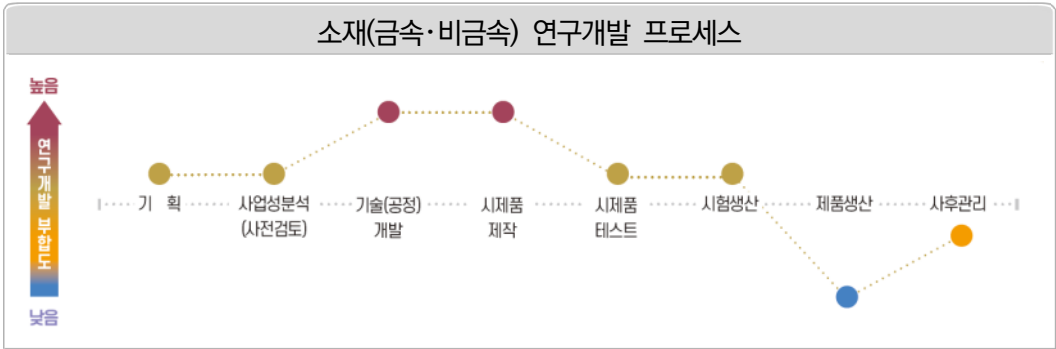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02 적격·부적격 연구개발활동 개관(概觀)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 과
- ② 비연구개발활동으로 정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사례와 신청인이 혼동하는 사례를 추가하여 설명

주요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 부합도



※ 출처 : '23.02 산업별 연구개발 활동 가이드라인(기계·금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검토 대상 : 연구개발 활동 단계) 제품 제조(양산)이전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
 -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품 또는 기술(공정)을 구체화하고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을 통하여 최적화
 - 기획 단계 ⇨ 기술(공정)개발 ⇨ 시제품제작 단계 ⇨ 시제품시험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 기술(공정)개발 최적화 과정의 시행착오 및 제품 제작과정에 대한 기록(사진 또는 연구노트 등)을 보관
 - 단순 고객대응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과 관련된 특수한 피드백 및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후관리 활동

- (비연구개발 활동 단계) 개발완료 후 사후관리단계 활동의 특징
 - 시험생산 설비가 아닌 기존 제품생산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하거나 시험생산 결과물을 판매하는 활동
 - 제품 상용화 후 일반적인 시장 반응을 확인을 위한 소비자 테스트 활동
 - 판매된 제품의 기술지원, 고객불만요소 해소 및 판촉활동, 단순 고객 대응 목적의 활동



※ 출처 : '23.02 산업별 연구개발 활동 가이드라인(기계·금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검토 대상 : 연구개발 활동 단계) 제품 제조(양산)이전의 시제품 제작과 검인증까지의 과정
 - 사업성 분석을 통한 업무 계획 수립과 중점 과제 구체화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목표(정밀도 및 기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컨셉 구체화
 - 제품의 성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SW, 소재, AI 등)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설계하는 단계
 - 고객사와 협의를 통한 시제품의 성능 및 기술에 대한 검인증(외부 기관을 통한 품질 인증, 안전 인증 등)
- (비연구개발 활동 단계) 시험 생산 후 제품 생산 및 사후관리
 - 시험생산 설비가 아닌 기존 제품생산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하거나 시험생산 결과물을 판매하는 활동
 - 제품 상용화 후 일반적인 시장 반응을 확인을 위한 소비자 테스트 활동
 - 판매된 제품의 기술지원, 고객불만요소 해소 및 판촉활동, 단순 고객 대응 목적의 활동
 - 납품된 정밀기계장치의 유지보수 활동

연구개발활동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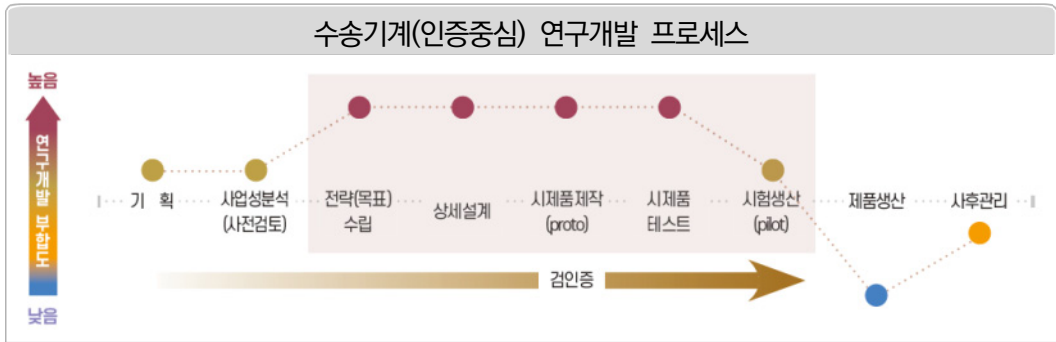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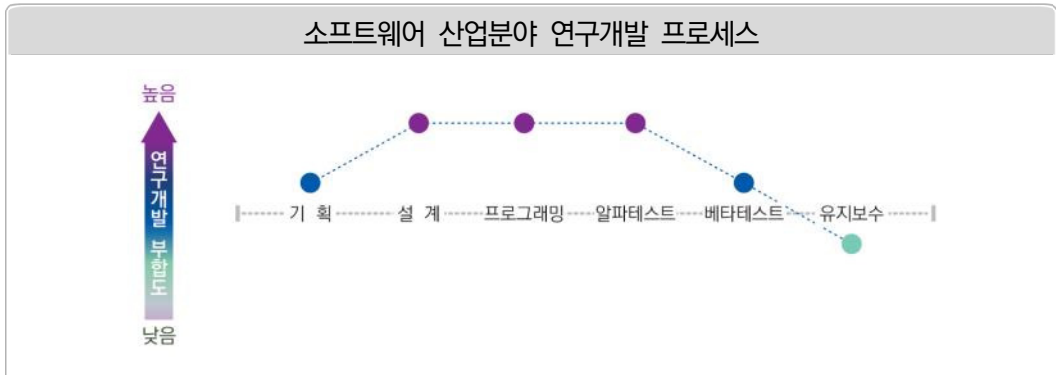
IV

V



※ 출처 : '23.02 산업별 연구개발 활동 가이드라인(기계·금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검토 대상 : 연구개발 활동 단계) 제품에 대한 검인증이 제품개발에 필수적인 개발 활동으로서, 연구개발 과정 전체에 검인증이 관여함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핵심기술개발(자체/공동개발 또는 아웃소싱)수립, 통합 인증 계획 수립
 - 세부과제별 기본/상세 설계, 배치 설계 검토, 인증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마일스톤 수립
 - 상세설계를 바탕으로 인증 기분에 따른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스템을 통합하는 단계
- (비연구개발 활동 단계) 시험 생산 후 제품 생산 및 사후관리
 - 기술개선이 없는 단순한 공정 최적화 과정
 - 판매목적의 시제품을 시험생산한 경우
 - 기술개선이 없는 단순 사후 지원 서비스
 -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



※ 출처 : '20.01 기업 연구개발 활동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활동 단계) 기획 단계에서 유료 및 상용화가 되기 전 상태인 오픈베타 테스트 단계까지의 과정
 - 기획 단계 ⇨ 설계 단계 ⇨ 프로그래밍 단계 ⇨ 알파 및 베타테스트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 아이디어 도출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수행되고 데이터 내용 및 객체 표현방식 설정 등의 구체화가 진행
 -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탕으로 실제 기술을 구현하고 테스트를 통한 개선방법 도출 등의 개발과정을 검토

- (비연구개발활동 단계) 기술 개발 완료 이후 유지보수단계 활동의 특징
 - 제품 출시 후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술지원과 이를 통해 생긴 로그 수집/저장 등의 활동은 통상적인 유지보수 활동
 - 피드백을 위한 과정으로 수행되는 자료수집의 경우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필요하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인 연구개발에는 미치지 못함

연구개발활동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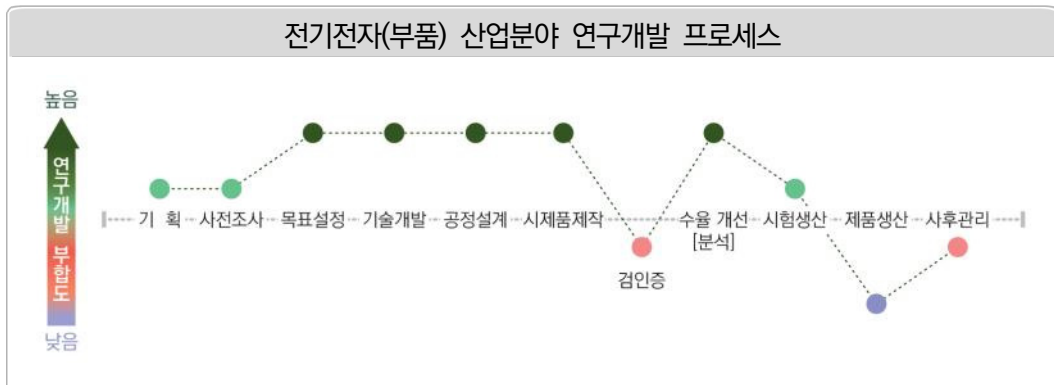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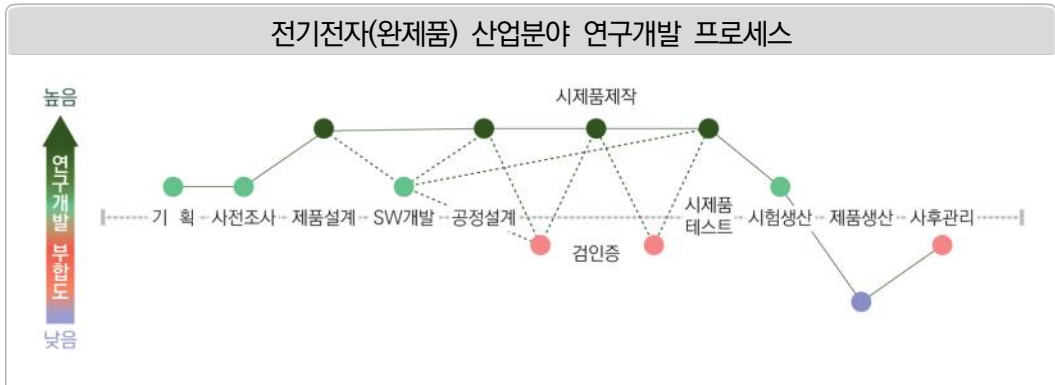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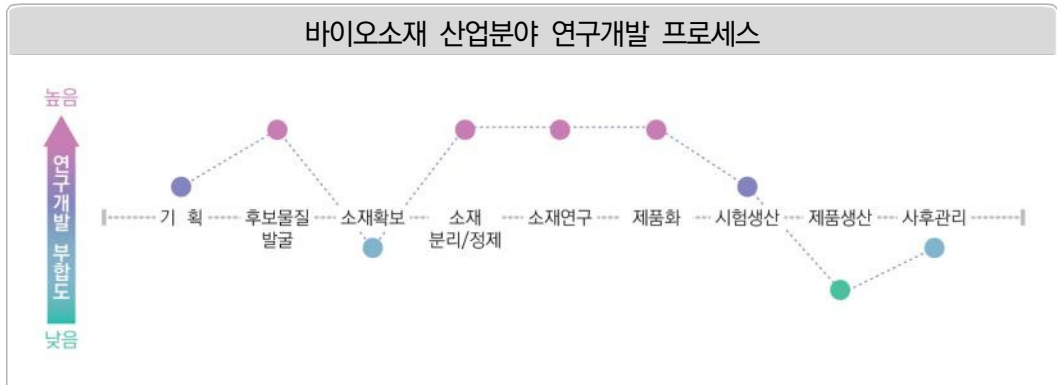
※ 출처 : '21.01 기업 연구개발 활동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활동 단계) 제품 생산(양산) 이전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
 -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품 또는 기술을 구체화하고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을 통하여 개선사항을 해결
 - 기획 단계 ⇨ 목표설정 단계 ⇨ 개발 단계 ⇨ 시제품 제작 단계 ⇨ 수율 개선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 * 다만, 산업 간 연구개발과 양산의 범위 및 단계는 상이 할 수 있음
 - 제작 및 성능 검증 이후 양산 단계로 진입하여 매출 활동에 기여
- (비연구개발활동 단계) 제품생산 및 사후관리 등 비연구개발 활동의 특징
 - 시제품을 제품 구동 여부 또는 수율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검인증, 영업,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
 - 제품 출시 후 실제 사용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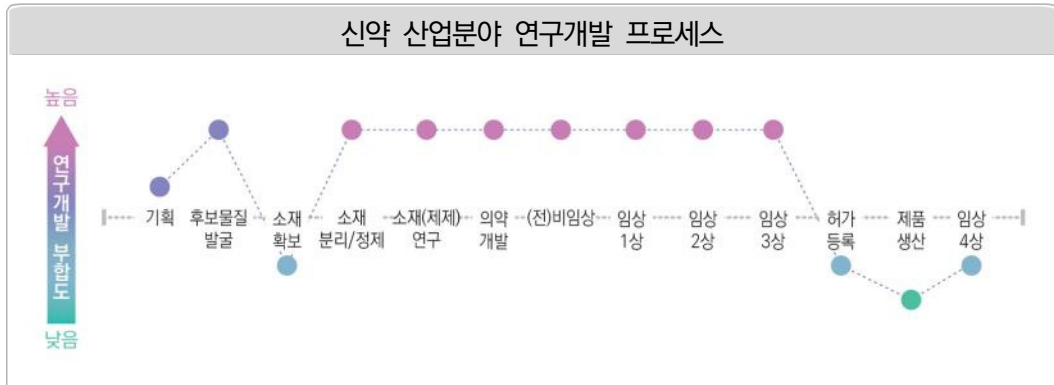
※ 출처 : '21.01 기업 연구개발 활동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활동 단계) 제품 생산(양산) 이전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
 -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품 또는 기술을 구체화하고 세부 요소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을 설계
 - 기획 단계 ⇨ 제품 및 공장설계 단계 ⇨ 시제품 제작 단계 ⇨ 시제품시험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 * 다만, 산업 간 연구개발과 양산의 범위 및 단계는 상이 할 수 있음
 - 제작 및 성능 검증 이후 양산 단계로 진입하여 매출 활동에 기여
- (비연구개발활동 단계) 제품생산 및 사후관리 등 비연구개발 활동의 특징
 - 시제품을 제품 구동 여부 또는 수율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검인증, 영업,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
 - 제품 출시 후 실제 사용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연구



※ 출처 : '21.01 기업 연구개발 활동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활동 단계) 후보물질 발굴에서 소재연구 및 제품화 단계까지의 과정
 - 후보물질 발굴단계 ⇨ 소재분리/정제 단계 ⇨ 소재연구 단계 ⇨ 제품화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 후보물질 발굴 시 기존 물질이 아닌 신물질에 대한 물성 분석을 수행하고 다양한 성분 추출 연구를 반복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
 - 후보물질에 대한 성분함량 및 구조분석 등을 통해 최종 물성/안전성 확보
 - 연구된 소재의 제품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기능, 설계 등을 창출, 개선하는 과정
- (비연구개발활동 단계) 제품 출시 이후 사후관리단계 활동의 특징
 - 실제 사용환경에서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연구



※ 출처 : '21.01 기업 연구개발 활동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 활동 단계) 후보물질 발굴에서 소재연구 및 임상 단계(3상)까지의 과정
 - 후보물질 발굴단계 ⇨ 소재분리/정제 단계 ⇨ 소재연구 단계 ⇨ 의약개발 단계 ⇨ 임상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 신약 개발의 경우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실패의 확률이 매우 높은 분야이므로 성공/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연구자료의 보관이 중요

- (신약 개발 단계별 주요 프로세스)
 - 후보물질 발굴: 약물 타겟을 억제하기 위한 화합물질 합성, 기존 소재 데이터 분석 또는 천연물 추출 연구를 반복하여 새로운 후보물질을 발굴
 - 소재(제제)연구: 투여가 용이하고 약리효과가 최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제형으로 개발
 - 전임상: 체내동태연구와 약효약리연구 및 동물 또는 세포 실험을 통해 부작용 및 독성을 검사
 - 임상1상: 소수의 건강한 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안정성과 내약성 평가, 효능에 대한 일차적 근거 확보
 - 임상2상: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적응증과 용법, 용량을 결정
 - 임상3상: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치료요법과의 결과 비교 및 의약에 대한 장기 안정성 평가

연구개발활동 검토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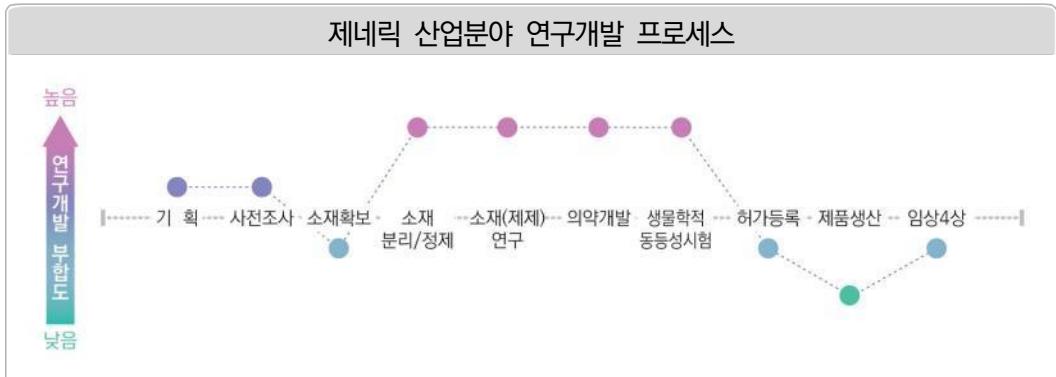
II

III

IV

V

- (비연구개발 활동 단계) 허가 완료 이후의 활동, 개발과정에서 연구지원 및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한 자에 대한 인건비
 - 임상4상은 제품 출시 후 환자들에게 투여 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증상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연구로 통상적으로 임상4상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허가 완료 이후 수행하는 활동은 통상적으로 연구개발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내국 법인이 임상3상 시험의 적합한 실시를 조건으로 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임상3상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와 내국법인이 자체 개발하여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로 인정 가능(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98, 2021.09.03.)
 -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등 위탁용역 계약체결, 단순 모니터링, 대관업무 등 연구개발활동이 아닌 연구지원, 연구 행정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출처 : '21.01 기업 연구개발 활동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 활동 단계) 후보물질 체계화에서 소재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까지의 과정
 - 대조약과 동등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용출평가, 봉해시험 등의 각종 비교 평가와 제제 연구활동이 필수적으로 수반
 - 후보물질에 대한 성분함량 및 구조분석 등을 통해 최종 물성/안전성 확보
- (제네릭 개발 단계별 주요 프로세스)
 - 소재(제제)연구: 투여가 용이하고 약리효과가 최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제형으로 개발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임상시험의 일종으로 주성분 및 함량,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
- (비연구개발 활동 단계) 허가 완료 이후의 활동, 개발과정에서 연구지원 및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한 자에 대한 인건비
 - 임상4상은 제품 출시 후 환자들에게 투여 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증상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연구로 통상적으로 임상4상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 받기 어려움
 - 제네릭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등 위탁용역 계약체결, 단순 모니터링, 대관업무 등 연구개발활동이 아닌 연구지원, 연구행정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연구개발활동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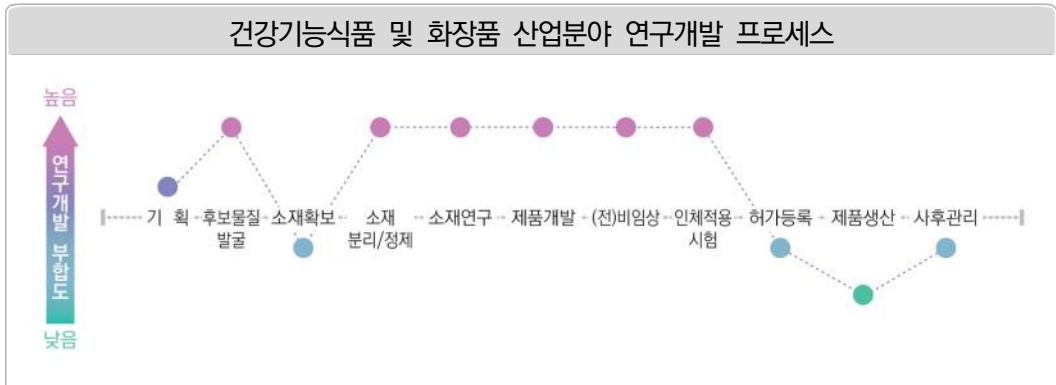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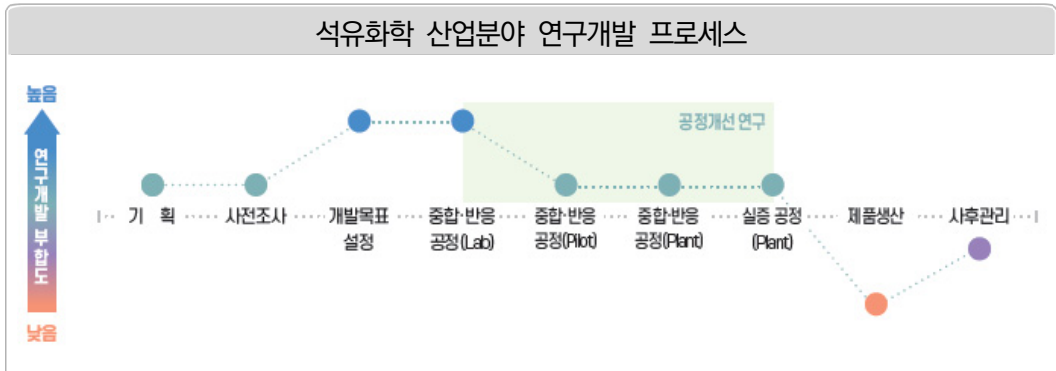
IV

V



※ 출처 : '21.01 기업 연구개발 활동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활동 단계) 후보물질 발굴에서 소재연구 및 인체적용 시험까지의 과정
 - 후보물질 발굴단계 ⇨ 소재분리/정제 단계 ⇨ 소재연구 단계 ⇨ 제품개발 단계 ⇨ 임상 및 인체적용시험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 동물 또는 세포 실험을 통해 부작용 및 독성을 검색하는 안전성 평가
 - 특정 식품 및 화장품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 시험 또는 중재시험 실시
- (비연구개발 활동 단계) 인체적용시험 이후 단계 활동의 특징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에 따라 안정성과 기능성을 입증하여 허가를 취득하는 허가등록단계는 통상적으로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사후관리 단계에서 단순 고객대응을 목적으로 피드백을 수집하는 활동



※ 출처 : '21.12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 활동 단계) 개발목표 설정에서 공정개선 연구 및 실증화 단계까지의 과정
 - Lab. 스케일 중합·반응평가 및 공정개선 평가 ⇨ Pilot라인 중합·반응평가 및 공정개선 평가 ⇨ Plant 실증공정 ⇨ 제품화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 중합·반응평가는 정유화학 공정을 통해 분리된 기초유분의 중합 또는 촉매반응을 통해 Lab. 및 Pilot 수준에서의 목표제품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
 - 최종 생산제품이 중간재의 형태인 기초화학 제품인 이유로 고객사의 실증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제품 특성 개량 및 공정개발이 수반됨
 - 소재의 제품화를 위해 필요한 합성법, 물성, 스케일업 등을 창출, 개선하는 과정
- (비연구개발 활동 단계) 단순 맞춤형 제작 및 사후관리 활동
 - 실제 사용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의 사후관리 활동은 통상적으로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기존 기술 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다소 변형하여 고객 맞춤형 제품 제작 활동 및 기술영업

연구개발활동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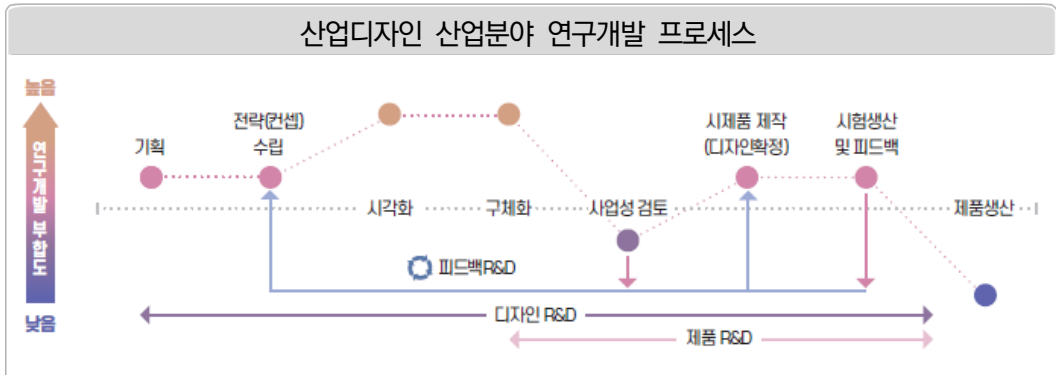
I

II

III

IV

V



※ 출처 : '21.12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 활동 단계) 창작 및 개선을 위해 피드백을 통한 순환형 과정
 - 산업·시장분석, 소비자분석을 통한 기획 ⇨ 기획 방향에 따른 컨셉 수립 ⇨ 아이디어 시각화 단계 ⇨ 구체화 단계 ⇨ 디자인 확정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 스케치 등을 통해 전반적인 디자인 방향성과 기본적인 형상을 이미지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수립
 - 시각화된 스케치 결과를 2D, 3D프로그램 등의 방법을 통해 구체화 진행
 - 결정된 디자인을 반영한 시제품 제작, 피드백 통한 개선사항 탐색, 세부디자인 최종 확정
- (비연구개발 활동 단계) 제품생산 단계 등 비연구개발 활동의 특징
 - 구체화된 디자인에 대한 제품 출시 및 상용화를 위해 사업성을 집중적으로 검토 하는 활동
 - 시장분석과 리서치를 통한 기획·컨셉개발 등의 구체적인 개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디자인 결과물만을 토대로 제품생산을 검토하는 활동
 - 타 회사의 디자인실에서 디자인 결과물 혹은 생산작업지시서만 받아 제품을 생산 하는 활동

◆ 부적격 연구개발활동 유형

	비연구개발 활동	세부내용
1	창의성·차별성 없는 일상적인 개선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 기술을 단순 변용하는 수준의 일상적인 개선 활동이나 맞춤형 제작 활동 ☞ 맞춤형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일상적인 가공 활동, 양산준비 활동, 정기적인 앱 업데이트, 고유디자인으로 볼 수 없는 편집 활동, 일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교육자료 집필활동, 제조 작업일지를 연구노트로 작성, 범용 기술을 이용한 제품제작, 과학적 분석 없이 음식 레시피만을 단순 개선하는 활동,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는 활동 • 관련사례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05, 2017.7.13. 조심2016중3124, 2017.3.29.
2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및 용역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에게 비용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개발로 연구결과물 등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용역활동으로 연구용역비 매출 발생이 확인된 경우 ☞ 수탁연구활동, 일반용역활동
3	지식 향상을 위한 단순 조사·인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과 인터넷, 특허, 정부지원과제 결과물 등의 공지된 정보를 단순 인용하는 활동으로 실제 개발로 연결되지 않는 수준의 조사·인용 ☞ 타사 정부지원과제·특허·서적의 내용을 단순 요약한 연구자료, 타사의 과거 특허를 복사하여 출원하는 활동
4	체계적이지 않은 연구개발 활동 (연구증거 불충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연구개발보고서나 연구증빙자료(연구노트 등, 회의록, 지식재산권)를 통해 연구개발활동이 확인되지 않거나 연구개발활동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연구증거가 부족한 경우
5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생산관리 및 지원업무 ☞ 생산관리 체계 개선, 파일럿 라인 관리, 위탁과제 관리, 인증을 위한 행정업무, 양산을 위한 행정업무, 환경 안전 업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6	과세연도 이전에 수행한 연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연도 이전에 개발이 완료된 과거 연구결과물을 증빙자료로 제시한 경우 ☞ 과거 출원한 특허·논문·정부과제 결과물, 양산 중인 제품에 대해 과거 개발한 개발자료, 그 외 과거 수행한 연구 증빙자료

연구개발활동 검토

I

II

III

IV

V

	비연구개발 활동	세부내용
7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영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고객사 제품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활동, 고객사 프로모션용 데모장비 제작 활동 • 매출향상을 위한 시장조사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제품에 적용할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시장조사 활동, 신제품 홍보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광고용 이미지를 촬영하는 활동 • 연구전담요원이 반드시 수행할 이유가 없는 품질시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품질평가, 품질보증업무, 원부자재 입출고 검사
8	반복적인 정보수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는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활동, 관련법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활동
9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과 관련이 낮은 경영·관리 등의 분야에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확장을 위한 조사 활동, 재고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사 제품군 조사 및 통합 활동
10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 도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 등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도입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이거나 스마트팩토리 등을 도입하는 활동으로 자체개발과 구별되는 활동 • 관련 사례 : 조심-2015-부-2443, 2018.10.29.
11	유지보수나 단순 기술지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산·납품·서비스 중인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나 간단한 기술적 결함에 대한 지원, 현장지원 및 영업지원 업무, 현장 교육, 영업 연장선에 있는 제품 교육 등이 포함됨
12	기타 불인정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록 전이거나 취소 이후에 수행한 연구활동 • 수탁받은 과제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활동

03 연구개발활동 사례

적격/부적격 연구개발활동 유형을 사례로 소개하고 예규 및 판례를 통한 판단기준 및 사유 제시

❖ (적격)연구개발활동 사례

항 목	내 용
자체 선행 연구개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이전 신제품 제작 및 사업 다변화를 위한 활동으로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실시, 연구노트 및 결과보고서 구비 • 신제품 개발에 따른 기술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위탁 또는 수탁이 아닌 자체 연구개발 과제로, 기술적 진전 및 고유성이 확인되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
신규성 및 체계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유효성분)의 신규성이 인정되며 개발 관련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성 및 재현 가능성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 • 특허등록 및 정부지원과제 활동서류를 통해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 확인되어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
자체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양산준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사로부터 부품 생산 의뢰받아 납품하기 위한 양산준비단계 활동에 해당 하여도 당사가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여 연구개발에 따른 지적 재산권과 같은 성과물을 소유하는 경우 자체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
고객사 요구사항 기반 신기술 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 및 양산 계약 이전에 고객사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활동은 신규성이 인정되며, 연구 증빙자료를 통해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시제품 제작 및 시험 활동이 확인되어 적절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
기존 프로그램을 윈도우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형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프로그램을 변형하는 활동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에 해당하지 않아도 연구 증빙자료를 통해 기존 시스템들의 구조 변경 활동과 기존 데이터 무결성 보장을 위한 실험적 활동 및 결과적 불확실성과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창의적 과정을 확인하고, 프로토타입 제작 후 특정 제조공장에 시범 적용과 통합테스트 활동 및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이 확인되어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
UX 인터랙션 디자인 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경험하며 행동하는 '상호작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랙션디자인을 진행한 활동 • 고객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기초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는 활동에 해당되고, 신규성·창의성·체계성이 확인되면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

연구개발활동 검토

I

II

III

IV

V

항 목	내 용
제네릭 의약품 개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원개발 의약품과 동등함을 식약처로부터 인정 받기 위해 불확실성을 내포한 의약품 개발 활동을 연구개발로 인정 * 제네릭 의약품 :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원개발 의약품)과 동등한 의약품
소재 합성 공정개선 및 유해성 원재료 대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양산 중인 소재의 제조공정 수를 줄이고, 유해성이 높은 원재료를 대체하기 위한 합성법 개발 활동은 신규성을 내포한 활동이며, 합성법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확인될 경우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 가능
프로그램의 인식률 개선을 위한 고도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을 불량으로 인식하는 ‘과검’과 불량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검’ 발생 비율을 낮추기 위해 영상의 특징을 반복 학습하고, 알고리즘개선으로 인식률 향상 활동을 수행하여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한 고도화 과정 확인 고도화에 따른 기술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보고서에 기록된 고도화 과정에서 창의적 해결방법 및 체계적인 실험과정이 확인되어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
과제연도 이전에 등록된 특허를 적용한 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연도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 초도양산을 목적으로 시제품 제작 및 개선 활동, 성능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정인증 획득 과정 확인 이전연도에 개발된 기술이라도 시제품 제작 및 양산전까지의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
공연기획 및 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 컨셉설정,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명, 사물, 세트, 인원배치,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각도 등 공연 공간구성 요소를 정하는 활동을 확인함 기획부터 컨셉 설정까지의 구체적인 기획서와 3D 모델링한 디자인 결과물, 시안 개발과정, 실제 공연에 적용한 결과 등 구체적으로 기록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
기존 제품에 대한 원가절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제품 대비 동등 수준의 특성을 갖는 고분자 화합물 제품개발 과제임 고분자 경화반응 메카니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원가 비중이 높은 원료 W와 X를 저원가 Y와 Z로 대체하는 시험·평가 활동 확인됨 과제 기획 및 설계, 개발 품의서 확인되고, 설정된 시험·평가 방법 및 계획된 기간에 수행한 시험·평가 실험과 결과 내용 확인되어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 커스터마이징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자사 제품의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과제로 신청 범용 라이브러리를 응용하여 과학적·기술적 진보 없이 개작하는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 어려우나, 드론 제어를 위한 새로운 관제 시스템 개발과제와 라이브러리 개선과제의 개발 기간과 목적이 동일하고, 관제 시스템 개발과제에 라이브러리가 활용 및 시험·테스트 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버전 관리 체계가 확인되어, 새로운 관제 시스템 개발과제(Main Project)의 하위 활동으로 보아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

◆ (부적격)연구개발활동 사례

항 목	내 용
측량 업무 효율성 향상 목적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사업 입찰을 위해 상용 측량 제품 및 드론을 이용, 지형물을 단순 촬영 및 데이터 저장 활동은 기존 측량 업무 효율성 향상에 가까우며 과학·기술적 진전이라 볼 수 없고, 차별성과 고유성을 지닌 결과물도 아니므로 불인정
기능적 저작물의 설계용역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상복합 형태의 구조물은 이용자 편의성과 실용성이 부각된 기능적 저작물로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디자인 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 활동 불인정
연구개발 기획이나 계획 없이 개연성이 적은 연구 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산 장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여러 납품 장소에 무상으로 설치하고 국내의 지리적 상황과 환경에 적용(테스트)하는 활동, 환경별 성능향상을 위한 활동, 문제해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현장(테스트) 사이트 구축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 설치 후 결과가 좋으면 그대로 납품(계약)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확인되고, 이러한 활동은 일부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과 유사하고 - 문제점 발생 시 부품 변경 또는 약품의 비율 조절을 통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은 창의성, 재현성, 불확실성이 없으며, - 연구개발 활동의 명확한 목표 및 체계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확인되지 않아 연구개발 활동 불인정
판매중인 제품의 반복적인 품질검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에 개발을 완료한 후,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 연장을 위해서 실시되는 반복적인 품질검사는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되지 않아 불인정
고객사의 요청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제품특성 개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의 불량분석 활동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제조공정 개선 요청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사의 기술적 진전을 위한 자체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객 응대·불만 해소 등의 사후관리와 유사한 활동에 해당하여 불인정
상용기술을 단순 적용한 연구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인이 제시한 공법은 관련 분야의 상용화된 공법으로 해당 공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기존 기술 대비 개선된 결과물을 얻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공법을 단순 적용하는 활동에 불과하므로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타기관 수행한 국가R&D 과제 결과물을 복제하고 재현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R&D과제로 타 업체가 이미 수행하여 결과가 공개된 기존 연구내용을 재현 및 복제한 활동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로 불인정
기술지원 및 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 개발자료를 지원하거나(기술지원) 관련 장치 교육활동은 자체 연구개발 활동이 아닌 기술지원 활동이므로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연구개발활동 검토

I

II

III

IV

V

항 목	내 용
고객사 생산현장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연구소 내 전담부서 인력이 고객사에 파견되어 제품개발을 수행한 행위는 사실상 수탁용역에 해당 -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
소프트웨어 개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능향상 등 목표가 명확한 연구개발이라도 표준 또는 오픈 라이브러리나 소스, 프레임워크, 개발 언어 등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적용하는 활동 시행착오 과정을 거칠 뿐, 연구개발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신규성, 창의성,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인테리어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IoT 적용 사례 및 기술조사를 통해 수집된 지식을 의뢰받은 시공 현장에 적용(설계)하는 활동을 수행하였고, 의뢰사의 요구로 관련 활동이 중단 또는 축소된 정황 확인 - 시장조사와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편집디자인의 단순 반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창적인 형상·모양·색채 등의 결합을 디자인한 활동이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기적으로 레이아웃 배열 변경만 진행하거나 기존에 제작된 이미지 혹은 사진들을 단순 편집하는 활동은 신규성, 창의성, 불확실성, 체계성이 낮으므로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타사 문헌을 인용한 연구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사 또는 타사의 과거 발행된 문헌을 단순 인용하는 경우는 신규성 및 독창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인정할 수 없어 연구개발 활동 불인정
과거 연구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이 제출한 활동 내용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나, 과거에 이미 진행 완료된 연구 활동들로 확인되어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불인정
이관받은 기술을 적용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관받은 소프트웨어의 안정화 활동과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기능 개발, 시스템 결합 수정, 시스템 성능 고도화 활동 등은 이전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발 활동으로, 연구개발활동으로 불인정
원가절감 목적의 원자재 대체만을 수행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절감 목적으로 타사에서 공급하는 동일한 구조 및 성분의 원자재로 대체하는 활동만을 수행한 신청법인의 활동은 기술적 진보를 위한 활동과 거리가 있는 일상적인 영리활동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활동으로 불인정
고객사 현장평가 및 기술지원을 통한 제품 추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사 방문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해당법인의 양산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활동은 매출증대, 기술지원이 목적인 영업활동으로 연구개발활동으로 불인정
고객사의 구체적인 요청을 반영한 생산설비 개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으로 기술적 문제해결은 고객사의 분석활동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수탁 받은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임가공 활동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연구개발활동으로 불인정

항 목	내 용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습득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과 사례·시장조사와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됨 • 연구목표와 주요 연구내용 간에 연관성이 없으며, 연구 과정 중 다양한 아이디어 및 개발 방향 도출 및 후속 연구개발 계획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성, 창의성, 불확실성, 체계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고객사 의뢰 양산준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고객사로부터 부품 생산 의뢰받아 납품하기 위한 양산준비단계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 활동 불인정
기존 개발된 모델 및 방법을 활용한 컨설팅 연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경영 산업 및 동종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비즈니스 모형·모델을 토대로 컨설팅 연구가 진행되어 새로운 방법(신규성) 및 창의적으로 도출한 결과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정량적(통계 및 데이터 등 근거자료)·정성적(심층 인터뷰 등) 체계적인 연구진행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
병원 내 연구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결과물로 제출한 논문에서 전담연구원들이 저자로 등재되어있지 않고, 전담연구원들의 전공과 경력이 의료분야 및 연구개발 분야와 무관하며, 연구 증빙자료를 통해 설문조사·정보수집·고객응대·고객관리한 활동을 확인 • 체계성·창의성 있는 연구개발활동 보다는 병원 내 지원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자원관리시스템 지원사업 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이 시스템을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 도입하기 위한 활동임 •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유통기업의 상품기획, 시장조사, 품평 활동 등 신제품 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경쟁제품 후기 분석과 시장조사 등을 통한 상품기획 활동과 협력사가 제작한 시제품을 이용한 품평(사용감 등) 활동, 품평 활동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수집된 내용을 정리하여 협력사에 피드백하는 활동이 확인됨 •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제품개발에 직접 대응되는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유통업자 본연의 일상적인 상품개발 활동으로 보아 연구개발 활동 불인정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적용된 제품개발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함 • 과제협약서와 과제계획서를 통해 신청법인이 개발된 제품을 서비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과 검증, 제품 및 기술 홍보, 해외 수요기업 발굴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협약된 것을 확인함 • 과제 연차보고서를 통해 해당연차에 연구개발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조사 및 동향 파악과 분석한 활동이 확인되어 연구개발 활동 불인정

연구개발활동 검토

I

II

III

IV

V

04 예규 및 판례

◆ 주요 예규 및 법원 판례

제 목 조심-2022-서-5721, 2023.07.06.

쟁점연구소에 대한 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청구법인은 판촉물 도매 및 프랜차이즈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인쇄물 출판 디자인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연구소 직원들이 디자인 관련 연구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고객지원팀 업무도 같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연구소 직원들의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한 결과물인 연구자료를 보면 대부분 사진 및 배경그림 등을 결합한 디자인에 불과하여 이는 독창적인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되는 고유디자인을 개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의 직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 목 조심-2023-중-0403, 2023.08.17.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 불만처리 업무는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Sales support 업무와 Manufacturing support 업무는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고 생산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를 연구·개발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제 목 서면-2021-법인-7893, 2022.04.2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요 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제 목 조심-2022-서-7288, 2022.12.21.

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과 전자·정보통신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쟁점부서(선형기술1·2팀, 금형기술팀 및 신차품질1·2팀 총 5개 팀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서”라 한다)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부서가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재료비·금형비 등은 연구·인력개발비로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쟁점부서가 시제품 제작 이외에 고객사의 요구조건과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일반적인 신제품에 대한 상품화개발과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제품 제작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고 인건비 중 시제품 제작 관련분을 안분·계산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부서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그러나,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전담부서 등의 소속 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의 역할을 전담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제 목 > 조심-2021-인-5767, 2022.12.06.

쟁점금형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법인은 자동차주행 소음저감 장치에 필요한 자동차부품(헤드라이너 등)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쟁점금형비는 신차 양산 전에 설계품질을 확인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시작(내구나 법규대응 확인단계로 생산라인을 통하지 않고 제작)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 투입되는 금형인 시작금형을 제작하는데 발생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느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제 목 > 서면-2021-법인-7512, 2022.04.22.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제 목 > 조심-2022-중-2360, 2022.08.02.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요 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상복합 주택과 상가 건물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정설계, 시설물 구조설계 활동 등의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므로 디자인의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제 목 조심-2021-서-5176, 2022.09.07.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시행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설계디자인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위탁개발비는 통상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개개의 아파트별로 공급조건(토지 형태, 지반조건 등)이 달라 공급조건에 맞춘 디자인 설계활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건축활동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설계활동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제 목 조심-2022-부-7135, 2023.02.14.

청구법인이 지출한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외주가공비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법인은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품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해 지출된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제출한 디자인 샘플, 작업지시서, 설계요청서 등에 따르면 기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단순 기능들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출시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 목 조심-2022-중-5657, 2023.06.26.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연구개발활동 검토

I

II

III

IV

V

 **요 지**

청구법인은 건축, 토목, 주택건설 및 플랜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축사법」 등에 따라 다른 건설사들과 같이 설계업무는 외부설계업체 등에게 위탁하고 시공 위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출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는 행위는 실패위험 등이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연구개발활동이 아니라 건설사 설계 겸업금지에 따라 건물의 시공시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불과하여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 목 ▶ 사전-2022-법규법인-0133, 2022.04.25.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적용 방법

 **요 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 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 목 ▶ 조심-2021-전-4790, 2022.02.08.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제품 제작 프로세스,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업무분장표·개인별 직무 조사표·생산문서목록, 품질○○○팀의 기술보고서, ○○○기술팀의 회의록 및 ○○○보증팀의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에 의하면,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시제품의 검사·시험 등 시제품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시제품 검사 및 납품수량, 양품 10개 생산 시 소요되는 시사출·검사·시험시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사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540대의 CPM(Cockpit

Module) 시제품 조립차량을 공급하고, 양품 10대 생산 시 소요되는 시사출·검사·시험 시간이 38~113근무일로 나타나며, 고객사의 Full Change 시제품 공급요청이 적었던 2017년과 2018년에도 Minor Change 시제품 납품수량이 각각 3,306건, 3,228건으로 나타나는바,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시제품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신차개발 전담인원은 양산부서와 구분되어 시제품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전담부서 소속의 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의 역할을 전담한 것으로 판단됨

제 목 조심-2020-서-8452, 2021.07.28.

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된 외주비용 및 디자인공모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법인의 건축설계 결과물은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 바,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비용(쟁점비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의 한 유형으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고유디자인을 개발하였다면 이는 과학적 내지는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것(조심 2012서740, 2012.7.12.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은 별도의 고유디자인개발팀이나 디자인개발부서를 두지 아니하고, 관련 프로젝트는 376건에 이르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러한 프로젝트상의 컴퓨터그래픽 및 모형 제작에서 과학적 내지 기술적인 진전이 있다고 할 만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서 컴퓨터그래픽 및 모형에 대한 위탁제작업무의 상세내용은 청구법인 업무결과물인 설계 등에 대한 건축주 또는 발주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컴퓨터그래픽 작업이나 건축물 모형제작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이라기보다는 건축주 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래픽이나 모형 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제 목 조심-2020-인-0941, 2020.11.24.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청구법인은 쟁점부서에서 발생한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구「조세특례제한법」제9조제5항은 연구개발 활동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으로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부서는 제품 인·허가 획득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서의 업무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 목 조심-2019-서-3360, 2020.10.05.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비용(①스토리보드·콘티, ②미술·분장, ③특수효과, ④컴퓨터그래픽 관련 위탁용역비)은 영화제작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비용으로 보이므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등을 보면, 일반적인 영상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쟁점비용은 당해 세액공제대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 목 > 조심-2019-중-3869, 2020.9.9.

신성장동력 기술에 대한 국외 위탁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의 한 부분으로서 쟁점 해외위탁개발비를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제 목 > 서면-2019-법인-0284, 2020.07.10.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 지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 목 > 조심-2018-서-4968, 2019.05.13.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연구개발활동 검토

I

II

III

IV

V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였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ERP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 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 조특법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데, 주로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차세대’라 명명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것이 ‘ERP 등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기존의 업무시스템 일부를 신기술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 목 조심-2018-중-3161, 2018.11.1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활동이 없거나 전담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요 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군에 납품한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 유지보수 및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습득한 애로 사항이나 노하우 등을 보고서 등을 통해 관리하거나 이를 ○○○에 통보하거나 매년 교육교재 등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이러한 것으로는 조특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인 연구개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설령 청구법인이 이러한 활동이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본 직원들의 인건비는 경영팀과 교육팀에 소속된 직원들의 것으로 이들은 청구

법인의 인사, 총무, 사업관리 등의 업무나 장비의 운용·정비교육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연구개발에 전담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청구법인에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나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법인세 처분시 쟁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데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 목 조심-2015-부-2443, 2018.10.29.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세대시스템 구축 계약서” 등에 의하면 차세대전산시스템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과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기술변화 및 시대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종전 서비스가 기능·사용자·상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카드·방카슈랑스·유가증권 등의 서비스와 연계한 인터넷·모바일 등으로의 접근 방법이 확장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12.31. 조특례법 개정으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추가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의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용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이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분 위탁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위탁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특령 [별표6] 제1호 나목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 목 조심-2018-전-2445, 2018.10.25.

쟁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 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히 조특령 [별표6]의 “고유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등에 의하면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 건수 중 특허출원 신청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건수가 소수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및 조특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 목 조심-2017-서-0262, 2018.09.05.

쟁점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대상작품인 ○○○의 CG작업 전·후의 사진자료를 비교해보면 기존 사극 등 다른 영상물의 장면과는 달리 전문디자이너의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므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0서2919, 2011.07.20. 및 조심 2010서383, 2010.06.09. 등 같은 뜻), 청구법인과 각 위탁디자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물품 등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디자인보호법이 아니라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이런 고유성이 인정되어 컴퓨터그래픽팀의 직원이 이 건 작품에 사용된 일본배의 그래픽 소스를 방송사에 제공한데 대해 검찰에서 동 직원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관청도 같은 이유로 방송사 등이 CG비용을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으로 보아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방송사, 게임회사 및 애니메이션 회사 등의 디자인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영화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적용대상 비용 및 세액공제율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 목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5, 2018.06.01.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해당 여부

요 지

게임S/W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게임 그래픽 부서에 소속된 디자이너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디자이너의 인건비는 조특령 제8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 목 조심-2017-서-4669, 2018.01.31.

쟁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 지

디자인팀과 SI팀으로 구분되는 디자인실 중 디자인팀은 브랜드별 컨셉과 디자인 방향을 수립하고 각 제품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라 할 것이나, 제품포장 디자인, VMD, 광고 관련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SI팀의 활동은 제조부서와 디자인팀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배치와 진열 등에 관한 것이라 이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제 목 서울고등법원-2017-누-62718, 2018.01.09.

조특법 제9조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

 **요 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특법 제9조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함. 더욱이 범용성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에 소재의 고객별, 용도별 변용이 불가피한 석유화학제품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서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활동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재의 단순 변용, 개선이나 개별 고객의 주관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 등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연구원들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업부서 직원들과 함께 출장상담을 다니는 등으로 수행한 ○○○업무라든가 고객의 불만이나 불편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한 업무 등은 대부분 연구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의 경우에도 그 상당 부분이 고객사의 공정개선, 교육활동, 기술지도 등으로 보일 뿐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서의 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직전 소송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05 판결(2017.07.13.)

제 목 조심-2017-중-2339, 2017.08.24.

쟁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히 조특령 ○○○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도면·사진, 디자인 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 직원의 활동은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 목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2017.07.13.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요 지

구 조특법 제9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해당할 것을 그 핵심적인 지표로 함. 이 때 순수한 기초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연구 및 성과를 기업생산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도 연구개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기존에 이미 상용화, 사업화된 기술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다소 보완 또는 변형함으로써 약간의 효율성이나 편리함을 더하였다거나, 특정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의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과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어야 할 것임

제 목 조심-2016-중-3124, 2017.03.29.

쟁점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매점, 대표소의 배치 및 내·외부의 단순 인테리어 장식 등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영화상영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인 바, 동 쟁점 비용은 영화상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이는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조특령 제8조제2항제1호의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비용을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구개발활동
검토

I

II

III

IV

V

제 목 ◀ 조심-2016-서-2469, 2016.11.10.

잡지를 출판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청구법인이 발행한 월간지는 패션잡지로 대부분의 내용이 사진과 관련된 글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사진과 문구 등을 월간지의 각 페이지에 배치하는 것을 주작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독창적인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되는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잡지 같은 간행물에 들어가는 글, 그림, 사진 등의 편집·배치 작업을 디자인의 개발로 본다면 사실상 모든 간행물의 제작이 이에 포함될 수 있어 일반적인 편집업무와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디자인 개발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타 잡지와 구성, 글꼴, 색감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한 디자인의 개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 목 ◀ 조심-2016-중-0833, 2016.08.31.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실 활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요 지**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실에서 수행한 샘플패턴의 제작과 봉제는 샘플패턴의 배치에 따라 더 많은 의류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일 뿐 고유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쟁점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조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제 목 ◀ 조심-2016-서-1351, 2016.10.06.

쟁점 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 지

○○○협회가 발간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에서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은 과학기술분야로 한정되고, 직접적인 생산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기업부설연구실적 신고서상 쟁점 연구소의 주 연구내용은 멀티미디어 콘텐츠개발이고, 2010년 쟁점 연구소의 조직도와 업무기술서 등에 의하면, 초등수학, 중등수학, 초등과학, 중등과학 및 유아팀으로 팀이 분류되어 각 팀별로 콘텐츠 개발 및 교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 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인건비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 목 심사-법인-2016-0012, 2016.06.10.

단순히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의 이전신고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요 지

청구법인은 기술개발팀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1999.07.21.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았고, 청구법인이 2013.12.23. 사업장 소재지를 당초 □□사에서 ◎◎시로 이전하고도 그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그 변경일로부터 14일이 훨씬 지난 2015.11.19.자에 비로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등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사실 없고, 그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하여 오고 있어, 청구법인의 기술개발팀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요건의 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단순히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의 이전신고를 지연 하였다고 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거나, 인정기관이 인정한 연구 개발전담부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기술개발팀에서 수행한 품질관리 업무는 일반적인 영업·생산부서 등의 지원업무가 아닌 연구개발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의 범주에 속하는 업무라고 보이는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 하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 이전 기한내 미신고, 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소속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 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4, 2015.11.12.

실내디자인 개발 관련 디자이너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요 지**

조특령 제8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조특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가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 목 서면-2015-법인-1108, 2015.09.17.

영상디자인 개발업무 관련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 지**

조특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영상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 목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202, 2015.05.01.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원고의 등록 상표 또는 특허를 보아도 원고는 문제된 과세기간 동안 새로운 교재 또는 교육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사건 연구소 연구원들의 업무도 주로 교재 개발 및 교재를 이용한 교육 방법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연구원들 중 일부는 시험감독이나 달력 제작 등 교육 방법 연구와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업무를 수행했다. 원고의 수상 분야 역시 영어 학습 분야임

이와 같은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 내역, 연구원들의 업무 내용, 원고의 등록 상표 및 특허의 내용, 수상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프로그램 개발 내역, 등록 상표 및 수상 실적만으로는 이 사건 연구소 연구원들의 업무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제 목 조심-2013-서-0876, 2015.04.28.

쟁점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조심 2012서3056, 2012.9.24.,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2쟁점위탁개발비에 대한 개발 활동을 수행한 수탁기관에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제2쟁점위탁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할 것인바, 제1쟁점위탁개발비(○○○원)는 대부분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라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에 일부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활동

연구개발활동 검토

I

II

III

IV

V

으로 보이는 점, 일부는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시스템으로서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쟁점위탁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제 목 대법원-2013-두-22147, 2014.03.1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요 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1.01.19. 선고 99두8718 판결 참조),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제 목 대법원-2008-도-29, 2009.01.30.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구 저작권법 제2조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음. 한편, 구 저작권법은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조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큼(대법원 2005.01.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떤 아파트의 평면도나 아파트 단지의 배치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구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의 평면도나 배치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원심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인바, 2006년 7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기획 대표 공소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기획에서 제작한 아파트백과 책자 내용을 불법으로 복사한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에 피고인 회사명을 기재하여 피고인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소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아파트의 경우 해당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각 세대전용면적은 법령상 인정되는 세제상 혜택이나 그 당시 유행하는 선호 평형이 있어 건축이 가능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선택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아파트의 경우 공간적 제약, 필요한 방 숫자의 제약, 건축관계 법령의 제약 등으로 평면도, 배치도 등의 작성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은 점, 이 사건 평면도 및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으로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평면도 및 배치도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05 기타

◆ 연구개발 체크리스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체크리스트(연구개발 여부) 〉

사업연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구분	항 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연구개발적격요건	연구개발활동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의 정의에 부합(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 - 신기술개발, 신기술 창출, 서비스개발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활동 수행 등	예 아니오		
		판단 기준		내용	적정 여부
		신규성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 대비 기능적 변화, 성능 및 자체 디자인 개선 활동 신제품이나 공정 설계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 및 신기술 창출을 위한 활동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 또는 관련 실험 진행 알려진 기술, 보유한 지식을 조합하는 활동만으로 진행하지 않음	
		불확실성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완성	
				실패 위험이 내재된 활동이고, 기획단계의 예상결과물과 최종 결과물이 디자인, 기술, 기능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음 '기능 또는 작동이 보장된'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지 않음(양산 활동X)	
		체계성		연구원들은 자신의 직무영역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연구전담 조직과 그 외 조직이 독립적으로 관리됨 연구노트, 보고서, 회의록 등 문서화 또는 디지털 자료화하여 보관 연구기획단계와 후속 연구단계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	
		재현 가능성		연구개발 유·무형의 결과물이 다른 연구자 또는 회사에서 재확인, 구현 가능함 개발하려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 등록하거나 학술지 논문 게재함	

구분	항 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연구 개발 에서 제외 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비연구활동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 일반적인 관리·지원, 시장조사, 판촉,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 조사·분석 - 특허권 신청·보호 등 관련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 조사·탐사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예 아니오</div>

연구개발활동 검토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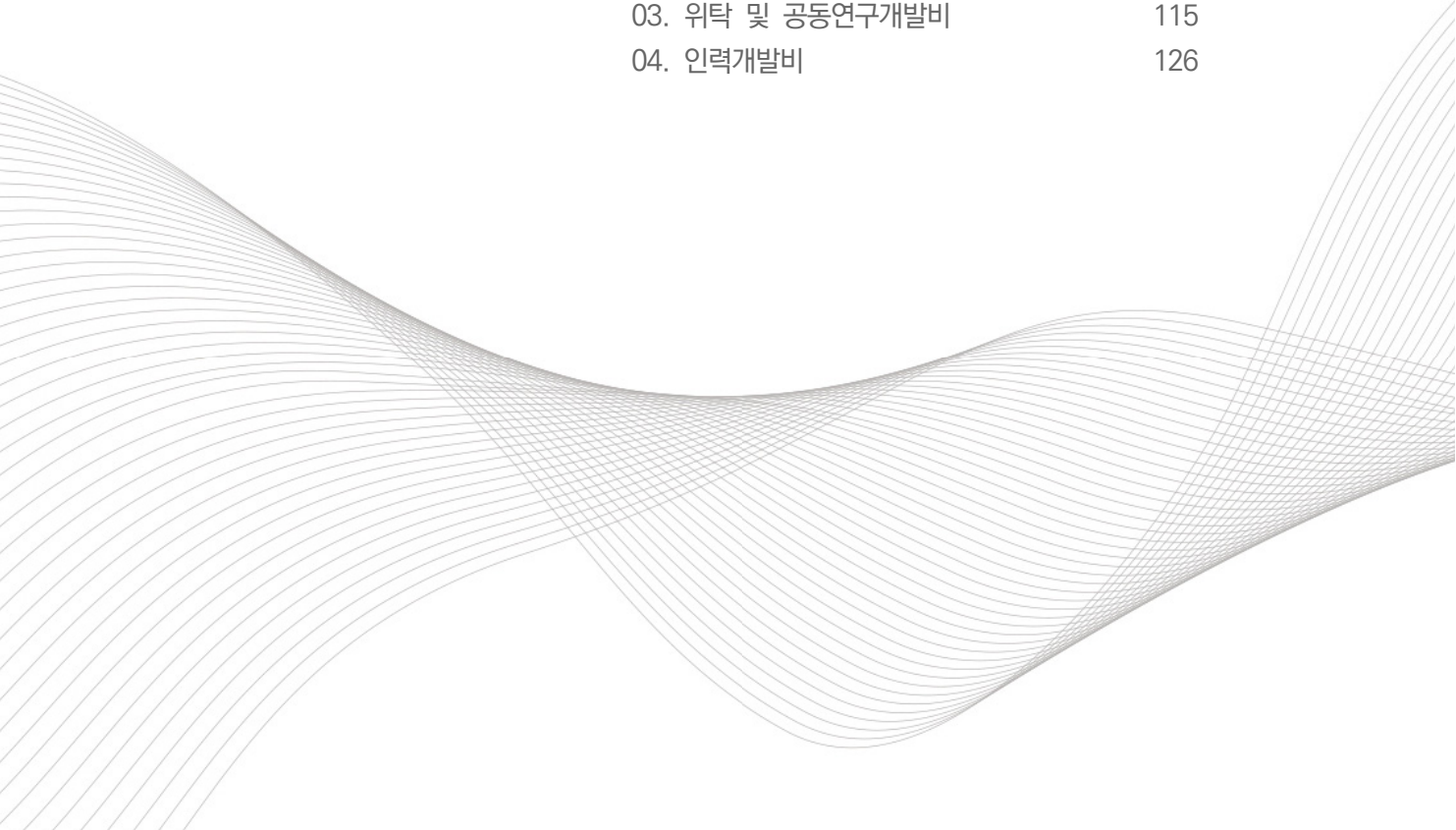
IV

V



III 비용검토

01. 인건비	77
02. 재료비	101
03.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115
04. 인력개발비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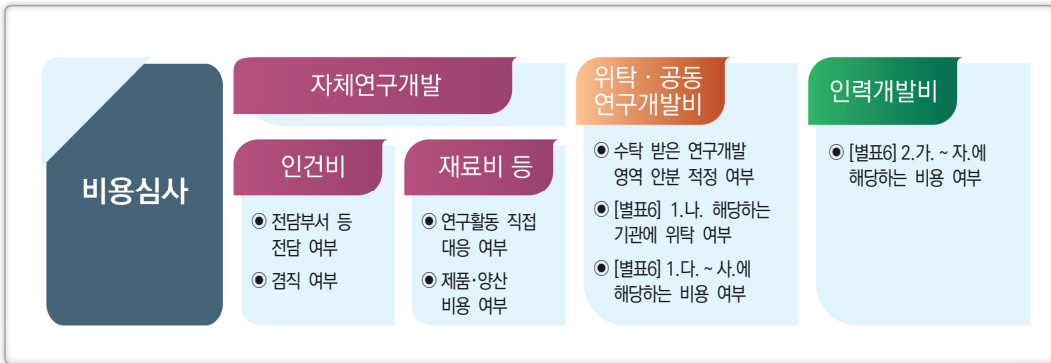


III

비용검토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중 비용심사 주요 항목



01 인건비

◆ 인건비 관련 주요 항목

- (인건비)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이 인건비에 포함되나, 연구전담 여부와 연구수행 자격 충족 여부, 퇴직소득 및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세액공제 적용되는 비용에서 제외해야 함
 -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등은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제외함

비용검토

I

II

III

IV

V

〈(조특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p>가. 자체연구개발</p> <p>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1(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2(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 서비스업*3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③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p> <p>*2)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관리직원”은 2016년부터 공제대상에 제외되었음에 유의) -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됨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②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③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p> <p>*3)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p> </div> <p>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p>

◆ 인건비 인정·불인정 유형 개관(概觀)

- (인건비 인정 유형) 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전담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
 - (인건비) 인건비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음

- (전담연구원) 공제대상 연구원은 연구소에서 연구만을 수행하여야 하고 ①6개월 이상 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 자, ②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을 수학하는 자(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함), ③산업기능요원, 산업연수생으로 복무 중인 자 등은 전담연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 (인건비 불인정 유형) ①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연구소 소속이지만 연구소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경우 ②연구활동을 전담하지 않고 타부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③연구소·전담부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리직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여도 연구를 직접 참여하지 않는 연구소 관리직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겸직)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수행하는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제외한 생산, A/S, 구매, 마케팅 등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병행하여 수행하는 연구원은 연구활동을 전담하는 인원으로 볼 수 없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연구소장) 연구소장은 연구원들의 연구 방향을 지시하고 성과를 파악하는 등 연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담연구원의 연구활동이라 할 수 없고 개별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개별 연구과제의 내용에 세세하게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연구를 감독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으로 분류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2017.7.13.

• (전략)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장과 CCC원장은 각 기관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별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개별 연구과제의 내용에 세세하게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연구의 내용을 관리·감독한 것은 아니었고, 연구원들로부터 연구의 주제 및 방향이나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관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구성원이 수백명에 이르는 단체의 장이라는 지위는 그 본질적인 특성상 그 기관의 본연의 업무 외에도 행정적인 업무 등 여러 부수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행정적인 관리 업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가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점, (후략)

I
II
III
IV
V

- (등록 전 비용) 전담연구원이 연구활동만을 수행하였다 하여도 연구소·전담부서 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능
- (수탁연구) 수탁연구는 위탁업체의 연구를 대신 수행하는 활동으로 해당 연구와 관련한 비용은 위탁업체의 연구비용이므로 이를 수행한 연구원의 인건비 또한 공제대상이 아님(합리적 안분방법에 따라 자체연구 부분은 공제 가능함)
- (특수관계인) 전담인력으로 등록된 연구원이 ①주주인 ②임원으로서 보유주식이 10%를 초과하거나 10% 초과 보유 주주의 특수관계인일 때 세액공제 불가

❖ 결직 관련 주요 정리 사항(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2017.7.13.)

제목	내 용
타업무 겸직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에게 전담연구원을 배정하여 해당 고객의 제품 상담에서부터 제품 양산 및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고객관리나 기술발전의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연구활동과 영업활동을 적절히 결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납세자의 자유이나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
연구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어려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들로부터 연구주제 및 방향,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관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음 - 연구소 단체의 장이라는 지위는 그 본질적인 특성상 그 기관의 본연의 업무 외에도 행정적인 업무 등 여러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관리 업무는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 활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큼 • 세액공제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개별 연구과제의 내용에 세세하게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연구의 내용을 감독
연구에 간접적 도움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어려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업무 가운데 고객과의 상담이나 방문, 단순한 맞춤형 제품개발의뢰나 불만 접수, 제품 수리 등의 업무는 순수한 연구개발 업무와 분리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활동이 원고의 기술발전 및 신제품 개발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연구개발의 범주에 넣을 수 없을뿐더러 그러한 업무를 필연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이 수행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법인세과-912, 2009.08.18.) • 기술습득 등을 위해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 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음(법인세과-1329, 2009.11.27.)

◆ (인정) 인건비 사례

항목	내 용
연구활동 및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의 연구노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취득내역이 확인됨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이 확인되어 전담연구원으로 근무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전담연구원의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 2019년에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포함하여 공제 적용됨
전공이 무관한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A와 B의 전공은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무관하지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이수한 점을 확인하여 연구과제 수행 여부 판단 - 따라서 연구원 A와 B를 해당 과제에 참여한 전담연구원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를 인정
임직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은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출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기업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자체 보상금 산정기준을 두고, 이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연구원과 임원 등에게 지급하고 있어 신청 보상금 전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연구인력지원사업의 기업부담금으로 지출한 외부연구원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주관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파견연구원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금으로 지출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으로 수행한 경우에 한함)
정부지원 연구과제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를 민간부담금 만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비용검토

I

II

III

IV

V

❖ (불인정) 인건비 사례

항목	내 용
퇴직연금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해당” 하여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세액공제 대상 불인정
10% 초과 주주인 임원을 전담연구원으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인 임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 불인정
겸직 연구소장에 대한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장은 수백명의 연구원들을 관리하고, 회사 관리 업무, 대외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겸직하였음 • 따라서 연구전담요원이 아닌 연구소장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불인정
관리직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직원의 업무는 기자재 및 부품 등의 구매 등 연구개발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임 - 전담연구원 및 연구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자가 아닌 관리직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건비 불인정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연구원이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영업, 관리, 지원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연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 연구원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시연 등 기술지원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전담연구원으로 불인정
연구원이 사내이사 업무 수행함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홍보, 주요의사결정 수행, 대표이사 개인 심부름 수행 등은 비연구활동으로서 해당 활동 수행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 아니므로 인건비 불인정
특수관계법인 연구활동을 대신함에 따른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연구의 결과물인 브랜드 등의 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은 신청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에게서 발생 - 브랜드 등 개발비용은 두 법인이 같은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므로 두 법인 간 공동 경비에 해당함 ※ 공동경비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배분 기준에 따른 해당 법인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해당 연구소 운영비용은 신청법인에서 100% 부담하였으므로, 법인령 제48조에 의한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신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위하여 연구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손금 불인정 및 관련 비율만큼 세액공제 불인정

항목	내 용
<p>연구개발 활동 확인할 수 없는 연구원의 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가 공제 대상으로 • 수습연구원은 입사 이후 3개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신입교육을 받는데 할애하였고, 연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인정
<p>타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은 ‘해외 영업’, ‘국의 파견 근무를 통한 연구결과물의 사후관리 업무’ 등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 겸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업무의 주목적은 고객 응대, 불만 해소로 통상의 A/S업무와 다르지 않고 통상적으로 사후관리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연구원 인건비 불인정
<p>연구개발과 식품안전관리 활동을 병행한 연구원의 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활동과 HACCP 인증 유지를 위한 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전담연구원의 인건비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인증 유지 관련 활동은 식품제조 회사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업무 이고, - 제조 현장 및 양산제품에 대한 미생물·위생학적 관리 업무는 연구개발과 무관한 일상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함
<p>출연금으로 지급한 연구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과제 관련 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1호·2호에 해당된다면 인건비 불인정



◆ 인건비 관련 주요 예규 및 판례

문서번호 > 조심-2020-중-7744, 2021.11.22.

고객사에 상주하는 게스트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 지

게스트연구원은 쟁점연구소가 위치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점, 게스트연구원은 고객사에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자체 연구개발 활동을 하였다기보다는 고객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어렵다고 판단됨

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61777, 2021.08.27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 지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비 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여 그 소속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갑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xx. xx.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현지 조사를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의 조직과 연구원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 2014. xx. xx.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살펴건대,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9호증, 을 제1 내지 8,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제1심 증인 신HH, 이CC과 당심 증인 신JJ의 각 일부 증언(아래에서 배척하는 각 일부 증언 부분 제외)만으로는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여 그 소속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원고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신HH, 이 CC과 당심 증인 신JJ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증인들과 원고 회사와의 관계 및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확인한 원고의 본사 건물에 게시된 2017. xx. xx.자 직원 현황 및 조직도2)에는 대표이사를 업무 총괄자로 하여 그 밑에 경영지원부문, 개발영업부문, 공장이 있고, 개발영업부문에는 개발영업 1팀, 개발영업 2팀, 설계팀이, 공장에는 생산팀, 생산기술팀, 품질관리팀, 금형팀이 있었을 뿐 별도의 독립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조직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조직이나 업무 분장이 위 직원 현황 및 조직도 작성 이전에 크게 변동되었다고 볼 다른 자료는 없음
- ② 2011, 2012년의 포상금 지급 현황자료에는 근로자의 이름과 그 소속 부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기술부설연구소라는 부서명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전화를 걸면 연결 되는 ARS 안내멘트 상에도 개발/영업, 경영지원 등의 타 부서와 달리 기업부설연구소가 누락되어 있음
- ③ 원고가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한, ㉑ 2011. xx. xx.자, 2012. xx. xx.자 및 2012. xx. xx.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에는 신JJ가 2008. xx. xx.부터, 신HH이 2010. 9. 1.부터 각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㉒ 2014. xx. xx.자 및 2014. xx. xx.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에는 신HH이 2013. xx. xx.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한편 원고의 포상금 지급 현황자료 및 인사명령과 같은 내부결재 자료에 의하면, 신JJ는 2011년과 2012년에 개발영업부문 소속으로, 신HH은 2012년에 금형팀 소속으로 각 상여금을 받았고, 신HH이 2011. xx. xx. 금형팀에서 근무하다가 2012. xx. xx.부터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아 보직이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원고가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한 자료들과 내부결재 자료들 사이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음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3, 2021.07.14.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요 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 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가목1)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161, 2021.05.1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 지**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문서번호 조심-2020-부-7400, 2021.0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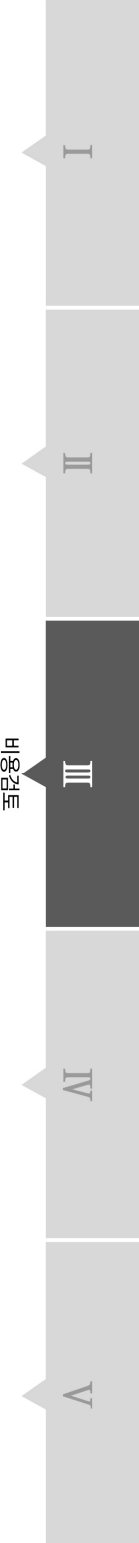
쟁점인건비가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나,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이라도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의 연구업무만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두68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2.10. 선고 2010누2563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서의 조직도에 기재된 직무와 직무수행비율

등에 따르면 일부 인원이 행정업무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하는 인원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처분청은 쟁점부서를 연구전담부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02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후 ○○○에 매년 변경내역을 신고하고 있고, 쟁점부서는 연구전담부서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신제품 개발프로세스에 따라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쟁점부서의 경우에도 개발단계별로 연구 검토항목이 지정되어 있는 등 쟁점부서는 고객사에 납품할 부품의 시제품을 개발·제작하는 부서로 양산 이전 단계에서 완성차업체의 납품조건에 맞도록 설계, 시험제작(시제품), 기술적인 시험평가 등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연구전담부서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서에서 일부 인원이 행정 업무등을 하였다고 하여 부서인원 전체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보다 행정업무등에 전담하거나 일부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당 인원만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 전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24, 2021.01.2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답변내용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72, 2021.01.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의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퇴직급여총당금·성과급 등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2019. 2. 12. 조특령 개정으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음

문서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2021.01.0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 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 서면-2019-법인-3906, 2020.12.0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추후 전액 반환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중도 포기의 사유로 전액 반환한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동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 ◀ 조심-2020-중-2174, 2020.11.02.

쟁점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의미하므로 다른법인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의미함에도 청구법인 연구소 직원으로 등록된 직원 000, 000, 000, 000, 000 등은 000에서 웹디자인 개발, 콘텐츠 통합, 스트리밍솔루션 개선, 웹하드솔루션 및 덕플레이어 제작 및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 조심-2018-부-4062, 2019.06.26.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관련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조직도, 인사기록카드 및 부서별 업무내역 등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에 신고된 인원은 46여명이지만, 8개팀 중 연구개발 관련 팀은 한 팀(기술개발팀)에 불과하여 그 인원



전부가 기술개발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대부분 직원들의 발령부서가 연구개발팀이 아닌 설계부서로 확인되는 점, 그 설계부서의 업무내역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 배 등의 설계, 배치 및 설계관리 등에 해당하고 수주실적상으로도 업무 범위가 주로 〇〇〇, 〇〇〇 등의 건조, 실시설계 및 시운전 등의 중심으로 발주되어 연구 개발 위주의 업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설계부서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및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활동이 어떠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 신고 시 기술연구소 연구직원들의 활동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조특법령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산물자의 연구활동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방산물자가 부득이하게 위탁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가 기술연구소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문서번호 ▶ 심사-법인-2018-0015, 2018.08.31.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에서 보건대 B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증명이 부족한 점, 오히려 B이 대학교의 인터넷 사이트에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계획”이라는 설문조사 글을 올린 사실에 비추어 보면 B이 마케팅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협회에 보고한 2015 사업연도 ‘연구개발 활동조사표’에 연구보조원의 평균 연구참여 비율이 20%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문서번호 ▶ 조심-2018-중-0635, 2018.06.08.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는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에 사외의 국민연금공단에 실제로 지출되고 그 지출시마다 그 지출분 상당액이 회사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되며 과세연도별 및 대상 근로자별로 그 지출액을 특정할 수 있는 점,

2013.1.1. 「소득세법」 개정은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의 수혜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던 것이 과세제의 대상으로 변경된 것일 뿐 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없는 것인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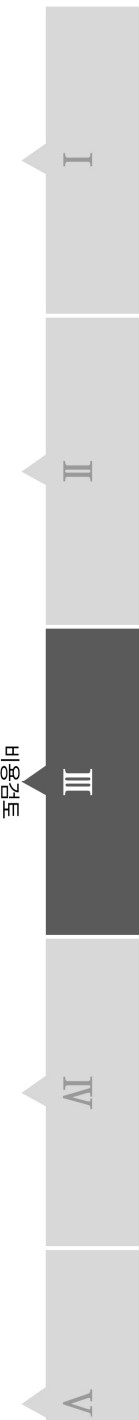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인건비의 범위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 조심-2016-서-3647, 2018.04.09.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정함

 **요지**

청구법인은 ○○○에 소재하였던 것에 반하여, 쟁점연구소의 소재지는 원격지인 ○○○에 위치하고 있는 점, 쟁점연구소의 내·외부를 찍은 사진들에 의하면 쟁점연구소는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가건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4.10.24. ○○○에 신고한 쟁점연구소의 연구시설 현황 상 2004년 설치된 보조원 컴퓨터와 노트북 그리고 연구용



서버 각 1대, 2009년 설치된 노트북 1대 등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될 뿐이므로, 쟁점 연구소에서 연구소장 ○○○ 외 연구원 5명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물적요건이 정상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6.4.22.자 경정청구서에 기재한 쟁점연구소의 연구원들 목록이 2014.10.24. ○○○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연구원들의 목록과 다르고, 청구법인은 두 목록에 기재된 연구원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연구소의 도면에 의하면 쟁점연구소에 비치된 책상이 5개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2014.10.24. 쟁점연구소에 전담연구요원 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에서 사용된 카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카드를 사용한 내역만으로는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을 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 또는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연구원들이 쟁점연구소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로 거소를 이전하였다거나 거주지에서 쟁점연구소로 출퇴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477, 2017.12.08.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요 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조특, 서면법규과-01017, 2014.9.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조심-2017-서-2707, 2017.10.17.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세액공제를 부인한 연구원의 쟁점인건비 상당액은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조직도, 구내전화번호부, 조직구성도 및 근태부에 의해 연구개발 업무부서 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인건비이며, 이들이 실제 기안한 품의서 등에서도 영업부와 관리부 등 연구소 외의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연구원들이 연구업무에 전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문서번호 ◀ 조심-2016-서-3836, 2017.06.29.

전담연구원이 아닌 겸직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을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청구법인은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종합 반도체 회사○○○가 아닌 반도체 설계 및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인 점, 쟁점직원들은 설계팀, TEST 기술팀, 품질관리팀, Application팀 등에 소속된 직원들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들인 점, 반도체 개발은 회로설계, 레이아웃(mask) 설계, 웨이퍼 패브리케이션,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어플리케이션 검증, 신뢰성 평가 등의 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업무가 수행되는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와도 피드백하는 과정이 일부 있었을 수 있으나, 쟁점직원들이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만큼의 구체적인 정황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원들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직원 중 2~3명은 겸직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팀별·개인별 업무 성격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쟁점직원들이 겸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6]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과 관련한 인건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등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반도체를 개발하는 업체로서 반도체 개발과정은 최초

회로설계부터 최종적으로 신뢰성 평가에 의한 제품생산까지 샘플제작 등의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 중 지출한 공동연구개발과 관련한 비용 및 미신청한 자체개발 연구개발비용은 실제 Mask 제작비, 실험용 자재 구입비, 시제품(Sample) 외주비용, 테스트 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음이 전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공동연구개발 관련 비용 및 미신청한 자체연구 관련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문서번호 → 조심-2016-서-3201, 2016.10.28.

쟁점직원들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현장확인한 결과 직원·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도 및 인사서류 뿐만 아니라 경비 사용내역 등에서 쟁점직원들이 타부서 소속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이 있었고 쟁점직원들이 연구개발을 전담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 조심-2015-중-2163, 2016.10.06.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사업부의 연구소를 부설연구소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요 지**

○○○ 내 연구소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연구소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소로 규정하고 있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업무를 ○○○에 위탁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후 지속적으로 변경신고를 하였음에도 취소된 사실이 없다면, 연구소의 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기술개발촉진법령상 연구소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에 의문이 있다 하여 동 연구소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처분청은 조직도상 연구소가 일정기간 존재하지 않았거나 3인 또는 5인 이상의 인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연구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직도에 불구하고 실제 연구소가 존재하는지, 사업연도 중 입사한 직원이나 ○○○에 이미 신고된 연구원들을 인력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기술개발촉진법령상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 후 수 차례의 변경신고가 수리된 ○○○의 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문서번호 > 조심-2015-중-4344, 2015.11.16.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청구법인에 출장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명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 1층에는 1명의 사무원 외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연구시설 및 연구 관련 자료·서류·문구·비품 등이 없으며, 연구원으로 등재된 직원들은 모두 2층 사무실의 설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된 ○○○부장은 2013년에는 연구실적이 없어 보고서 등 연구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설령, ○○○작성한 2013년도 연구진행개요보고서를 인정하여 2013년에 연구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2013년 중 실제 연구기간은 52일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2013. 4.15. ○○○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문서번호 > 조심-2015-부-3732, 2015.11.02.

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청구법인은 2010.1.21. 사무실과는 구분된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한국산업진흥협회장 인정)하여 연구전담요원 2명(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배치하고 자동차시트 설계 관련 연구개발 및 직원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시한 자동차시트 설계 관련 연구성과 목록과 그에 대한 증빙(동영상 등)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조특법 제9조제5항에서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인력개발은 임원이나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연구전담요원들이 수행하는 기존설계에 대한 기술개선과 새로운 설계방법 연구 및 설계업무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활동은 조특령상 연구인력개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구전담요원들이 매출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 조심-2015-전-1070, 2015.05.19.

쟁점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원이 연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연구소는 2006.5.3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바 있으나 동 협회에 쟁점연구원을 연구원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시한 쟁점연구소의 구성내역 및 팀별 주요업무(2012. 1.1. 기준)에서 쟁점연구원이 속한 Project Management팀의 주요업무에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고객 및 본사 업무 대응'이 포함되어 있고, 동 업무는 ○○○ 소재 사무소에 근무하는 쟁점연구원의 업무 중 일부로 보이므로 쟁점연구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52, 2014.07.1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3호너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5635, 2011.02.10.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됨

요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 전담부서의 지원인력의 경우에도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해보면,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이라도 연구 업무 전담연구원의 연구업무만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는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의 연구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연구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과세 대상인 인건비가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비용검토

I

II

III

IV

V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682, 2014.05.02.

이중근로자의 인건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은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별표 6] 제1호 가목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중 하나로 자체기술개발의 경우 ‘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2147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령은 어떤 회사가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직원이 당해 회사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회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우 위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연구요원을 고용하여 자체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회사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이 실제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였고, 회사가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문서번호 ▶ 법인세과-912, 2009.08.18.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 재조예46070-202, 2000.05.31.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안된 주주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소장의 인건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주주”인 연구요원 등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것임

비용검토

I

II

III

IV

V

◆ 인건비 체크리스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체크리스트(인건비) 〉

사업연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인 건 대 상 비	물 적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들이 전담부서등에서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수행할 것 	예 아니오
	검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이 연구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업무(행정, 홍보, 품질관리 등)를 수행하지 않을 것 • 전담부서 등의 지원인력은 연구요원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것 ※ 연구보조 공제O, 연구관리 공제X 	예 아니오
	공 제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리후생비 등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비용은 인건비에서 제외할 것 •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은 제외할 것 	예 아니오
	주 주 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인의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할 것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 소유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 소유하게 되는 자 3. 2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인 경우는 제외 	예 아니오

02 재료비

◆ 재료비 관련 주요 항목

- (재료비 등)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등 적정 여부 확인
 -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시험용 비품인 실험기구 및 장치 등 고정자산 구입비 등은 제외
 - 연구개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 제조·양산 여부와 더불어
 - 연구개발 활동이 부적격하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미한 재료비 등 포함 여부 확인
- *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2017.07.13.)

〈(조특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p>가. 자체연구개발</p> <p>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p> <p>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25조의3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연구시험 장비 및 시설의 임차비용은 포함되나 건물임차비와 공구 등 취득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p> <p>*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제외(통칙 9-8...1)</p> <p>*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용도라 하더라도 컴퓨터 및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p> </div>

비용검토

I

II

III

IV

V

❖ 재료비 등 인정·불인정 유형 개관(概觀)

- (재료비 인정 유형) 연구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① 시제품제작비, ② 기초실험재료비, ③ 인증·평가 시험비, ④ 기술자문료 ⑤ 특허조사·분석비 ⑥ 민간부담금 등이 해당됨
 - (시제품제작비) 시제품제작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부품(시중품) 구입비, 외주가공비, 용역비, 견본품 구입비를 포함
 - (기초실험재료비) 연구개발의 기초단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기초실험을 위한 시약, 원재료비, 부품 구입비를 포함
 - (인증·평가 시험비 및 기술자문료 등) 인증비, 시험평가비, 실험 장비 임차비*, 기술자문료**를 포함
 - * 시험용 시설의 건물 임차료를 재료비로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불인정. 특히, 기술자문료는 산업기술에 관한 기술자문이어야 하며, 이외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자문료는 해당하지 않음.
 - ** 특허권사용료(또는 기술료)를 세액공제 인정되는 '기술자문료' 등과 혼동하거나 법령개정 이전의 (구)판례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경우로 알고 있어 주의 필요하고('04년 세법개정 삭제). 기술자문 계약서 또는 결과물 등을 통해 기술자문료 확인 필요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0)

-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 ①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특허조사·분석 비용) 중소기업이 특허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 (2021.1.1. 시행)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특허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등록/변경/삭제 현황이 게시되므로, 고시/공고된 진단기관 게시물 검색 후 확인

- (재료비 불인정 유형) 연구개발 활동이 부적합하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비한 경우에는 재료비가 불인정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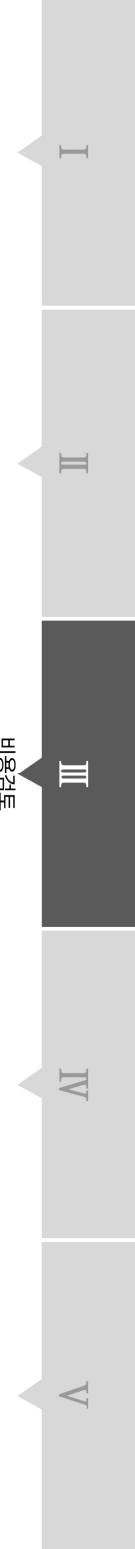
- 불인정 유형으로 ① 비연구개발 활동비, ② 양산제품 제작비용, ③ 기자재비, ④ 일반 경비, ⑤ 지식재산권 획득 및 유지비, ⑥ 일반적인 품질관리비, ⑦ (정부)출연금, ⑧ 증빙자료 미제출 등이 있음
- (비연구개발 활동비) 기술검토 결과 부적격 판정에 따른 재료비 일체가 불인정 되거나, 과제 연관성이 없는 지출 비용
- (양산제품 제작비용) 연구개발 활동 이후 양산단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양산을 위한 원재료비, 부품비, 제품 금형비, 설비, 지그(Jig), 납품용으로 전환된 시제품 제작비
- (기자재비) 실험 장비·장치*, 일반 공구, 소모품, 비품, 범용(상용)S/W**, License, 업무용 PC 구입비
 - * 기계장치·분석설비 등 시설장치 구입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 ** 한글, 리눅스, CAD(설계프로그램) 등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특정 자동화 설비 등에 같이 사용되는 운용 S/W는 자동화 설비의 운용에 따라 함께 감가상각하므로 [별표6]의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소프트웨어(S/W) 관련 재료비 정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
 - *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 (그 외 일반경비 등) 지식재산권 획득 및 유지비, 일반적인 품질관리비, 출연금*, 홍보비, 교통비, 월 회비, 통신비, 특허 등록·유지 행정비용, 기술이전료, 품질 인증비, 검교정비(檢較正費)외 그 외 일반경비
 - * 특히, (정부)출연금 중 민간부담금에 해당하지는 하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
-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R&D의 시설 임차료) 일반연구개발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를 공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신성장·원천기술(제9조제3항)과 국가전략기술(제9조제7항)의 공제대상 항목에서 제외되어, 해당 시설 임차료에 대해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율을 구분 적용 해야함



〈 재료비 인정·불인정 분류표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정	시제품제작비	시제품 제작 원재료비, 시제품 제작 시중품 구입비, 시제품 제작 가공비, 시제품 제작 외주가공비(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 금형비, 견본품 구입비
	기초실험재료비	기초실험 원재료비, 임상실험 원재료비
	평가 시험비	시험평가비, 실험장비 임차비용, 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운반(설치)비용
	기술자문료	기술자문료(대학, 산학협력단, 공인연구기관)
	특허조사·분석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사목에 의해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비
	인정 기타	기타 (예)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에 지출한 민간부담금
불인정	비연구개발 활동비	기술검토 결과 부적격 판정에 따른 재료비 일체, 과제연관성이 없는 지출 비용
	양산제품 제작비	양산 제품 금형·Mask비, 양산 설비, 양산 설비에 투입된 지그(Jig), 양산 원재료비(자가소비 포함), 납품용으로 전환된 시제품재료비
	기자재비	실험장비/장치, 일반공구, 비품, 범용S/W 구입비, License비, 업무용 PC
	일반경비	마케팅 홍보비, 전시회 참가비, 팸플릿·카드로그 제작 비용, 학회참가비, 출장비, 교통비, 학회월회비, 도서구입비, 통신비, 건물임차료, 관리비
	지식재산권 비용	특허·실용실안·디자인등록 수수료, 기타 특허사무소 행정처리 비용, 기술 이전료
	일반품질비용	납품요건 충족 등 일상적인 품질인증(실험)비, 측정장비 검교정비
	출연금	인정 재료비에 해당하나 정부기관(지자체) 지원이 확인된 비용, 민간부담금에 해당하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용, 연구용 자산에 대한 현물성 민간부담금
	불인정 기타	증빙 자료가 없는 재료비 등

◆ (인정·불인정) 재료비 등 관련 비용심사 사례

항목	내 용
정부지원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당사가 부담한 민간부담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체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출한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을 현물성 민간부담금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
목업(mock-up) 비용(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업 테스트(Mock-up Test)란 디자인 등 연구 개발한 제품이 실제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목업을 만들어 제품의 실사용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제품생산 前에 한해서만 사용되고 폐기되는 시제품으로 공제 가능함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산용이 아닌 연구용 금형에 해당하는지 입증하기 위해 공정 및 금형 설계 활동과 연구용 금형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 활동 등의 자료를 제출함 - 연구용 금형들은 별도의 공간에 제작·보관되고, 시제품은 시험용으로 일정 수량만 생산하는 등의 연구개발활동이 확인됨 - 연구소는 금형 이상 여부 확인하고 금형 생산 시점에 따라 시제품 샘플링 하여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소명함
건강시스템 실험비용(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중인 건강시스템의 효과 테스트를 위해 참여자 모집 및 모집된 참여자의 건강을 측정하고 지급한 비용을 재료비로 신청 • 연구개발 과정에서 의료 목적 임상 수준은 아니지만, 업종 특성상 불특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효과 검증을 할 수밖에 없어 참여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과제 관련 서비스 개발과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테스트 비용으로 판정하여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시험동물 사육 비용(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시험이 필요한 수탁연구사업과 치료제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체연구개발 과제에 사용된 동물의 사료비를 재료비로 신청 • 동물시험이 필요할 때 구입하는 것이 아닌 미리 구입하여 사육하는 과정을 거치나 자체연구개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활동에도 동물이 사용될 수 있기에, • 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로 구분된 동물관리 대장 및 소요된 비용 명세 등 근거자료를 통해 연구용으로 사용된 비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연구소등록 前 연구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를 등록하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인 연구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불인정
시제품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해당 재료비(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단계에서 제작한 시제품일지라도 영리 목적으로 시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해당 시제품 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불인정

비용검토

I

II

III

IV

V

항목	내 용
연구시설 건물 임차료 지출 비용(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공제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연구시설 건물 임차료는 해당하지 않음 ※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등
연구 비품 구매 비용(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 중 비품(실험대, 실험실 책상, 사무용품, 공구류 등) 구매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으로 불인정 ※ 기초실험에 직접 사용하는 소모성 자재류(예일회용 장갑, 일회용 원심분리 튜브 등)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특허실시권 설정비용(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실시권은 타인의 특허를 대여하는 비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열거된 항목이 아니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에게 서비스하기 위한(예 게임, 자료저장 등) 클라우드 임차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에 해당하므로 불인정 ※ 클라우드 서비스는 SaaS, PaaS, IaaS로 나눌 수 있으며, 고객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비용은 연구개발 비용에 해당 안 됨 ※ 목표(예 신약 물질 개발, 지표개발 등) 달성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데이터 축적 및 축적된 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비용인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가능
전시·홍보 목적 시제품에 대한 재료비(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홍보 목적을 가지고 시범농장에 무상 설치 및 가동하기 위해 개발 완료된 건조장치의 제작비용 불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은 자체개발하는 비용이 연구용일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
미판매된 제품(재고자산)과 관련된 재료비(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완료 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작된 시제품을 판매용으로 전환하고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비용은 불인정 - 판매되지 않았다고 해도 기업은 완제품으로 보아 재고관리를 하고 있음
해외 송금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과제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해외 송금수수료는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불인정

❖ 재료비 등 관련 주요 예규 및 판례

문서번호 ▶ 조심-2021-서-5419, 2022.08.23.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Mask를 개발하여 성공한 후 이를 양산단계에 활용하면서 관련 Mask 개발비용을 자산화(공구와 기구)한 경우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산화한 쟁점 ○○○는 양산과정에 투입되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R&D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 Mask의 개발비용을 회계상 자산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하더라도, R&D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점(법인세과-1859, 2008.8.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반도체를 개발하는 업체로서 반도체 개발과정은 최초 회로설계부터 최종적으로 신뢰성 평가에 의한 제품생산까지 시제품 제작 등의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바, Mask 제작은 반도체 시제품 제작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개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로서 R&D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서3836, 2017.6.29., 조심 2018구 2633, 2019.6.26., 같은 뜻임), 개발 실패한 ○○○ 개발비용과 개발 성공한 ○○○ 개발비용은 모두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동일한 위험을 안고 투자된 것임에도 그 중 개발에 실패한 ○○○ 개발비용만을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개발에 성공한 ○○○ 개발비용은 이를 제외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 조심-2021-전-3114, 2021.12.27.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원재료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용검토

I

II

III

IV

V


요 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상 및 무상의 취득은 취득시점에서의 취득자금의 원천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이를 사용 및 지출하는 시점에는 유·무상 취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사용 및 지출에 해당하는 것인 점, 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개정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R&D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민간으로부터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R&D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시점에서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였고, R&D세액공제 대상으로 사용 및 지출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는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유상 취득분과 무상 취득분이 사용 및 지출 시점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비에 대하여 R&D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전1124, 2021.10.27., 같은 뜻임)

문서번호 ◀ 조심-2021-전-1124, 2021.10.27.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원재료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2014사업연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개정되었는데, 유상 및 무상의 취득은 취득시점에서의 취득자금의 원천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이를 사용 및 지출하는 시점에는 유·무상 취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사용 및 지출에 해당하는 것인 점, 2013.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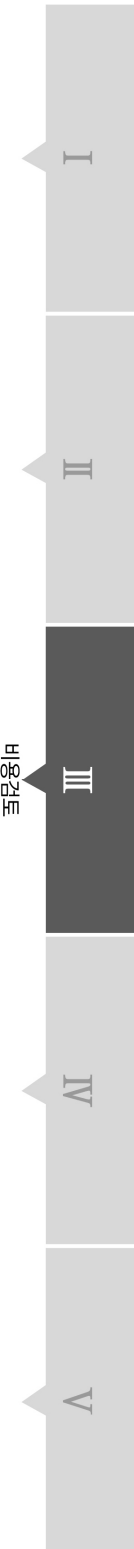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개정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R&D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민간으로부터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R&D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하는 시점에서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였고, R&D세액공제 대상으로 사용 및 지출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는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유상 취득분과 무상 취득분이 사용 및 지출시점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비에 대하여 R&D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 조심-2018-부-4066, 2021.06.21.

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상의 견본품에 해당하여 쟁점건조비용 전액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법인은 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 건조비용 전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5항이 연구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을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의 구입비를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쟁점구매계약서상 제목이 ‘물품구매계약’으로 되어 있고 계약의 목적이 쟁점호위함을 상세설계 및 건조하여 ○○○에 인도한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함정들의 건조과정에서 일부 연구개발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조과정 전부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제품의 제작 후 용도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견본품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별표6】의 문리해석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견본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시제품이어야 하고 쟁점함정들과 같이 납품을 목적으로 건조된 경우에는 이를 견본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음(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2147 판결, 같은 뜻임)을 고려하면 ○○○이 제시하는 기술요구조건에 맞추어 일반경비가 포함된 쟁점건조비용 전부를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함정들이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03.24.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호가목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1, 2019.10.17.

견본품 제작 관련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요 지**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견본품의 해당여부는 연구개발 과정, 공급계약서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물품구매(제작, 시제)계약에 따라

제작한 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상의 세액공제 대상 견본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본품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제조원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제조원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도 포함되는 것이나 견본품의 제조원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견본품의 제조원가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31, 2018.06.20.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한 선도함이 R&D세액공제 대상 견본품인지 여부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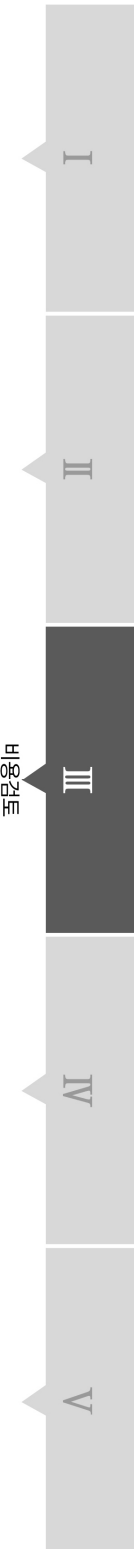
내국법인이 방위사업청과의 선박별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제작한 선도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의 견본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2017.07.13.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각종 연구기관, 기업이나 단체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 의한 연구개발을 장려할 목적에서 그 대가로 지급되는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앞서 살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으로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하고, 재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



기자재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어야 함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 2017.01.11.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요 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제품 제작 비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828, 2011.10.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28, 2011.10.30.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제8조 제1항 관련) 제1호 가목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험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2, 2016.02.05.

시제품 제작 관련 재료비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요 지**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납품의뢰 받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연구개발란 가목(자체연구개발)의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 후생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기 위한 부품구입비는 이미 개발되어 기존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인지 또는 범용성 있는 부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하는 것임

다. 직무발명보상금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724, 2018.01.2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무발명보상금 여부

요 지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의 1.연구개발 라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보상형태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678, 2017.09.04.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요 지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주인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인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행위가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해당 주주인 임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지,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여 그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 2015.10.06.

임원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재료비 등 체크리스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체크리스트(재료비) 〉

사업연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요건		검토사항		적합 여부
	재료비	<p>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견본품, 부품 등을 구입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 ②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는 포함하지 않을 것(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9-8...1 ①(3)) • 자체 제작의 경우, 취득가액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포함(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 2017.1.11.) 		예 아니오
<p>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의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실험기구 및 장치 등 고정자산의 구입비용은 제외(법인22601-1447, 1986.5.6.) • 건물임차비용 제외(법인22601-771, 1990.4.2.) 		예 아니오	

03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인정·불인정 유형 개관(概觀)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인정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포함)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불인정 유형) ①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판매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②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에 위탁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ERP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위탁한 비용으로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 (수탁업체 연구소등록)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대학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전담부서나 연구소가 등록되어 있어야만 위탁연구비용이 공제대상에 해당함

<(조특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비 용
1. 연구 개발	<p>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p> <p>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 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 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p> <p>나) 국공립연구기관</p> <p>다) 정부출연연구기관</p>

비용검토

I

II

III

IV

V

구분	비 용
	<p>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p> <p>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p> <p>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p> <p>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p> <p>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p> <p>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p> <p>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p> <p>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p> <p>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p> <p>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으로 발생한 금액</p> <p>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4</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p> <p>⑤ 영 별표 6의 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 별표 4의 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div>

구분	비 용
	<p>라.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p> <p>마. 영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p> <p>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한다), 비금융 지주회사, 기술 시험·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지도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한정한다),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채굴목적 광물탐사 활동으로 한정한다),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한다),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 운반을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p> <p>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연구산업</p> <p>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한다)</p> <p>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p> <p>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p> <p>사.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p>

I

II

III

IV

V

비용검토

◆ (인정·불인정)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사례

항목	내 용
연구개발을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급한 위탁비용(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수탁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실제 신기술개발 관련 용역을 의뢰하고 위탁개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위탁개발비에 해당하여 인정
그룹 내 계열사 공동 연구개발 위탁연구개발비(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법인의 연구소는 계열사들의 공동연구만을 수행하고 있고, 위탁연구 개발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거래가격이나 감정가액 등의 원칙적인 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세법에 따라 용역매출액 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거래가격 → 감정가액 → 상중법상 보충적 평가액(법인령 제89조) ** 용역제공원가(직접비+간접비) × {(1+(매출액-용역원가) / 용역원가)} 위탁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한 인건비, 재료비, 간접비 등 발생원가에 일정마진을 가산한 세법상 적정시가 내에서 공동위탁개발비를 산정하였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 각 계열사별 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는 공제대상이므로 인정
전담부서가 아닌 기관에 대한 위탁개발비(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로 등록된 자에 대한 위탁개발비만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법인은 전담부서 등을 등록하지 않은 법인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 불가능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중 위탁연구개발비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법인이 위탁연구개발비용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성과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발명, 디자인, 노하우 등)가 실질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는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이 수탁법인에게 있으며, 신청법인이 동 연구성과를 수정·변경하기 위해서는 수탁법인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해당 법인이 납품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고유디자인개발을 위한 위탁연구 개발비가 아닌 일반적인 납품계약에 따른 것으로 공제 불인정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따라서,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 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자체연구개발에 투입된 인건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가능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관련 주요 예규 및 판례

문서번호 ▶ 조심-2021-중-1765, 2021.11.23.

쟁점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요 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가 정하는 모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 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중 하나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에 한하는 것이고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구입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AAA 간 연구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에 플라즈마 CVD 장비의 개발을 의뢰하면서 연구개발용역에 따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개발도면 및 부속 프로그램은 AAA의 소유로 하되, 청구법인은 개발된 장비를 한시적으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기로 한바, 청구법인이 AAA에 쟁점비용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AAA이 개발·생산한 장비를 한시적으로 독점취득하기 위해 AAA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이를 청구법인이 AAA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 1)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 주장을 받아들여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문서번호 ▶ 서면-2018-법인-1064, 2018.05.31.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비용검토

I

II

III

IV

V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2.9.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 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 서면-2016-법인-5365, 2018.02.2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비용의 안분계산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72, 2012.04.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문서번호 ▶ 서면-2015-법인-2530, 2017.05.11.

Mask 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내국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Mask”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반도체칩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과정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 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반도체칩 생산에 사용되는 최종 'Mask'의 외주가공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문서번호 조심-2014-서-4632, 2016.02.25.

시험체 제작을 위한 비용인 쟁점재료비는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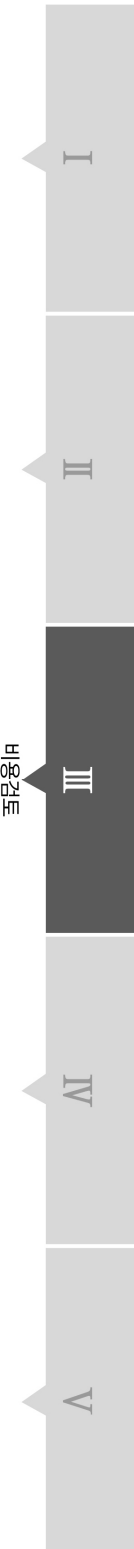
청구법인의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Mock-Up Test를 위해 전문검사업체에 위탁한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환급되었고, 시험체는 시험 후 시험과정에서 파손·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계약상 전문검사업체의 자산이 되어 사외로 완전히 유출되는 점, Mock-Up Test를 위해서는 시험체 제작이 필수적이고, 계약상 청구법인이 제작하여야 하는 점과 조특법상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취지(동일한 기술 개발투자에 있어서도 설비투자는 자산의 대체성, 잔존가액의 존재 등의 특성이 있는 반면 기술개발비용은 지출과 동시에 사외로 완전히 유출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설비투자보다 위험내재요인이 더욱 많을 수 있어 기술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 제도임) 등에 비추어, 시험체 제작을 위한 비용인 쟁점재료비는 별표6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65, 2015.07.22.

회사 부담으로 국외연구기관에 제공하는 대조약등 구입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여부

요 지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연구과정을 국외 임상시험 전문기관에 위탁하면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및 대조약(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내국



법인이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하여 임상 사이트(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한 연구용 바이오시밀러의 자체 생산비용 또는 대조약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 2015.06.1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조심-2014-서-2789, 2015.04.06.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별표 6 제1호 나목 ①의 규정은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또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라 위탁업체의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별표 6의 문언대로 전담 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청구법인과 같은 수범자로서는 그 세액공제 여부가 재위탁 여부 또는 재수탁자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연구개발을 촉진 하려는데 있는 점(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두311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위탁한 차세대시스템 및 소액지급결제시스템 개발용역은 융합기술개발이 필요하여 단일 기업의 인력 및 기술에 의존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기업에

그 일부를 재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하면서도 효율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별표 6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재위탁이 이루어졌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따른 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문서번호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45, 2015.02.26.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위탁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의약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내국법인이 자체 제작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의 제조가공비 또는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효 및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조약의 구입비용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료 또는 시약류 구입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등 체크리스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체크리스트(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기타)〉

사업연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요건	검토사항	적합여부																				
위탁·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용역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하였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과학 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일 것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맞춤형 제작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자체R&D</th> <th>위탁R&D</th> <th>재위탁R&D</th> <th>공동R&D</th> </tr> </thead> <tbody> <tr> <td>일반R&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신성장R&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서비스R&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기업 전담부서 위탁(○), 단, 신성장R&D(X) - 신약임상 비용(1~3상)은 해외위탁 공제 * 서비스R&D는 자체R&D 한정하여 인정(과학기술분야 결합된 서비스 R&D의 경우 위탁·공동연구개발도 인정) 	구분	자체R&D	위탁R&D	재위탁R&D	공동R&D	일반R&D	○	○	○	○	신성장R&D	○	△*	△*	△*	서비스R&D	○	△*	△*	△*	예 아니오
	구분	자체R&D	위탁R&D	재위탁R&D	공동R&D																		
	일반R&D	○	○	○	○																		
신성장R&D	○	△*	△*	△*																			
서비스R&D	○	△*	△*	△*																			
위탁·공동연구기업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1.나.1)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재위탁 포함)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기관에게 위탁(재위탁 포함) 또는 공동연구 개발함에 따른 비용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국내외 연구기관 전담부서등(직접 수행한 부분 한정)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영위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외 소재 기업 산학협력단,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조교수 이상인 자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할 것 	예 아니오																				
기타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한 연구 개발비 등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비용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 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예 아니오																				

04 인력개발비

◆ 인력개발비 인정·불인정 유형 개관(概觀)

- (인력개발비 인정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인력개발비 불인정 유형) 내일채움공제 납입액 중 공제 제외하는 금액,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용 중 24시간 미만인 활동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부 내일채움공제는 5년형으로 정부지원없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 기업이 납부한 금액이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하지만
 -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비용과 ② 5년 이내 증도해지를 사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공제 금액에서 제외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20년 일몰) 두 종류로 중소기업의 기여금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계약서상 신청 기업의 기여금이 존재하더라도 신청기업에서 납부 않음. 그러나 50인 이상 기업은 본인 부담금(‘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 납입해야 함. 정부지원금으로 기여금을 지출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기업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조특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비 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구분	비 용
	<p>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5}</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p> <p>⑧ 영 별표 6 제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div> <p>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6}</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p> <p>⑨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 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삭제 <2012.2.28>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 용품비 </div> <p>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7}</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p> <p>⑩ 영 별표 6의 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div>

구분	비 용
	<p>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p> <p>가. 영 제2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p> <p>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제연도에 빠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p> <p>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p> <p>6.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 경비 및 경영수준 진단·컨설팅 비용</p>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8}

<p>*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p> <p>⑪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소프트웨어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삭제 <2010.4.20>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4. 「항공안전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9}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10}

비용검토

I

II

III

IV

V

구분	비 용
	<p>*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p> <p>⑫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p>*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p> <p>⑬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p>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p>
	<p>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11}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p>
	<p>*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p> <p>⑭ 영 별표 6의 제2호사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구분	비 용
	<p>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 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p> <p>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p> <p>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p> <p>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p>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p> <p>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12}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p> <div data-bbox="371 1078 1268 146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p> <p>⑩ 영 별표 6 제2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 등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교 등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설치할 것 2. 현장실습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대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것 3. 표준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의 이수자에 대한 고용조건 등이 포함될 것 </div> <p>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p>



◆ (인정·불인정) 인력개발비 사례

항목	내 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정기검사 위탁비용(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라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1항)의 범위에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위탁 비용 인정
퇴사하여 환급받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환급받은 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대상금액 = 불입금(납입비용) - 환급받은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납입액(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해지하여 법인이 환급받은 금액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직원 갑은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고 내일채움공제 또한 납입하였음이 확인되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대표 을과 특수관계이므로 갑에 대한 내일채움 공제 기업기여금 납입액은 인력개발비로 불인정
직업훈련 교육 고등학교 재학생에 관한 비용(불인정, 19.12.31.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와 사전 취업협약 후 재학생에게 훈련기간 동안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등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2020년 2월 개정반영된 사항으로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적용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6항)하여 그 전까지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원 아닌 대표이사의 교육훈련비용(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위탁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2.인력개발.가목에 열거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항목 중 전담부서 등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하여 공제가 되는 위탁교육훈련비이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가 교육받은 부분은 공제 불가하여 불인정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2. 인력개발. 나~아목의 인력개발비는 연구 전담 요원을 공제 요건으로 한정하지 않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미만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협회 등 지정된 기관에 훈련을 위탁한 비용은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에 한하여 공제대상으로 인정됨(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1항)

◆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사례



[사례1] 공제가입 핵심인력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 A는 자사의 직원 2명(국세, 세종)을 내일채움공제 가입하여 각각 월 50만원씩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중소기업 A의 '23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납입비용은?

핵심인력	2023년
국세(일반직원)	600만원
세종(대표이사의 배우자)	600만원
합계	1,200만원

☞ '23년도 기업부담 총 기여금인 1,200만원 중 세종에게 지급한 600만원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600만원만 납입비용에 해당함



[사례2] 핵심인력이 중도해지할 경우

근로자 3명(국세, 세종, 채용)에 대해 기업기여금으로 월 25만원을 미납 없이 납입하였음

1년차	근로자 국세(월 25만원)	300만원	총 900만원
	근로자 세종(월 25만원)	300만원	
	근로자 채용(월 25만원)	300만원	
2년차	근로자 국세(월 25만원)	300만원	총 750만원
	근로자 세종(월 25만원)	300만원	
	근로자 채용(월 25만원)	150만원	

☞ 근로자 채용이 중도해지 하였을 경우, 2년차 인력개발비 해당 납입비용은?

750만원 - 450만원 = 300만원

☞ 세액공제는 해당연도 총 발생액 기준(25%) 또는 전년대비 증가 발생액 기준(50%) 선택 가능

* (750만원-450만원) × 25% = 75만원 (단, 세액보다 해지환급금 많을시)

I

II

III
비용검토

IV

V



[사례3] 세액공제 대상 금액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은 경우

근로자 3명(국세, 세종, 채움) 중 국세가 3년차에 납입하고 중도해지 하였을 경우(총 납입금 900만원), 3년차의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납입비용은?

1년차	근로자 국세(월 30만원)	360만원	총 360만원
2년차	근로자 국세(월 30만원)	360만원	총 960만원
	근로자 세종(월 25만원)	300만원	
3년차	근로자 채움(월 25만원)	300만원	총 780만원
	근로자 국세(월 30만원)	180만원(중도해지)	
	근로자 세종(월 25만원)	300만원	
4년차	근로자 채움(월 25만원)	300만원	총 600만원
	근로자 국세	납입금 없음	
	근로자 세종(월 25만원)	300만원	

☞ (780만원-900만원) = 0원으로 납입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없음

→ 미차감 금액 120만원 발생

* 세액공제 없음 (이전과세연도에 빠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포함)



[사례4] 미차감 금액이 존재하나 다음 해 공제가입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 국세가 3년차 중도해지 하였을 경우(미차감금액 120만원), 4년차의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납입비용은?

☞ 600만원 - 120만원(미차감금액) = 480만원

☞ 세액공제 (600만원-120만원) × 25% = 120만원

사례3과 사례4는 당해연도 세액공제 납입금액이 적을 시(3년차 세무조정 필요없음)에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인력개발비에 대한 납입비용(4년차 세액공제 반영)에서 차감

◆ **인력개발비 및 기타 항목 관련 주요 예규 및 법원 판례**

문서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2021.12.07.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

요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60, 2018.11.14.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 조심-2017-서-3717, 2018.03.02.

쟁점교육훈련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용검토

I

II

III

IV

V


요 지

청구법인은 당해 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건의 쟁점위탁교육대상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라 각 대리점의 영업사원이고 교육내용이 신기술 보다는 판매촉진 또는 홍보 성격으로 보이는 점, 1996.12.31.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라목에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취지를 볼 때 제1호는 기술지도, 제2호 내지 제4호는 인력개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제1호의 내용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신기술 교육이 아닌 판매촉진 또는 홍보 성격의 쟁점교육훈련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문언을 유추 또는 확장해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육훈련비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554, 2015.09.23.

사내교육과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 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금액 해당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074, 2015.07.23.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인력개발비 체크리스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체크리스트(인력개발비) 〉

구분	요건	검토사항	적합 여부
인력개발비	위탁 훈련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위탁훈련비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대상중 하나에 해당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전자교육 포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리·인사 등 관리 부분 자체·위탁교육비 제외(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 	예 아니오
	직업 개발 훈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의 대상중 하나에 해당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9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 2.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4.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등 	예 아니오
	인력 개발 기술 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의 대상중 하나에 해당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도요원의 인건비, 실습재료비, 훈련시설의 임차비용 2.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내일채움공제 납입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 안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2항 각 호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5년 이내에 중도해지로 환급받은 금액 	예 아니오

비용검토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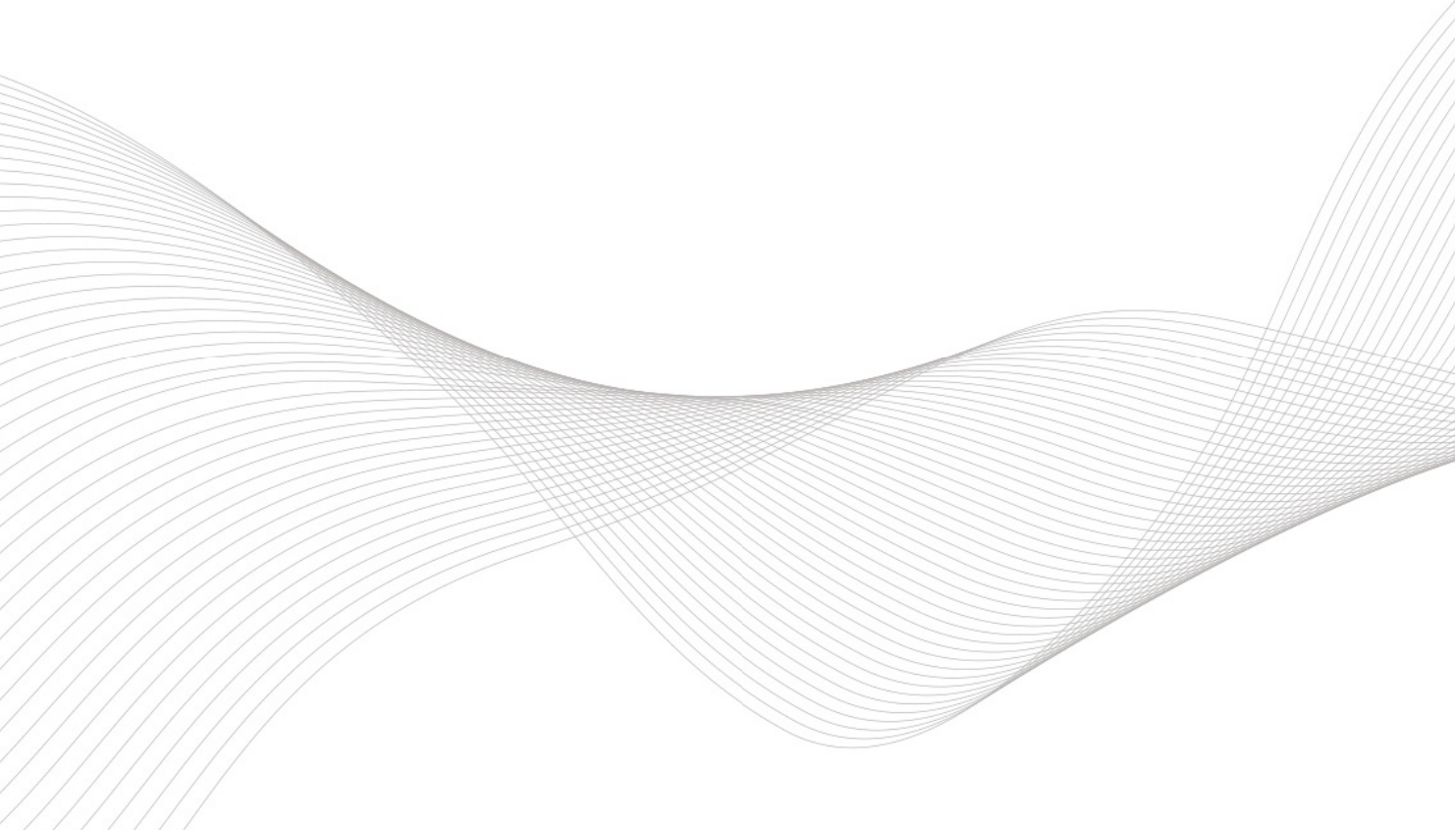
V

구분	요건	검토사항	적합여부
인력개발비		3.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생산성향상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 • 아래의 대상중 하나에 해당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1항) 1. 소프트웨어관리·품질관리 등에 관한 회사 내 자체교육비로서 교육훈련용교재비, 강의로 등 2.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한국표준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기관에의 위탁훈련비(한국생산성본부 위탁훈련비 제외) 3. 한국콘텐츠진흥원에의 위탁교육비용 4. 조중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 훈련비용 5. 해외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예 아니오
	사내 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의 운영비 •공제가능: 교육훈련용 교재비·실험실습비, 강의로, 실험실습용 물품시설 임차비, 교육훈련생에게 지급한 수당 및 식비	예 아니오
	맞춤형 고교 운영 등	특정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 • ‘특정학교’란 아래의 고등학교를 말함(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을 설치한 일반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 후,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 •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및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 계약으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	예 아니오



IV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령 등

- | | |
|-------------------------|-----|
| 01. 최근 법령 개정 사항 | 139 |
| 0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령 | 159 |
- 

IV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령 등



01 최근 법령 개정 사항

가. 인건비

◆ R&D 비용 세액공제 명확화(조특법 제10조제6항)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R&D 비용의 범위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인력 전담부서의 인건비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시 공제배제 근거 명확화 * 「기초연구진흥법」, 「문화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연구소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인력 전담부서가 인정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공제 배제

개정이유 ▶ 연구소 등 인정 취소 시 R&D 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조특령 제9조제18항)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제 사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법」 제14조의3제1항제1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1호 ②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2호 ③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 • (배제 시점) 배제사유(①②③)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②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③ 인정취소일

개정이유 ▶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을 납세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구체화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대상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령 제20조에 따른 성과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성과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보험료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개정이유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퇴직급여 관련 비용 명확화

적용시기 ▶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포함 여부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연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금융기관에 예치한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잔액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운용책임 : 회사가 부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금융기관의 운용상품을 결정하여 그 실적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퇴직시 회사의 퇴직연금 지급의무는 없음(운용책임 : 근로자가 부담)
- 기획재정부에서는 2019.1.1. 이전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9. 2. 12. 조특령 개정으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구분	R&D 세액공제 대상 포함 여부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2012.1.1.이전	포함	포함
2012.1.1.이후	제외	포함
2019.1.1.이후	제외	제외

◆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합리화(조특령 별표6) - 발간일 기준 입법예고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 •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등 제외대상만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을 인건비 범위에 명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정이유 ▶ 4대 사회 보험료의 공제대상 여부 명확화

적용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I

II

III

IV

V

나. 위탁·공동연구 개발비

◆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 제10조제5항)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R&D: 자체 R&D 비용, 위탁·공동 R&D 비용 • 서비스 R&D: 자체 R&D 비용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R&D에 대한 위탁·공동 R&D 비용 인정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 위탁·공동 R&D 비용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에 한정)</p>

개정이유 ▶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인정 확대를 통한 서비스 R&D 활성화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공동·위탁 R&D기관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탁 R&D 수행기관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등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 •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의 의미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 하여 규정(①,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의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②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개정이유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의 의미 명확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2020.0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R&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조특칙 제7조)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 【① 임상1·2·3상 시험에 한하여 국외 위탁이 가능한 기관】 •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 •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② 모든 신성장 R&D에 대해 국외 위탁이 가능한 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 (좌 동) • 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 하여 규정(①, ②) ① 기업의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42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②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있는 국외소재 기업 ■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 간접소유비율 계산은 「국제조세 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2② 준용

개정이유 ▶ 혁신성장 지원 및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I

II

III

IV

V

다. 인력개발비

◆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중소기업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운영비용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

개정이유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령 §104의18) 종료에 따라 해당 비용에 대한 지원유지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별표6)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 • 사내(기술) 대학 운영비용 •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운영비용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 훈련수당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

개정이유 ▶ 첨단산업 인력양성 지원

적용시기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라. 기타 분야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제10조·제24조)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방식) 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②통합 투자세액공제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지원내용)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2024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비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 신 설 〉					〈 신 설 〉					
R&D 비용(%)		대	중견	중소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시설투자(%)		당기분			시설투자(%)		당기분			중기분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 개정이유 ▶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
- 적용시기 ▶ 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령에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제24조)

총 전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분 기본공제(A)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B) - (기본공제(A))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율 상향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공제율(%)</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3</td> <td>10</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3</td> <td>5</td> <td>12</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6</td> <td>8</td> <td>16</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율(%)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공제율(%)</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5</td> <td>10</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3</td> <td>6</td> <td>12</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8</td> <td>8</td> <td>16</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율(%)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8	8	16
구 분	공제율(%)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구 분	공제율(%)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8	8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공제(B))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 *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 3%, 국가전략기술 : 4%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개정이유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 '2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령 제9조)

총 전		개 정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비용의 구분경리 및 공통비용 안분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R&D 전담 연구원 등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전담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인건비 -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 (위탁·공동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탁비용 또는 이들 기관과 공동연구개발 비용 ■ 구분경리 및 공통비용 안분 계산 대상에 국가전략 기술 R&D 추가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신성장·원천기술 R&D ②일반R&D 각각 구분경리 <p>· 신성장R&D와 일반R&D에 공통되는 경우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p> <p>* 공통비용 중 인건비, 위탁·공동연구개발비는 일반 R&D비용으로 간주, 재료비는 인건비 비중으로 안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신성장·원천기술 R&D ②국가전략기술 R&D ③일반R&D 각각 구분경리 <p>· 신성장R&D, 국가전략기술 R&D, 일반 R&D에 공통되는 경우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p> <p>* 안분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p>

개정이유 ▶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 '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조특령 별표7의2)

종 전	개 정
<p>〈 신 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총 34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등 9개 기술 ·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

개정이유 ▶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 '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p>*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사업화시설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분야*, 62개 기술, 50개 시설 <p>*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 ⑦바이오의약품</p> <p>- 바이오의약품 분야</p>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령

I

II

III

IV

V

■ (기술) 8개

국가전략기술(조특령 별표7의2)

- ①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 ②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 ③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 ④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 ⑤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 ⑥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 ⑦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 ⑧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 (사업화시설) 4개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6의2)

- ①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 ②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 ③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 ④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개정이유 ▶ 바이오의약품 산업 R&D 및 투자 지원

적용시기 ▶ '23.7.1.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

❖ 디스플레이 분야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 별표7의2)

종 전	개 정								
<p>■ 국가전략기술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분야 36개 기술*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7개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분야 기술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분야 43개 기술* * ①반도체 22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5개 - 반도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파운드리용 IP 설계·검증기술 및 ②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술 • (확대) 5개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 기술 범위 확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 기술 분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 추가 기술</th> </tr> </thead> <tbody> <tr> <td>차세대 메모리 반도체</td> <td>①PIM</td> </tr> <tr> <td>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td> <td>②UHV, ③고전압 아날로그IC</td> </tr> <tr> <td>디스플레이용 반도체</td> <td>④T-Con, ⑤PMIC</td> </tr> </tbody> </table>	현행 기술 분류	세부 추가 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①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	②UHV, ③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④T-Con, ⑤PMIC
현행 기술 분류	세부 추가 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①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	②UHV, ③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④T-Con, ⑤PMIC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플레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② 마이크로 LED ③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 (소재·부품·장비)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②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개정이유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R&D 지원 강화

적용시기 ▶ '23.1.1.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 ('24.1.1.이후)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 발간일 기준 입법예고 중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분야* 62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반도체 22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분야 66개 기술 - (기술) 신규 4개, 확대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4개 <p style="text-align: center;">〈신규 기술 추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background-color: #cccccc;">디스플레이(1개)</td> <td>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td> </tr> <tr> <td rowspan="3" style="background-color: #cccccc;">수소(3개)</td> <td>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등</td> </tr> <tr> <td>수소환원제철 기술</td> </tr> <tr> <td>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td> </tr> </table> - (확대) 1개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 기술 범위 확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background-color: #cccccc;">반도체(1개)</td> <td>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 HBM 등 추가</td> </tr> </table> 	디스플레이(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3개)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등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반도체(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 HBM 등 추가
디스플레이(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3개)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등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반도체(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 HBM 등 추가								

개정이유 ▶ 첨단 전략산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령 예

I

II

III

IV

V

❖ ('22.1.1.이후)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조특령 별표7)

종 전	개 정										
<p>■ 신성장·원천기술 대상</p> <p>• 12대 분야* 235개 기술</p> <p>*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 추 가 〉</p> <p>-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 압축기 기술</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p> <p>• 13대 분야* 260개 기술</p> <p>* ⑬'탄소중립' 분야 신설</p> <p>- (탄소중립)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수송 등 분야의 탄소저감 기술 48개 (신규 19, 확대 4)</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CCUS(7)</td> <td>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소(8)</td> <td>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재생E(12)</td> <td>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공정(11)</td> <td>수소환원제철 기술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E효율·수송(10)</td> <td>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td> </tr> </table> <p>- (기타)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 순환 등 기술 8개</p> <p>*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중회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 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기술 등</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현행 기술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3상) 바이오시밀러 포함 · (게임) 실시간 데이터 활용 시청각화 포함 ·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열분해 포함 </div> <p style="text-align: center;">〈 삭 제 〉</p> <p>■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간 설정 : 선정일부터 최대 3년</p>	CCUS(7)	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8)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12)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11)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E효율·수송(10)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CCUS(7)	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8)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12)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11)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E효율·수송(10)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개정이유 ▶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제연도 분부터 적용

◆ ('23.1.1.이후)신성장·원천기술 대상(조특령 별표7)

종 전	개 정												
<p>■ 신성장·원천기술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분야* 260개 기술 * ① 미래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S/W, ④ 콘텐츠, ⑤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 헬스, ⑧ 에너지·환경, ⑨ 융복합소재, ⑩ 로봇, ⑪ 항공·우주, ⑫ 첨단 소재·부품·장비, ⑬ 탄소중립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272개 기술 <p style="text-align: center;">- (신규) 12개 〈신규 추가 기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능정보(1개)</td> <td>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에너지·환경 (2개)</td> <td>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 기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융복합소재 (1개)</td> <td>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탄소중립 (8개)</td> <td>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확대) 4개 〈현행 기술 범위 확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에너지·환경 (2개)</td> <td>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탄소중립 (2개)</td> <td>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등</td> </tr> </table>	지능정보(1개)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에너지·환경 (2개)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 기술	융복합소재 (1개)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	탄소중립 (8개)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에너지·환경 (2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탄소중립 (2개)	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등
지능정보(1개)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에너지·환경 (2개)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 기술												
융복합소재 (1개)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												
탄소중립 (8개)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에너지·환경 (2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탄소중립 (2개)	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등												

- 개정이유 ▶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R&D 지원 강화
- 적용시기 ▶ '23.1.1.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변경에

I

II

III

IV

V

❖ (‘24.1.1.이후)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 발간일 기준 입법예고 중

종 전	개 정																				
<p>■ 신성장·원천기술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분야* 258개 기술 * ① 미래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S/W, ④ 콘텐츠, ⑤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헬스, ⑧ 에너지·환경, ⑨ 융복합소재, ⑩ 로봇, ⑪ 항공·우주, ⑫ 첨단 소재·부품·장비, ⑬ 탄소중립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 270개 기술 <p>- (분야) 방위산업 신설</p> <p>- (기술) 신규 15개, 확대 8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15개 〈신규 추가 기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에너지·환경(3개)</td> <td>대형원전 제조기술 등</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로봇(1개)</td> <td>Non-coding 교시기술</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첨단소부장(5개)</td> <td>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탄소중립(3개)</td> <td>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방위산업(3개)</td> <td>추진체계 기술 등</td> </tr> </table> • (확대) 8개 〈현행 기술 범위 확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미래형자동차(1개)</td> <td>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 → 운행기록 추가</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바이오·헬스(2개)</td> <td>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기술 → 제조기술 추가 등</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에너지·환경(2개)</td> <td>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로봇(1개)</td> <td>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탄소중립(2개)</td> <td>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 항공유 추가 등</td> </tr> </table> 	에너지·환경(3개)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로봇(1개)	Non-coding 교시기술	첨단소부장(5개)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	탄소중립(3개)	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	방위산업(3개)	추진체계 기술 등	미래형자동차(1개)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 → 운행기록 추가	바이오·헬스(2개)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기술 → 제조기술 추가 등	에너지·환경(2개)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	로봇(1개)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	탄소중립(2개)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 항공유 추가 등
에너지·환경(3개)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로봇(1개)	Non-coding 교시기술																				
첨단소부장(5개)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																				
탄소중립(3개)	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																				
방위산업(3개)	추진체계 기술 등																				
미래형자동차(1개)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 → 운행기록 추가																				
바이오·헬스(2개)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기술 → 제조기술 추가 등																				
에너지·환경(2개)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																				
로봇(1개)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																				
탄소중립(2개)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 항공유 추가 등																				

- 개정이유 ▶ 미래 유망산업 R&D 투자 활성화
-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조특령 제9조)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명칭 ■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R&D비용 대상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업이 투자한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로 명칭 변경 ■ 위원회 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R&D비용 대상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업이 투자한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성장·원천기술 신규기술 도입 및 현행기술 존치여부

개정이유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심의·평가 체계화
적용시기 ▶ '22.2.15.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2항에 따라 설치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 봄

◆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칙 제7조)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개발비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p style="text-align: center;">〈 추 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법」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한 후, 현장실습 중 지급한 비용 <p>* ①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 설치 ② 일정 기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③ 현장실습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 포함</p>

개정이유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취업 지원
적용시기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조특령 제9조)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비용 세액공제 제외 비용 • 기초연구법 등에 따라 지급 받은 연구개발출연금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 • (좌 동)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개정이유 ▶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 '23.2.28. 이후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제144조제1항)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 (이월공제기간)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7년 · R&D비용 세액공제 : 10년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 공제 :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 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 • (좌 동) • 10년

개정이유 ▶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21.1.1. 이후 과세표준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조특령 별표6)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비용 세액공제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공동연구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p style="text-align: center;">〈 추 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p>

개정이유 ▶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적용시기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특허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등록/변경/삭제 현황이 게시되므로, 공시/공고된 진단기관 게시물 검색 후 확인

◆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조특령 제1조의2)

법 개정내용(제2조)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개념을 종전 제9조제5항에서 정의규정(제2조)으로 이관
 -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 (현행 제8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관리·지원활동, 시장조사·판촉·일상적인 품질시험 활동 등 • 이미 기획된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규정(제1조의2)으로 이관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적용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p> <p style="text-align: center;">•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p>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 분야의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령

I

II

III

IV

V

◆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 합리화(조특령 별표6)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조특령 별표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 ** 전담부서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 과학기술분야 위탁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관련 R&D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 제 〉 • 전담부서* 연구원**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디자인법상 디자인전문회사 추가 ** R&D를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인력 추가 • 과학기술·산업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

개정이유 ▶ 고유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전담부서에서 지출된 R&D비용에 한해 세제 지원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 '2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조특령 제9조)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관련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신청서, R&D비용 명세서 외 증빙자료 양식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활동 검증자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연구계획서·보고서(전체 R&D), 연구노트(신성장 R&D) 등* 작성·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양식은 시행규칙에 위임 •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계획서·보고서 함께 제출

개정이유 ▶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R&D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강화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조특칙 제7조)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관련 검증자료 부재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활동 검증자료 작성·보관·제출 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계획서·보고서(전체 R&D), 연구노트(신성장 R&D) 작성·보관* *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하여 5년간 보관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과제 총괄표 제출

※ 「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기 발표내용('19.1.7.)

- 개정이유 ▶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 대한 관리 강화
-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조특법 제10조)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R&D비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1~3%* * 1%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중견기업) 8% - (중소기업) 25% • 증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30% - (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0~2%* * 0%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25%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 개정이유 ▶ 대기업 R&D 세제지원 합리화
- 적용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제14조의6)

종 전	개 정
<신설 202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의6(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의3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이유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도입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지정 취소 시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청문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적용시기
'22.8.4. 시행

0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 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 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 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 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 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을 말한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3.4.11., 2023.12.31>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text{해당과세연도의수입금액에서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차지하는비율} \times \frac{1}{2}$$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0.6.9, 2021.12.28>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8>
- ⑥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 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3.2.28.>
 -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2.15.>
-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7.2.7., 2019.2.12., 2020.2.11., 2022.2.15.>
 -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 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 나.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원천 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④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3.11.29., 2015.2.3.,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2.2.15., 2023.2.28>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⑤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각각 3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⑥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2.15.>

⑦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I

II

III

IV

V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⑧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8.2.13., 2020.2.11., 2022.2.15.>

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20.2.11., 2022.2.15.>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12

⑩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이 조 제9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법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15.2.3., 2020.2.11., 2022.2.15., 2023.2.28>

- ⑪ 제9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20.2.11., 2022.2.15.>
- ⑫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17.2.7., 2019.2.12., 2020.2.11., 2022.2.15.>
- 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2.2.15.>
- ⑭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2020.2.11., 2022.2.15.>
- ⑮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2.15.>
1.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⑯ 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7.2.7., 2019.2.12., 2020.2.11., 2022.2.15.>
- ⑰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4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2.2.15.>
- ⑱ 법 제10조제6항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⑲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8항 각 호에 따른 인정 취소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제7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①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09.8.28., 2010.4.20., 2011.4.7., 2012.2.28., 2013.3.23., 2014.3.14., 2015.3.13., 2017.3.17., 2019.3.20., 2022.3.18.>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 창작전담부서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 ②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직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신설 2010.4.20., 2011.4.7., 2012.2.28., 2014.3.14., 2017.3.17., 2019.3.20., 2020.3.13., 2022.3.18.>
1.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내부 조직
 2. 제1호 외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③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0.4.20., 2011.4.7., 2012.2.28., 2014.3.14., 2019.3.20., 2021.3.16., 2022.3.18.>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④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0.4.20., 2017.3.17., 2019.3.20., 2020.3.13., 2022.3.18.>
1. 주주인 임원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일반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
- ⑤ 영 별표 6 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0.4.20., 2011.4.7., 2012.2.28., 2015.3.13., 2019.3.20., 2020.3.13., 2022.3.18.>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 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 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 가. 영 별표 4의 산업
 - 나. 광업
 - 다. 건설업
 - 라.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마. 영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한다), 비금융 지주회사, 기술 시험·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지도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한정한다),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한다),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을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연구산업
 - 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한다)
- ⑥ 영 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영 별표 7 제7호가목6)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1상·임상2상·임상3상 시험 및 영 별표 7의2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임상·임상1상·임상2상·임상3상 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7.3.17., 2019.3.20., 2020.3.13., 2022.3.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6. 전담부서등(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7.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8.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⑦ 제6항제8호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 ⑧ 영 별표 6 제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4.3.14., 2021.3.16., 2022.3.18.>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 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 ⑨ 영 별표 6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22.3.18.>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삭제 <2012.2.28.>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 ⑩ 영 별표 6 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4.3.14., 2015.3.13., 2017.3.17., 2019.3.20., 2022.3.18., 2023.6.7.>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 가. 영 제2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빠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6.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 경비 및 경영수준 진단·컨설팅 비용
- ⑪ 영 별표 6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0.4.20., 2012.2.28., 2019.3.20., 2020.3.13., 2022.3.18.>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소프트웨어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 나.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 다. 삭제 <2010.4.20.>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4. 「항공안전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 ⑫ 영 별표 6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3.3.23., 2019.3.20., 2022.3.18.>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 ⑬ 영 별표 6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7.3.17., 2019.3.20., 2022.3.18.>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 ⑭ 영 제9조제7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3.18.>
- ⑮ 영 제9조제7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3.18.>
1. 주주인 임원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일반연구개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
- ⑯ 내국인은 영 제9조제12항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공통되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신설 2019.3.20., 2020.3.13., 2022.3.18.>
1.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나.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 전액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2. 제1호 외의 공통비용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용

$$\text{제1호 외의 공통비용} \times \frac{\text{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의 비용}}{\text{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의 비용} + \text{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의 비용} + \text{일반연구·인력개발비 중 영 별표6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비용}}$$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용

$$\text{제1호 외의 공동비용} \times \frac{\text{영 제9조제7항제1호가목의 비용}}{\text{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의 비용} + \text{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의 비용} + \text{일반연구·인력개발비 중 영 별표6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제1호 외의 공동비용에서 가목 및 나목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

⑰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 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 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3.20., 2022.3.18.>

⑱ 영 별표 6 제2호사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2.3.18.>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 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 ⑲ 영 별표 6 제2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 등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2.3.18.>
1. 대학교 등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설치할 것
 2. 현장실습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대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것
 3. 표준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의 이수자에 대한 고용조건 등이 포함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25조의3제3항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따른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한다)에게 과학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으로 발생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사.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으로 한정한다)
-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 훈련비
 -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2016.9.22., 2020.3.3., 202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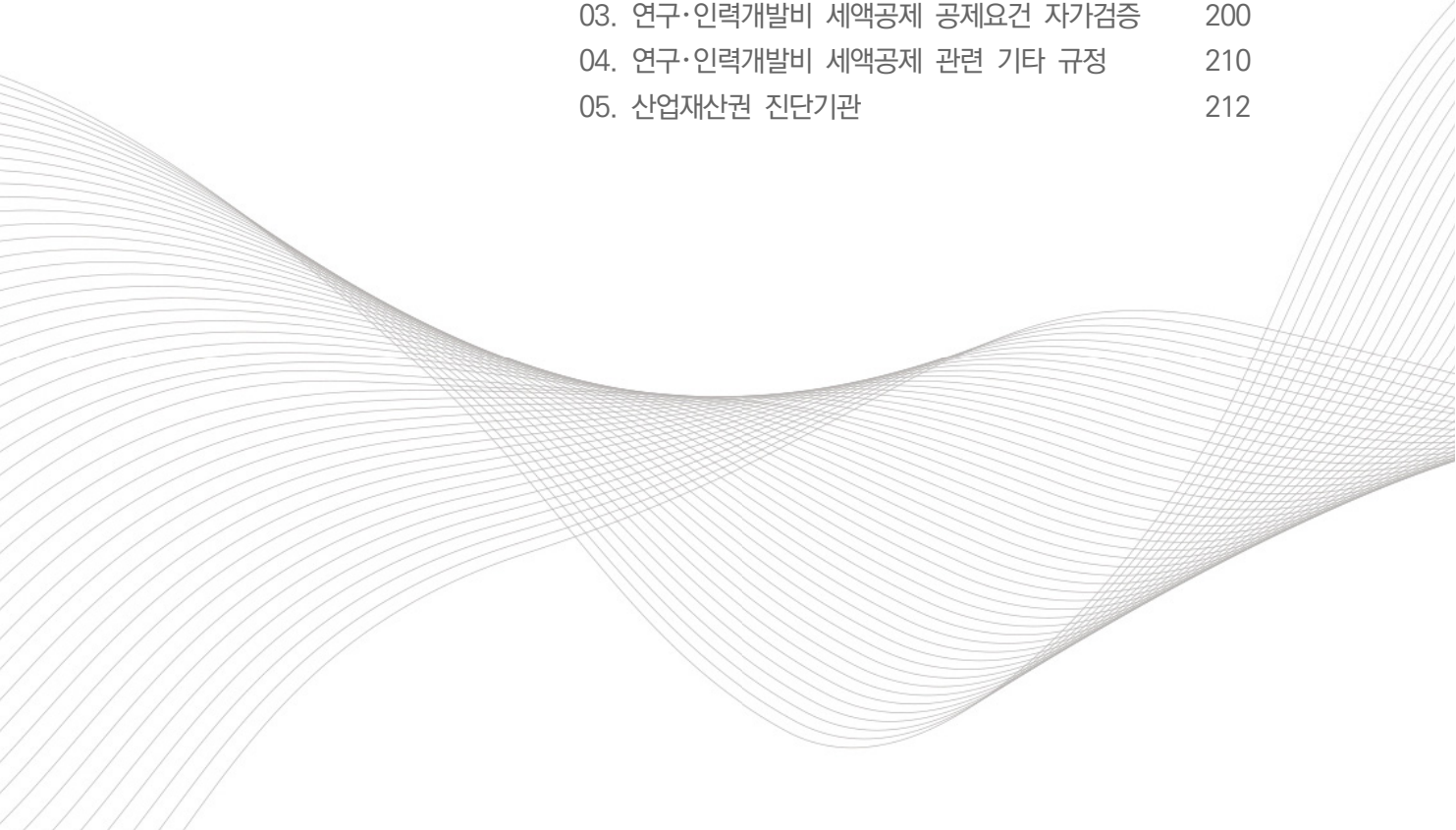
1. “연구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객원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휴가”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유급(有給)으로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V

참고자료

01. 사전심사 신청 서식	183
02. 사전심사 신청 서식 작성 방법	188
0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요건 자가검증	200
0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기타 규정	210
05.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212



V

참고자료



01 사전심사 신청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인	법인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재지 (이메일)	(☎)	전자우편(E-mail) :		@	.
신청대상	①신고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기신고, <input type="checkbox"/> 기한 후 신고,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input type="checkbox"/> 수정신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금액				
	②과세연도	③합계 (④+⑤+⑥+⑦)	④일반 연구개발비	⑤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⑦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성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연구개발비 명세서 2. 연구개발 보고서			수수료 없음	

- 작성방법
- ① 신고구분란은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중에 선택합니다.
 - ② 과세연도란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 ③ 합계 : 세액공제 구분별 사전심사 신청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④~⑦ : 연구개발비 명세서(제2-1호서식) 1.총괄의 세액공제 구분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10mm ×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참고자료

I

II

III

IV

V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1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순번	연구 과제명	세액공제 구분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인력 개발비 등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1	A 과제	일반	200,000,000	300,000,000	100,000,000			600,000,000
합계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받아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 * 자체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와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2. 인건비 명세서

순번	연구원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책	연구 과제명	연구전담 등 구분 (전담/보조/관리/기타)	참여기간	참여율	인건비
1	성명	YYYY. MM.DD	연구소 1팀	책임	A 과제	전담	YYYY.MM.DD ~ YYYY.MM.DD	20	
						전담	YYYY.MM.DD ~ YYYY.MM.DD	50	
						전담	YYYY.MM.DD ~ YYYY.MM.DD	30	
합계									

- * 참여율은 과제별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며, 연구원별 참여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계산

3. 재료비 등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계정과목	내역 (견본품, 부품, 시약류 구입비, 장비 임차료 등)	금액
1	A 과제	부품	OO 부품 외 10건	
		견본품	견본품 구매 품목	
합계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2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4.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수탁 및 공동 과제 정보						금액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전담부서 (연구소) 또는 소속	수행 분야	
1	과제명	상호	000-00-00000	YYYY. MM.DD	YYYY. MM.DD	기업부설 연구소	설계	
		성명	000000-0	YYYY. MM.DD	YYYY. MM.DD	OO 대학교 △△△ 교수	검증	
합계								

5.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발생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개발 과제 정보					민간 부담금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지원 기관	주관 / 참여	수행 분야	현금	현물
1	과제명	YYYY. MM.DD	YYYY. MM.DD	중기부	참여	플랫폼개발		
합계								

6. 인력개발비 등

조특령 별표6.2. 가.~ 아. ¹⁾ (내일채움공제 제외)	내일채움공제 ²⁾	합계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위탁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술지도, 국내외 위탁훈련비 등이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

증빙자료	1. 인건비: 연구원 등의 급여대장 2. 재료비: 연구개발 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등 재료비 구입 명세서 3. 위탁개발비: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위탁과제 집행내역) 4. 수탁개발비: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2호 서식】

연구개발 보고서

1. 연구과제명

2. 연구 개발 개요

가. 목표

나. 주요내용

다. 연구개발 기간, 투입인력 등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함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가. 연구개발 상세

- 단계 별 활동 내용
- 연구 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

나. 연구개발 주요 성과

- 제품 출시, 지식재산권 등록,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다. 연간 위탁·공동연구개발 현황

- 위탁·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증빙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2. 연구노트, 연구계획서, 연구 보고서 등 활동 관련 증명하는 서류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활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4. 기타 연구관련 증빙자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02 사전심사 신청 서식 작성 방법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대상	①신고구분	□ 정기신고, □ 기한 후 신고, □ 경정청구, □ 수정신고				
	②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금액				
		③합계 (④+⑤+⑥+⑦)	④일반 연구개발비	⑤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⑦인력개발비

작성요령

① 신고구분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중에 선택 - 정기신고 : 법인세 법정신고 기한 내 사전심사 신청인 경우 - 기한 후 신고 : 법인세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사전심사 신청인 경우로,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경정청구 : 정기신고 시 비용이 과소 신고된 경우 - 수정신고 : 정기신고 시 비용이 과대 신고된 경우
②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과세연도 기재
③ 합계	세액공제 구분별 사전심사 신청금액의 합계액 기재 ※ (예시) 신청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금액의 ④+⑤+⑥+⑦
④ 일반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총괄표 중 일반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합계액 기재 - 대상 : 인건비, 재료비, 인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 범위 : 일반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예시)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3번과 4번 과제의 ②+③+④+⑤
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명세서의 총괄표 중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합계액 기재 - 대상 : 인건비, 재료비, 인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 범위 : 신성장·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예시)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1번 과제의 ②+③+④+⑤
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명세서의 총괄표 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합계액 기재 - 대상 : 인건비, 재료비, 인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 범위 :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예시)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2번 과제의 ②+③+④+⑤
⑦ 인력개발비	연구개발비 명세서의 총괄표 인력개발비 등의 합계액 기재 ※ (예시)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⑥의 합계액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 아래 2 ~ 6번의 각 명세서를 총괄하여 기재하되, 자체 연구개발비와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의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기재

순번	① 연구 과제명	자체 연구개발비		④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⑤정부지원 사업 민간부담금	⑥인력개발비 등	합계
		②인건비	③재료비 등				
합계							

작성요령

① 연구과제명	연구과제 이름 기재
② 인건비	연구과제에 참여한 모든 인건비의 합 기재
③ 재료비 등	연구과제에 지출한 재료비 합 기재 ※ (예시) '3. 재료비 등 명세서'의 ④ + ⑤
④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과제에 지출한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합 기재 ※ (예시) '4.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의 ⑧ + ⑨
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연구과제에 지출한 민간 부담금의 합 기재 ※ (예시) '5.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발생 명세서'의 ⑨ + ⑩
⑥ 인력개발비 등	연구과제와 상관없이 다음의 '6. 인력개발비 등' 명세서의 ③ 기재

2. 인건비 명세서

- 자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출 또는 예정인 인건비에 대해 기재
- 수탁받은 과제는 참여율과 인건비 계산에서 제외

순번	① 연구원	② 생년월일	③ 소속	④직급/ 직책	⑤연구 과제명	⑥연구전담 등 구분 (전담,보조,관리기타)	⑦참여 기간	⑧참여율	⑨인건비
합계									⑩

작성요령	
① 연구원	연구원 성명 기재
② 생년월일	연구원의 생년월일 기재
③ 소속	연구원의 소속 기재
④ 직급/직책	연구원의 직급/직책 기재
⑤ 연구과제명	연구원이 참여한 과제 이름 기재
⑥ 연구전담 등 구분	전담, 보조,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전담연구원 :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 보조연구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 - 관리 기타 :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로, 행정사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
⑦ 참여 기간	연구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간 기재
⑧ 참여율	연구원별 참여율 합이 100%가 되도록 과제별로 합리적으로 안분 후 기재 ※ 참여율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명세서에 붙임하여 제출
⑨ 인건비	과제기간에 연구원에게 지출된 (총 인건비 x 과제 참여율)하여 계산하여 기재
⑩ 인건비 합계	인건비의 총액 기재

3. 재료비 등 명세서

- 자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출 또는 예정인 재료비에 대해 기재
- 과제별로 재료의 계정과목을 구분하여 기재
- 과제 내에서 내역이 1건 이상인 계정과목은 대표 내역만 기재
- 1건 이상인 내역은 별지로 세부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순번	① 연구 과제명	② 계정과목	③ 내역 (건본품, 부품, 시약류 구입비, 장비 임차료 등)	금액
		A		④
		B		⑤
합계				

작성요령	
① 연구과제명	연구과제 이름 기재
② 계정과목	연구과제 내 계정과목 기재
③ 내역	연구과제에 사용된 재료 내역 기재
④ [A 계정과목] 금액	연구과제 내 A 계정과목의 합계 기재
⑤ [B 계정과목] 금액	연구과제 내 B 계정과목의 합계 기재

4.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

- 과제별로 수탁 또는 공동개발한 기업의 개발 현황 기재

순번	①연구 과제명	위탁 및 공동 과제 정보						금액
		② 상호 또는 성명	③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④연구 착수일	⑤연구 종료일	⑥전담부서 (연구소) 또는 소속	⑦수행 분야	
		A 기업						⑧
		B 기업						⑨
합계								

작성요령

① 연구과제명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 과제 이름 기재
② 상호 또는 성명	상호 또는 성명 기재
③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사업자 번호 또는 생년월일 기재
④ 연구 착수일	실제로 기업(또는 개인)이 위탁 또는 공동연구개발을 착수한 날 기재
⑤ 연구 종료일	실제로 기업(또는 개인)이 위탁 또는 공동연구개발을 종료한 날 기재
⑥ 전담부서 (연구소) 또는 소속	위탁 또는 공동 연구개발 기업이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또는 디자인 전문회사에 해당하는지 기재
⑦ 수행 분야	위탁 또는 공동 연구개발 기업이 담당한 분야 간략히 기재
⑧ [A 기업] 금액	위탁 또는 공동 연구개발하는 A 기업에 발생한 금액 기재
⑨ [B 기업] 금액	위탁 또는 공동 연구개발하는 B 기업에 발생한 금액 기재

5.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발생 명세서

- 연구원들이 참여한 정부 지원 과제의 내용 기재

순번	①연구 과제명	개발 과제 정보					민간부담금	
		②연구 착수일	③연구 종료일	④지원 기관	⑤주관/ 참여	⑥수행 분야	⑦현금	⑧현물
합계							⑨	⑩

작성요령

① 연구과제명	연구원이 참여했던 지원 과제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
② 연구 착수일	실제로 지원 과제의 연구개발을 착수한 날 기재
③ 연구 종료일	실제로 지원 과제의 연구개발을 종료한 날 기재
④ 지원 기관	정부 지원 과제 관리 기관
⑤ 주관/참여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를 기재
⑥ 수행 분야	기업이 담당한 분야를 간략히 기재
⑦ 현금	과제별 현금 민간 부담금 금액
⑧ 현물	과제별 현물 민간 부담금 금액
⑨ 현금 합계	기업이 부담한 현금 민간 부담금 총액 기재
⑩ 현물 합계	기업이 부담한 현물 민간 부담금 총액 기재

6. 인력개발비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2. 인력개발에 해당하는 비용 기재

①조특령 별표6 가.~아 (내일채움공제 제외)	②내일채움공제	③합계

작성요령

① 조특령 별표6 가.~아 (내일채움공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2. 인력개발의 가항 ~ 아항에 해당하는 비용 기재하고 명세표 작성 및 붙임하여 제출 가. 위탁훈련비 나.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비용 다.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마.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대학 운영비 사. 맞춤형 교육비용 아. 현장훈련수당
②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와 그 밖의 비용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하는 비용을 기재
③ 합계	인력개발비 등의 합계 기재

연구개발 보고서

1. 공통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받으려는 과제에 대해 과제의 목적과 목표, 과제수행내용, 투입 기간 및 인원, 성과 등, 과제기간에 활동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자세히·구체적으로 작성
- 1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경우, 과제별로 작성
- 기술의 동향, 배경 등 일반적인 내용 또는 추상적인 내용, 향후 계획, 연구원별 활동 내용만 있어 연구개발 활동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연구개발 활동 관련 자료(지식재산권 등록번호, 내부연구보고서, 연구원 연구 노트, 회의록, 전체조직도 등)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작성되는 내용 중 기업의 중요한 기술 정보나 경영상 보안 등 사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내용에 대해 비식별 처리나 생략 하여 작성
- 연구결과에 대한 성공 및 실패는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실패 또는 일부 성공인 경우라도 자유롭게 작성
- 연구개발 보고서를 대체 가능한 자료(지원과제 보고서나 기업내 자체 보고서 등)가 있다면 대체 제출 가능

2. 연구과제명

- 연구개발비 명세서에 작성된 연구과제별로 작성

1. 연구과제명

작성요령	
연구과제명	연구과제 이름 기재

3. 연구개발 개요

- 연구개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2. 연구 개발 목표

가. 목표

나. 주요내용

다. 연구개발 기간, 투입인력 등

작성요령	
가. 목표	기술연구 및 개발이 필요한 이유와 이루기 위한 목표가 무엇인지 간략히 작성
나. 주요 내용	연구 개발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작성
다. 연구개발 기간, 투입인력 등	총 연구개발과 투입인력에 대해 작성 - 과정과 절차 및 역할 - 서술이나 표 등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작성

I

II

III

IV

참고자료
V

4.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 앞서 '3. 연구개발 개요'에서 기재한 연구개발 내용을 자세히 작성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가. 연구개발 상세

나. 연구개발 주요 성과

다. 연간 위탁·공동연구개발 현황

작성요령	
가. 연구개발 상세	개요에서 작성한 연구개발 내용을 자유롭게 자세히 작성 - 연구개발 단계별 활동 내용 -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 -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내용 및 해결방법 - 그 밖의 연구개발 활동을 충분히 소명
나. 연구개발 주요 성과	지식재산권 등록, 학술활동, 제품출시, 인증 활동 및 그 밖의 성과 등 자유롭게 작성 ※ 특허등록이나 인증, 논문 활동 결과물을 붙임으로 제출
다. 연간 위탁·공동 연구개발 현황	위탁 또는 공동연구개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서술 - 위탁 또는 공동연구개발 수행기관과 기간 - 위탁 또는 공동연구개발 내용 지원과제인 경우, 기업이 참여한 연구내용과 참여연구원, 참여 기간 등을 작성 ※ 위탁연구 계약서 또는 과제협약서, 과제보고서 등을 붙임으로 제출

5.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연구개발보고서에 붙임 자료는 붙임 명세서와 함께 제출
- 연구개발보고서 서식 또는 아래 안내된 증빙자료 목록은 연구개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시임
- 심사담당자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보완 요청할 수 있음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①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③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건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 ④ 기타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명세

예시된 증빙자료 설명	
①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 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연구과제 수행 적정성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2의 비 연구개발 활동 연관성 증빙
② 연구 노트,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등 활동 관련 증명하는 서류	연구개발 활동 증빙
③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활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지식재산활동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계 증빙 ※ 출원은 출원 명세서, 등록은 등록번호 제출
④ 기타 연구 관련 증빙자료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료에 대해 붙임 사유와 함께 명세 후 제출

0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요건 자가검증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요건 자가검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2023년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 또는 사전심사 신청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것으로 신고 또는 신청 전에 공제요건을 미리 체크 할 수 있음

1 번 자가검진을 통해 기본적인 공제요건 체크 및 사전심사 신청서의 '신고구분'과 '세액공제구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하지 않는 검증항목은 적합 여부 체크 안 함

자 가 검 증		적합 여부			
1	다음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가?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신성장·원천기술 ¹⁾ 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				
국가전략기술 ²⁾ 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					
	일반 ³⁾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원천기술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7의2 국가전략기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2	내국인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일반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가?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구분경리 여부				
비용의 안분 가능 여부					
3	연구개발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진행되었는가?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¹⁾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²⁾				
산업디자인전문회사 ³⁾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연구 산업으로 같은법 제2조제1호기목에 따른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1항				

자 가 검 증			적합 여부		
4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할 시점은 다음의 '신고구분'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예	아니오
	구분	사례	신고구분		
	법정신고 기한	법인세의 법정신고 기한 내인 경우	정기신고		
		법인세의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 후 신고		
당초 신고한 비용의 정정	정기신고에 비용이 과대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			
	정기신고에 비용이 과소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			

공제요건 자가검증 결과 및 가이드	
1	① 신고 또는 사전심사 신청을 위해 체크한 자가검증 항목 중 “아니오”가 있다면, 공제 조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거나 관할 지방청 또는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가검증표의 1번 문항이 신성장·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면, ③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개발 자가검증 표를 참고해주세요
3	자가검증표의 1번 문항이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면, ③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개발 자가검증 표를 참고해주세요
4	자가검증표의 1번 문항이 신성장·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나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②일반·연구개발 자가검증 표를 참고해주세요
5	자가검증표의 1번 문항 선택에 따라, 자가검증 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고 시에는 1번 선택에 따른 명세서를 선택하여 작성하고, - 사전심사 신청 시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의 '세액공제 구분'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6	자가검증표의 4번 문항 선택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의 '신고구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② 일반연구개발 세액공제 공제요건 자가검증

일반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을 세액공제 신고 또는 사전심사 신청하기 전에 공제요건을 미리 체크 할 수 있으며, 해당하지 않는 검증항목은 적합 여부 체크 안 함

(2-1) 인건비 자가검증		적합 여부													
1	일반연구개발에 대한 자가검증표입니다.	예	아니오												
2	인건비는 다음에 해당하는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분 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td> <td></td> </tr> <tr> <td>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보조원</td> <td></td> </tr> <tr> <td>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인력</td> <td></td> </tr> <tr> <td>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전담요원</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및 연구 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p>	분 류	해당 여부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보조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인력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전담요원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보조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인력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전담요원															
3	인건비에 다음의 인건비가 포함되었는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분 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급, 성과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4대 보험료 등의 법정 근로소득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근로 소득으로 신고되는 인건비</td> <td></td> </tr> </tbody> </table>	분 류	해당 여부	기본급, 성과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4대 보험료 등의 법정 근로소득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근로 소득으로 신고되는 인건비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기본급, 성과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4대 보험료 등의 법정 근로소득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근로 소득으로 신고되는 인건비															
4	인건비에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되었는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분 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명절상품권 등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지급액</td> <td></td> </tr> <tr> <td>퇴직금 지급액 및 퇴직금 적립금액¹⁾</td> <td></td> </tr> <tr> <td>주주인 임원등에 지급하는 인건비²⁾</td> <td></td> </tr> <tr> <td>연구개발 출연금분에 해당하는 인건비³⁾</td> <td></td> </tr> <tr> <td>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수행⁴⁾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⁵⁾</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1). 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3호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9호</p>	분 류	해당 여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명절상품권 등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지급액		퇴직금 지급액 및 퇴직금 적립금액 ¹⁾		주주인 임원등에 지급하는 인건비 ²⁾		연구개발 출연금분에 해당하는 인건비 ³⁾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수행 ⁴⁾ 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 ⁵⁾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명절상품권 등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지급액															
퇴직금 지급액 및 퇴직금 적립금액 ¹⁾															
주주인 임원등에 지급하는 인건비 ²⁾															
연구개발 출연금분에 해당하는 인건비 ³⁾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수행 ⁴⁾ 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 ⁵⁾															

(2-2) 재료비 등 자가검증		적합 여부															
1	공제 신청한 재료비는 자체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실험용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td> <td></td> </tr> <tr> <td>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td> <td></td> </tr> <tr> <td>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td> <td></td> </tr> </tbody> </table>			분 류*	해당 여부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분 류*			해당 여부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2).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 목적																	
3	공제 신청한 재료비에 다음의 비용은 제외되었는가?	예	아니오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td> <td></td> </tr> <tr> <td>양산 제품 금형비, 양산 설비, 양산 설비에 투입된 지그, 양산용 원재료비, 납품용으로 전환된 시제품비 등</td> <td></td> </tr> <tr> <td>실험장비 및 장치, 일반공구, 비품,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라이선스 비, 업무용 PC 구입비 등</td> <td></td> </tr> <tr> <td>전시회나 학회 참가비, 출장 및 교통비, 도서구입비, 통신비 등</td> <td></td> </tr> <tr> <td>연구개발과 무관한 활동(판매 등)에 사용한 재료비</td> <td></td> </tr> <tr> <td>연구개발 출연금*에 해당하는 재료비</td> <td></td> </tr> </tbody> </table>			분 류	해당 여부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양산 제품 금형비, 양산 설비, 양산 설비에 투입된 지그, 양산용 원재료비, 납품용으로 전환된 시제품비 등		실험장비 및 장치, 일반공구, 비품,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라이선스 비, 업무용 PC 구입비 등		전시회나 학회 참가비, 출장 및 교통비, 도서구입비, 통신비 등		연구개발과 무관한 활동(판매 등)에 사용한 재료비		연구개발 출연금*에 해당하는 재료비	
	분 류			해당 여부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양산 제품 금형비, 양산 설비, 양산 설비에 투입된 지그, 양산용 원재료비, 납품용으로 전환된 시제품비 등																
	실험장비 및 장치, 일반공구, 비품,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라이선스 비, 업무용 PC 구입비 등																
	전시회나 학회 참가비, 출장 및 교통비, 도서구입비, 통신비 등																
연구개발과 무관한 활동(판매 등)에 사용한 재료비																	
연구개발 출연금*에 해당하는 재료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4	다음의 기타 비용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td> <td></td> </tr> <tr> <td>기술정보비, 기술자문비,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비</td> <td></td> </tr> <tr> <td>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의뢰한 특허조사·분석비</td> <td></td> </tr> </tbody> </table>			분 류*	해당 여부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기술정보비, 기술자문비,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비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의뢰한 특허조사·분석비							
	분 류*			해당 여부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기술정보비, 기술자문비,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비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의뢰한 특허조사·분석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의 다목, 라목, 사목																	
** 「발명진흥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5	기술지도를 받은 비용이 다음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외 기술지도 받은 비용</td> <td></td> </tr> <tr> <td>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td> <td></td> </tr> </tbody> </table>			분 류*	해당 여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외 기술지도 받은 비용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									
	분 류*			해당 여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외 기술지도 받은 비용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의 마목, 바목																	
6	자체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시험용 시설을 임차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차 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전담부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산업기술연구조합** 여부</td> <td></td> </tr> <tr> <td>직접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비용 해당 여부</td> <td></td> </tr> </tbody> </table>			분 류*	해당 여부	전담부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산업기술연구조합** 여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비용 해당 여부									
	분 류*			해당 여부													
전담부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산업기술연구조합** 여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비용 해당 여부																	



참고자료

(2-2) 재료비 등 자가검증		적합 여부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공구,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해당 여부</td> <td></td> </tr> <tr> <td>기준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해당 여부</td> <td></td> </tr> </tbody> </table>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가목3)과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 제2호가목, 시행규칙 제13조의10제1항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p>	분 류*	해당 여부	공구,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해당 여부		기준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해당 여부																					
	분 류*	해당 여부																									
공구,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해당 여부																											
기준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해당 여부																											
7	<p>자체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시험용 시설을 임차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차 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대학, 전문대학,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 여부</td> <td></td> </tr> <tr> <td>국내외 비영리법인 및 부설된 연구기관 해당 여부</td> <td></td> </tr> <tr> <td>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해당 여부</td> <td></td> </tr> <tr> <td>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해당 여부</td> <td></td> </tr> <tr> <td>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연구개발을 자체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 해당 여부</td> <td></td> </tr> <tr> <td>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기획, 관리 및 사업화 지원, 기술정보 조사·제공 등) 해당 여부</td> <td></td> </tr> <tr> <td>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외 소재 기업 해당 여부</td> <td></td> </tr> <tr> <td>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해당 여부</td> <td></td> </tr> <tr> <td>「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해당 여부</td> <td></td> </tr> <tr> <td>「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해당 여부</td> <td></td> </tr> </tbody> </table>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p>	분 류*	해당 여부	대학, 전문대학,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 여부		국내외 비영리법인 및 부설된 연구기관 해당 여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해당 여부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해당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연구개발을 자체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 해당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기획, 관리 및 사업화 지원, 기술정보 조사·제공 등) 해당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외 소재 기업 해당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해당 여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해당 여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해당 여부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대학, 전문대학,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 여부																											
국내외 비영리법인 및 부설된 연구기관 해당 여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해당 여부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해당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연구개발을 자체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 해당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기획, 관리 및 사업화 지원, 기술정보 조사·제공 등) 해당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외 소재 기업 해당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해당 여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해당 여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해당 여부																											
예	아니오																										

(2-3)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자가검증		적합 여부	
1	세액공제신고 또는 사전심사 신청할 위탁개발비 또는 공동연구개발비가 있는가?	예	아니오
2	발생한 위탁개발비는 일반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연구개발용역 비용인가?	예	아니오
3	발생한 위탁개발비는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 (재위탁을 포함한다)한 비용인가?	예	아니오

(2-3)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자가검증		적합 여부																							
4	발생한 위탁개발 비용 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안 되거나 비용에서 제외하였는가?	예	아니오																						
5	발생한 공동연구 비용은 일반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한 비용인가?	예	아니오																						
6	발생한 위탁개발비용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조교수 이상인 자에게 위탁한 비용이라면, 연구개발용역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 인가?	예	아니오																						
7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위탁기관 해당여부</th> </tr> </thead> <tbody> <tr> <td>대학 또는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td> <td></td> </tr> <tr> <td>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td> <td></td> </tr> <tr> <td>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td> <td></td> </tr> <tr> <td>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td> <td></td> </tr> <tr> <td>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td> <td></td> </tr> <tr> <td>연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td> <td></td> </tr> <tr> <td>「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td> <td></td> </tr> <tr> <td>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td> <td></td> </tr> <tr> <td>「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td> <td></td> </tr> <tr> <td>「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td> <td></td> </tr> </tbody> </table>			분 류*	위탁기관 해당여부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분 류*			위탁기관 해당여부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8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에 다음의 비용은 제외되었는가?	예	아니오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기술이전료,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 등</td> <td></td> </tr> <tr> <td>연구개발 출연금 분에 해당하는 비용</td> <td></td> </tr> </tbody> </table>			분 류*	해당 여부	기술이전료,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 등		연구개발 출연금 분에 해당하는 비용																	
	분 류*			해당 여부																					
기술이전료,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 등																									
연구개발 출연금 분에 해당하는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공제요건 자가검증 결과 및 가이드	
1	② 일반연구개발비 체크한 자가검증 항목 중 “아니오”가 있다면, 공제 조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거나 관할 지방청 또는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③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개발 세액공제 공제요건 자가검증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연구 개발비)을 세액공제 신고 또는 사전심사 신청하기 전에 공제요건을 미리 체크 할 수 있으며, 해당하지 않는 검증항목은 적합 여부 체크 안 함

(3-1) 인건비 자가검증		적합 여부													
1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비용에 대한 자가검증 표입니다.	예	아니오												
2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한 자의 인건비는 다음에 해당하는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분 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전담부서 등**에서 연구개발하는 연구전담요원</td> <td></td> </tr> <tr> <td>전담부서 등의 연구보조원</td> <td></td> </tr> <tr> <td>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인력</td> <td></td> </tr> <tr> <td>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전담요원</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p>	분 류*	해당 여부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개발하는 연구전담요원		전담부서 등의 연구보조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인력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전담요원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개발하는 연구전담요원															
전담부서 등의 연구보조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인력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전담요원															
3	공제 신청한 인건비에 다음의 인건비가 포함되었는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분 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급, 성과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4대 보험료 등의 법정 근로소득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인건비</td> <td></td> </tr> </tbody> </table>	분 류	해당 여부	기본급, 성과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4대 보험료 등의 법정 근로소득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인건비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기본급, 성과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4대 보험료 등의 법정 근로소득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인건비															
4	공제 신청한 인건비에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되었는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분 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명절상품권 등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지급액</td> <td></td> </tr> <tr> <td>퇴직금 지급액 및 퇴직금 적립금액¹⁾</td> <td></td> </tr> <tr> <td>주주인 임원등에 지급하는 인건비²⁾</td> <td></td> </tr> <tr> <td>연구개발 출연금분에 해당하는 인건비³⁾</td> <td></td> </tr> <tr> <td>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수행⁴⁾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⁵⁾</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1). 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3호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9호</p>	분 류	해당 여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명절상품권 등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지급액		퇴직금 지급액 및 퇴직금 적립금액 ¹⁾		주주인 임원등에 지급하는 인건비 ²⁾		연구개발 출연금분에 해당하는 인건비 ³⁾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수행 ⁴⁾ 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 ⁵⁾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명절상품권 등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지급액															
퇴직금 지급액 및 퇴직금 적립금액 ¹⁾															
주주인 임원등에 지급하는 인건비 ²⁾															
연구개발 출연금분에 해당하는 인건비 ³⁾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수행 ⁴⁾ 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 ⁵⁾															

(3-2) 재료비 자가검증		적합 여부															
1	<p>신성장·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건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td> <td></td> </tr> <tr> <td>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td> <td></td> </tr> </tbody> </table>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나목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 목적</p>	분 류*	해당 여부	건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건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2	<p>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건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td> <td></td> </tr> </tbody> </table>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나목</p>	분 류*	해당 여부	건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건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3	<p>공제 신청한 재료비에 다음의 비용은 제외되었는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td> <td></td> </tr> <tr> <td>양산 제품 금형비, 양산 설비, 양산 설비에 투입된 지그, 양산용 원재료비, 납품용으로 전환된 시제품비 등</td> <td></td> </tr> <tr> <td>실험장비 및 장치, 일반공구, 비품,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라이선스 비, 업무용 PC 구입비 등</td> <td></td> </tr> <tr> <td>전시회나 학회 참가비, 출장 및 교통비, 도서구입비, 통신비 등</td> <td></td> </tr> <tr> <td>연구개발과 무관한 활동(판매 등)에 사용한 재료비</td> <td></td> </tr> <tr> <td>연구개발 출연금*에 해당하는 재료비</td> <td></td> </tr> </tbody> </table>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p>	분 류	해당 여부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양산 제품 금형비, 양산 설비, 양산 설비에 투입된 지그, 양산용 원재료비, 납품용으로 전환된 시제품비 등		실험장비 및 장치, 일반공구, 비품,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라이선스 비, 업무용 PC 구입비 등		전시회나 학회 참가비, 출장 및 교통비, 도서구입비, 통신비 등		연구개발과 무관한 활동(판매 등)에 사용한 재료비		연구개발 출연금*에 해당하는 재료비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양산 제품 금형비, 양산 설비, 양산 설비에 투입된 지그, 양산용 원재료비, 납품용으로 전환된 시제품비 등																	
실험장비 및 장치, 일반공구, 비품,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라이선스 비, 업무용 PC 구입비 등																	
전시회나 학회 참가비, 출장 및 교통비, 도서구입비, 통신비 등																	
연구개발과 무관한 활동(판매 등)에 사용한 재료비																	
연구개발 출연금*에 해당하는 재료비																	

(3-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 자가검증		적합 여부	
1	세액공제신고 또는 사전심사 신청할 위탁개발비 또는 공동연구개발비가 있는가?	예	아니오
2	발생한 위탁개발비는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개발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비용인가? (재위탁 포함)	예	아니오
4	발생한 위탁개발 비용 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안 되거나 비용에서 제외하였는가?	예	아니오
5	발생한 공동연구 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한 비용인가?	예	아니오

참고자료

(3-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 자가검증		적합 여부																	
6	<p>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대학 또는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td> <td></td> </tr> <tr> <td>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td> <td></td> </tr> <tr> <td>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td> <td></td> </tr> <tr> <td>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td> <td></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td> <td></td> </tr> <tr> <td>연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td> <td></td> </tr> <tr> <td>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부설된 연구기관</td> <td></td> </tr> </tbody> </table>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p>	분 류*	해당 여부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부설된 연구기관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부설된 연구기관																			
7	<p>임상시험이 아닌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이 다음 기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관은 국내에 소재한 기관인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비영리법인 또는 연구기관</td> <td></td> </tr> <tr> <td>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td> <td></td> </tr> <tr> <td>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td> <td></td> </tr> <tr> <td>연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td> <td></td> </tr> </tbody> </table>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서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관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 포함)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p>	분 류*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8	<p>위탁 및 공동연구개발한 임상시험(비임상·임상1상·임상2상·임상3상 시험)이 다음에 해당하는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약품)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td> <td></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 2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td> <td></td> </tr> </tbody> </table>	분 류*	해당 여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약품)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 2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약품)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 2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3-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 자가검증		적합 여부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²⁾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 3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바이오시밀러[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이고,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에 한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³⁾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을 위한 비임상 시험 기술: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⁴⁾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백신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 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⁵⁾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 2상 시험): 백신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⁶⁾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 3상 시험):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⁷⁾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서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관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 포함)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했으나, 다음의 활동은 국외 소재 기관이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임상1상·2상·3상 시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제7호가목6)부터 8)까지)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비임상·임상1상·2상·3상 시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9	<p>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얻기위해 공제 신청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에 다음의 비용은 제외되었는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해당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기술이전료,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 등</td> <td></td> </tr> <tr> <td>연구개발 출연금 분에 해당하는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td> <td></td> </tr> </tbody> </table>	분 류*	해당 여부	기술이전료,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 등		연구개발 출연금 분에 해당하는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기술이전료,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 등											
연구개발 출연금 분에 해당하는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예	아니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공제요건 자가검증 결과 및 가이드	
1	<p>③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자가검증 중 “아니오”가 있다면, 공제 조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거나 관할 지방청 또는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참고자료

0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기타 규정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 연구전담요원 인원수 요건* 〉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2명 이상
	연구원 및 대학교원 창업중소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소기업	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소기업에서 중기업 된 날로부터 1년까지	3명 이상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이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학위 및 경력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① 좌동 ② 연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3년제 전문대졸은 1년 이상) ③ 마이스터·특성화고: 관련분야 연구개발활동 4년 이상
자격증	연구개발활동 관련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	① 좌동 ② 연구개발활동 관련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 ③ 연구개발활동 관련 기능사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연구소(전담부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의 연구소를 말함
 *** 연구전담요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

〈 창작전담요원 인원수 요건* 〉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벤처기업	3명 이상
	중소기업(벤처기업 제외)	5명 이상
	그 외	10명 이상 5명 이상(국외 소재)
기업창작전담부서	-	1명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학위 및 경력	①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함)하였거나 ②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	①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이거나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문화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자 이거나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자격증	연구개발활동 관련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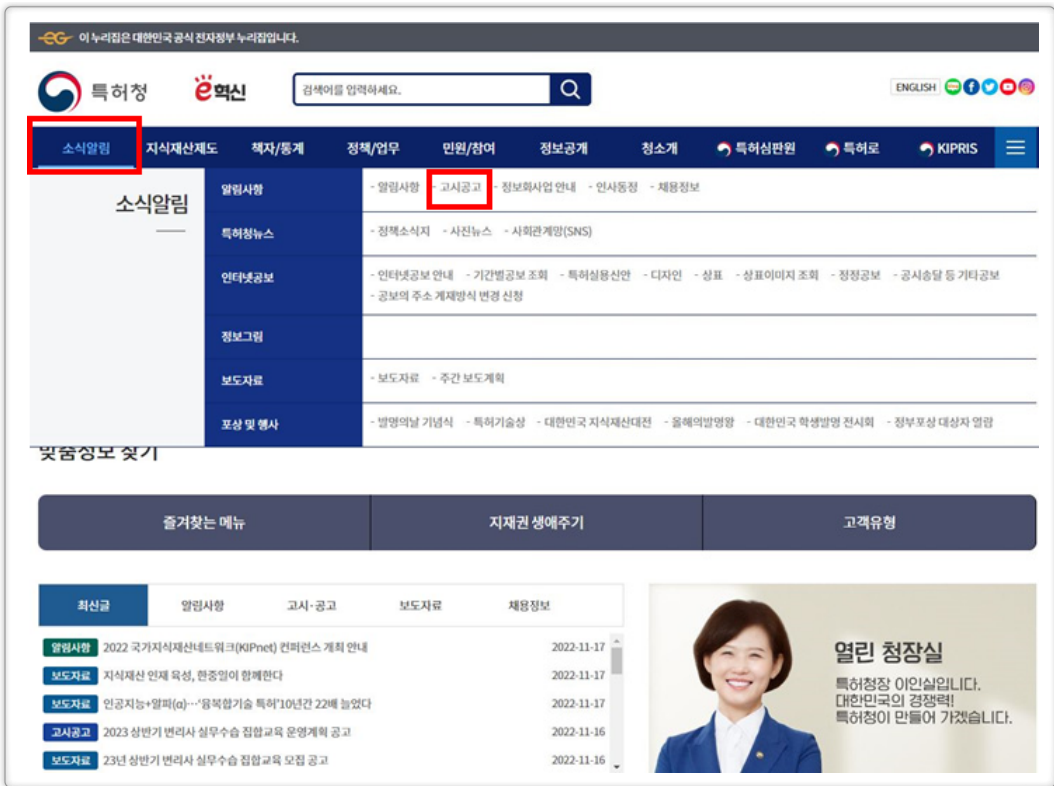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05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개요

- 중소기업이 특허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 기관'에 지출한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은 세액공제 인정됨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 게시됨
- * (특허청) 소식알림 ⇒ 고시공고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검색 후 확인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확인 방법



메뉴 들어가기

- ① (특허청) 소식알림 ⇒ 고시공고 선택

고시공고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고시공고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20년 1월 1일은 202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산업재산권 진단기 > 검색

총 : 10건, 1/1(Page)

번호	제목	파일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10	2022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계획 공고		산업재산청출력팀	2022-10-19	334
9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취소 공고		산업재산청출력팀	2021-12-01	767
8	2021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공고		산업재산청출력팀	2021-11-24	796
7	2021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계획 공고		산업재산청출력팀	2021-05-11	1413
6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취소 공고		산업재산청출력팀	2020-12-30	1848
5	2020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공고		산업재산청출력팀	2020-12-30	2546
4	2020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계획 공고		산업재산청출력팀	2020-11-16	1889

확인하기

- ①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검색
- ② 지정과 취소 공고를 확인하여 산업재산권 진단비용의 매출처가 '산업재산권 진단 기관'으로 지정된 회사인지 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발행일자: 2024년 1월

발행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집필·편집: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안민규

행정사무관 김선영

행정사무관 장지훈

국세조사관 정진원

국세조사관 강관호

국세조사관 이진숙

국세조사관 남민기

국세조사관 박경록

국세조사관 우종훈

국세조사관 김재천

국세조사관 이경환

국세조사관 강경화

국세조사관 최희원

국세조사관 김경민

* 이 책자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은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23~39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는 국세청의 승인없이 무단복제를 금합니다.